농림부홈페이지

http://www.maf.go.kr

GOVP 12010388

338 110Vb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참고자료

1999. 7.

농 림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목 차

제	1 장 총 칙	5
	1. 농안법의 연혁과 주요내용(제1조)	7
	2. 농수산물 도매시장(제2조 제2호)	11
	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제2조 제3호,제4호)	16
	4. 농수산물 공판장(제2조 제5호)	22
	5. 도매시장법인(제2조 제7호)	25
	6. 중도매인(제2조 제9호)	32
	7. 매매참가인(제2조 제10호)	34
	8. 농수산물 종합 물류센터(제2조 제12호)	37
제	2 장 생산 및 출하조정	41
	1. 주요 생산지의 지정(제4조)	
	2. 농업관측(제5조)	
	3. 계약생산(제6조)	55
	4. 자조금의 적립지원(제7조)	60
	5. 가격예시(제8조)	
	6. 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제9조)	69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제10조)	75
제	3 장 도매시장	81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제17조~제20조)	83
	2. 도매시장 관리·운영(제21조, 제22조)	86
	3. 도매시장법인 지정(제23조)	89
	4. 공공출자법인(제24조)	92
	5. 중도매업 허가(제25조)	

6.	경매사의 임면(제27조)96
7.	수집상 등록(제29조)102
8.	출하자 등록(제30조)104
9.	매매방법(제32조)106
10.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제33조 제1항)113
1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허용 기준(제35조)114
12.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116
13.	표준하역비(제40조)141
14.	대금결제(제41조)147
1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161
14	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167
1.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제43조~제45조)169
	유통자회사의 공판장 운영(제46조 제5항)171
3.	민영도매시장(제47조)176
4.	포전매매계약(제53조)178
	\cdot
	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187
1.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189
1. 1 6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189 장 유통기구 등193
1. 1 6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1. 1 6 1. 2.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1. 1 6 1. 2. 3.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제54조~제61조) 189 장 유통기구 등 193 유사시장의 정비(제64조) 195 소매유통의 지원(제68조) 199 물류센터의 설치(제69조) 201
1. 1 6 1. 2. 3. 4.	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7.	도매시장 운영관리 평가(제73조)2	11
	8.	시장제도개선심의회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제78조) 2	17
제	7 >	장 벌 취22	21
	1.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제82조~제90조)2	23
제	8 -	장 규제개혁관련 폐지내용22	29
	1.	유사명칭사용 금지(현행 제3조)2	31
	2.	장부비치(현행 제20조)2	32
	3.	보증금 납부(현행 제21조)2	33
	4.	폐업허가 등(현행 제22조)2	34
	5.	매매참가인의 등록(현행 제24조)2	35
	6.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현행 제25조)2	36
	7.	경매사의 불공정행위 및 겸직금지(현행 제26조, 제27조) 2	37
	8.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현행 제30조의3)2	38
	9.	입하수량 등의 게시(현행 제31조)2	39
		거래금지 및 제한(현행 제36조)2	
	11.	비규격품의 거래금지·제한(현행 제58조 제2항)2	41
	12.	원산지 표시명령(현행 제58조 제3항)2	44
ı	13.	출하품의 안전성 확보(현행 제58조의2)2	44
永	จ	자 료24	15
T			
		김병태의원 제출안 검토2	
•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2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97말기준)2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 현황	
		건설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3	
	6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37

여백

제1장 총칙

여백

1. 농안법의 연혁과 주요내용

--- <제1조 (목적) > ----

-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유지
-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가. 농안법의 연혁

- □ 1914 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
 - ㅇ 부산중앙도매시장 개설(1935)
- □ 1951 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ㅇ 상공부장관이 도매시장 업무수행
- □ 1973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 ㅇ 농수산물 도매시장업무를 농림부로 이관
 - □ 197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
 - ㅇ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법 통합
 - ㅇ 법제정이후 11회에 걸쳐 개정 보완됨

나. 농안법 이전 관련 법률과 주요내용

□ 조선총독부가 시장규칙 제정(1914년)

- 시장조사사업 실시(1913 ~ 1917년)
- 시장을 4종류로 구분, 시장의 개설과 감독, 시장세 징수 및 상권장악기도
 - 1호시장 : 한국의 전통시장(정기시장)
 - 2호시장 : 공설시장(일용품시장)
 - 3호시장 : 청과물.수산물의 경매식 시장 및 땔나무 시장→오늘날 도매시장
 - 4호시장 : 곡물과 유가증권 거래시장
- 일본은 1923년에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하고 우리 나라를 자기나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여 부산중앙도매시장 개설(1935년)

□ 중앙도매시장법 제정(1951.6.22)

ㅇ 구성: 전문 16개조문, 부칙 3개조문

ㅇ 주요골자 : 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공단체만 개설허용

- 개설: 시청소재지에 개설(1도시 1시장체제), 상공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운영 : 공익상 인정되는 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도록 허용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1973,2.6)

ㅇ 구성 : 전문 37개조문

ㅇ 주요골자 : 소관부처를 상공부에서 농수산부로 이관

- 개설자 : 지방공공단체 → 지방정부

- 개설: 1도시 1시장 원칙 명문화, 농수산부장관의 개설허가 필요

- 기금 : 시설기금 적립의무화(수수료 및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의 재투자,

정부의 재정지원 명문화)

다. 농안법 제정과 주요개정내용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정(1976.12.31)

ㅇ 구성 : 전문 68개조문, 부칙 3개조문

-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통합

ㅇ 주요골자

- 개설: 1도시 1시장제 폐지

- 운영 : 도매업무 대행제 → 지정업체

- 농수산물 가격 및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판매· 비축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충 운영

□ 제7차 개정(1993.6.11, 법률 제4554호)

- ㅇ 주요내용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
- 지정도매법인, 중매인등 각종 유통참여자의 기능과 거래행위를 명확히 함(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 공명정대한 경매가 공개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 대량입하품·규격출하품의 우선판매제도, 도매시장 평가제 도입
-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화함
- ㅇ 소위「농안법 파동」의 직접적 계기가 됨

□ 제8차 개정(1994.11.1, 법률제4785호)

- ㅇ 의원입법으로 개정됨
- ㅇ 「농안법 파동」이후 마련된 유통개혁대책을 반영
- ㅇ 주요내용
-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하고.
 - •도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개영업 허용
- 포전매매의 제도화 및 산지수집상 등록제 도입
- 지정도매인의 명칭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변경하고, 지정유효기간을 3년이상 10년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출자법인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 일원화를 가능하게 함
-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 및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용
- 출하자의 경락 최저가격제시제 도입

라. 금번 농안법 개정안(12차)

□ 구성: 제8장, 91개 조문, 부칙 5개 조문

□ 주요개정내용

- ㅇ 농업관측, 가격예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자조금제도 등의 근거마련
- ㅇ 시장도매인(도매상)제도를 도입하고 그운영방법 등을 정함
- ㅇ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토록함
- ㅇ 민간인이 도매시장을 개설할수 있도록함
-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 거래제한고시, 매매참가인 등록제 등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함

□ 주요내용

- ㅇ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배제
- ㅇ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 생산지역 조정, 농업관측, 계약생산, 자조금, 가격예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비축사업
- ㅇ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매시장개설, 관리, 운영, 도매시장법인, 공공출자법인, 중도매인, 경매사, 수집상, 출하자등록, 시장도매인, 하역업무, 수수료징수 등
- ㅇ 제4장 농수산물 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공판장 개설 및 운영,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산지 판매제도 확립, 포전매매 계약
- ㅇ 제5장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기금의 설치 및 운영
- ㅇ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 유통기구 정비계획,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소매유통의 개선
- 물류센타설치, 유통자회사설립, 규격화, 유통정보화, 교육, 실태조사 등
- 이 제7장 보칙 : 보고, 검사, 명령, 과징금, 청문 등
- 제8장 벌칙 : 벌칙, 과태료

2. 농수산물도매시장

--- <제 2 조 (정의) > 제2호 -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 폐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을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요

□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의 필요성

- ㅇ 수급을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형성
- 공정거래를 통해 시장대응 능력이 부족한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를 보호
- 부패성이 강하고 계절적으로 출하가 집중되는 등 품목의 특성상 대량·신속 거래 필요
- 영세다수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므로 일정장소에서 수급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도록 함
- 생산량・품종・맛・품질 등이 천차만별인 농수산물에 각각 상응한 표준가격을 형성하여 가격기능에 의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 도매시장으로 인한 교통·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개입하여 시설관리도 하도록 함

□ 도매시장 개념

o 공영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에 의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

- 일반법정도매시장: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투자로 농수산물의 도매거래를위해 도시지역에 개설한 시장
- 개정 농안법상 민간이 개설 운영하는 민영도매시장을 포함
- * 농안법상 개설 · 운영되는 시장을 "법정도매시장"이라고 칭함
- 유사도매시장 : 농수산물 도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등록 시장 및 시장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 농수산물 위탁상이 집결하여 외견상 시장을 형성한 것을 총칭

□ 도매시장 기능

ㅇ 상적유통기능 : 매매기능

ㅇ 물적유통기능 : 집하, 분산, 저장, 보관, 하역, 운송 등의 기능

ㅇ 유통정보기능 : 시장동향, 가격정보 등의 수집 및 전달기능

ㅇ 수급조절기능 : 수요와 공급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

□ 도매시장 형태별 개소수

ㅇ 공영도매시장 : 18개소

ㅇ 일반법정도매시장 : 31개소

ㅇ 유사도매시장 : 50개소

* 유사도매시장 개소수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정치 임

□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u> </u>			
연도	공영도매시장		일반법정	도매시장	합계	
ال ا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4	3,938	34,168	1,069	17,135	5,007	51,303
' 95	4,461	35,352	966	15,953	5,427	51,305
'96	4,540	40,762	932	16,571	5,472	57,333
' 97	5,023	45,751	1,168	14,409	6,191	60,160
'98	5,013	46,260	628	13,196	5,641	59,456

시·도별 도매시장 현황

('99.4 현재)

)]	7 A		일 반 법 정 시 장				
١	계	공 영	양 곡	청 과	축 산	수 산	약 용	
계	49	18	1	18	8	3	1	
서 울	6	1	1	1	2	1		
부 산	7	1	-	5	1	· 	-	
대구	3	1	_		1		1	
인 천	2	1	_	-	1	_	-	
광 주	2	1	_	_	1	_		
대 전	2	1	_	_	1	_		
울 산	1	1	-	_	_	_		
경 기	4	4	_	-	_	-		
강 원	2	1		1		_		
충 북	2	1			_	_		
충남	1	1				~-		
전 북	3	2		1	_	_		
전 남	3	_		. 3		-	_	
경 북	7		_	5	-	2		
경 남	4	1.	<u> </u>	2	1		-	
제 주	-						_	

<참고 2>

공영도매시장 현황

7)	시장 (1	.8개소)	건설중 도매시장(14개소)				
지역명	· ਜ	모.	건설기간	지역명	규모		건설기간
7770	부지	건물	(개장일)	7170	부지	건물	C E/IC
서울 가락동*	164.2	79.2	(479-485 (485. 6.19)	서울 서남	43.5	29.3	'94–'00
부산 엄궁동*	43.6	27.5	(487-'93 (493.12.21)	부산 제2	44.6	22.9	' 94–'99
대구 북 부*	55.0	28.0	(84-'88 ('88.10. 7)	인천 제2	31.5	16.9	'95 - '00
인천 구월동*	18.8	7.8	(1.11)	광주 제2	. 35.7	15.8	'94–'00
광주 각화동*	17.0	10.7	(85-'91 ('91. 2.27)	대전 제2	34.0	13.1	'96-'00
대전 오정동*	22.0	8.4	(84-'87 ('87.11. 2)	강원 원주	13.8	4.1	'95–'99
울 산*	12.4	6.9	(86-'90 ('90. 3.20)	강릉	21.0	4.6	'95–'99
경기 수 원*	17.2	6.4	(485-'92 (493. 2.27)	전북 정읍	19.8	4.3	'95–'98
구 리*	54.8	37.1	(91-'96 ('97. 6. 9)	전남 순천	22.5	7.3	'96-'00
안 양	25.2	19.3	(92-'97 ('97. 9. 6)	경북 포항	25.9	9.0	' 95–'99
안 산	12.9	6.0	(90-'97 ('97.11.25)	구미	25.0	7.0	'96–'00
강원 춘 천*	9.5	3.1	(91-'96 ('96. 9. 3)	안동	6.0	1.7	'97–'99
충북 청 주*	10.4	5.6	(85-'88 ('88.11.10)	경남 마산	25.0	10.0	'97–'00
충 주	8.6	2.6	'92-'95 ('95.11.15)	진주	18.2	10.9	'95–'99
충남 천 안	11.8	4.2	'92-'95 ('95. 7.18)	(확장)인천	_	3.8	'97–'00
전북 전 주*	18.0	7.3	(*89-'93 (*93.10.29)	(확장)충주	5.0	1.7	'98-'00
의 산	33.0	5.6	(93-'97 ('98. 1. 5)	(확장)천안	1.4	0.2	'97–'00
경남 창 원*	17.2	9.3	(91-'95 ('95.10.14)				

주) * 표시는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

각국의 도매시장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대 만	일 본	유럽(프랑스)
< 제 도 > o 개설자	ㅇ지방정부	지방정부,생산자단체,상인 등	ㅇ지방정부, 공익기관	o지방정부 - 독일 : 시, 농민조합
○투자주체	o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정부 - 70% 국고보조	민간합작	o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정부 - 25~33% 국고보조	ㅇ정부 - 건설후 민간에 임대
< 운 영 > ○시장관리	ㅇ지방정부 또는 지방공사	0 합작공사	o지방정부	ㅇ공영시장공사
0 시장운영	ㅇ도매시장법인 : 수탁판매		ㅇ지정도매인 : 수탁판매	ㅇ지정도매상 : 수탁 및 판매
	o중도매인 : 구입			
ㅇ거래방법	ㅇ경매, 입찰	ㅇ경매, 입찰	ㅇ경매, 입찰	ㅇ상대 및 수의매매
0 个个豆	0.5%	○사용료 - 출하자 : 1.6~ 3.5% - 중매인 : 1.6~ 3%	0.5%	o 시설임대
	 상장수수료 청과 : 7%이하 수산 : 6%이하		o 상장수수료 - 과실 : 7%이하 - 수산 : 8.5%이하	
<대표시장>	o 가락시장 - 규모 : 164천평 (건평 76천평)	o 대북1청과 - 17천평(건평 9천평)	○동경오타시장 - 117천평(건평 71천평)	○ 랑지스시장 - 696천평(건평 153천평)

3.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 ㅡ <제 2 조 (정의) 제3호, 제4호 > ㅡ
- ◇ 중앙도매시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당해 관할행정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거래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도매시장
- ◇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제도개선내용

□ 개정내용

- ㅇ 현행 :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시장
 -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시장
 -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가 공동으로 투자해 개설한 시장
- o 개정 : 특별시·광역시에 개설한 시장중 도매거래의 중심이 되는 시장

□ 개정사유

- ㅇ 기존의 "국고지원" 및 "소재지"에 따른 단순한 구분 기준에서 탈피
 - 도청소재지 일부 시장(수원, 춘천 등)은 실제 유통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도매시장으로 구분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ㅇ 중앙도매시장은 "도매거래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위상 정립
- 도시의 광역화로 동일 개설구역내에 여러개의 시장이 개설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앙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

□ 중앙도매시장 개념정리

- ㅇ "당해 관할행정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 넓은지역을 공급대상으로 하여 유통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시장
- ㅇ "도매거래의 중심"
 - 중앙도매시장은 취급물량의 비중에서 본 중요성 보다는 거래가격 형성을 중심으로한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됨
 - 중앙도매시장은 주도시장으로 하여 엄격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표준가격 형성을 주도토록 함
 - 지방도매시장은 주변시장으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도소매 기능의 미분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수 도매시장이 도소매업이 병존하므로 도매중심의 거래체계가 확립된 시장을 정하는데 애로

나. 도매시장 구분의 의의

□ 개설주체

ㅇ 중앙 : 특별시 또는 광역시

o 지방 :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개설허가권자 및 업무규정의 변경승인

ㅇ 중앙 :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o 지방 : 특별시·광역시는 직접, 시의 경우는 도지사

□ 도매상체제 도입 조건

ㅇ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도매상을 자유롭게 지정

ㅇ 중앙시장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함

< 도매상제 도입 유형>

	도매시장법인체제	도매상체제	병행체제
중 앙	0	×	0
지 방	0	0	0

다. 도매시장 구분 경위

- 51.6(중앙도매시장법 제정) : 중앙도매시장
- 73.2(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 농수산물도매시장
- ㅇ 94.5(농안법 개정) :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구분

라. 외국의 도매시장 구분

<일 본>

□ 도매시장 개념상 구분

- 중앙도매시장: 신선식료품 등의 유통 및 소비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신선식료품 도매의 핵심 거점으로서 광역에 걸친 유통개선에 기여한다는 기능을 부여
- ㅇ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은 지방도매시장으로 봄
- □ 시장수 : 중앙 87, 지방 1,500개소(공설 157개소 포함)

□ 도매시장 개설요건

- ㅇ 중앙도매시장:
 - 도도부현, 인구 20만명 이상 시(사무조합 형태도 일부 있음)
 - 개설자는 지방공공단체로서 민간사업자 참여 원천봉쇄
- ㅇ 지방도매시장 :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 중앙도매시장외의 시장으로 면적이 일정규모(청과물 330m², 수산물 200m², 식육 150m², 화훼 200m²) 이상
 - 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공단체, 주식회사, 농협, 수협 등
- 기타 도매시장(규모 미만 시장): 조례로써 필요한 규제를 할 수있도록 규정

□ 운영상의 특징

- o 중앙도매시장 : 개설·운영 및 정비에 관한 지도·감독·지원을 정부가 맡음
- 지방도매시장: 취급량은 중앙도매시장에 버금가나 개별시장의 규모는
 영세한 것이 많고 판매 및 집하능력이 약하거나 운영
 원칙 또는 거래질서가 미비한 곳이 많음

<대 만>

□ 도매시장 구분 : 없음

- 농수산물의 제1차 도매거래를 도매시장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강제상장제와 유사), 산지반출상 허가제, 도매시장 출하자등록제 등 관 주도적 유통
- 시장은 6등급(특등, 1 ~ 5등 시장)으로 구분하며 과채, 가축, 가금, 어시장의 등급분류는 해당지역 주관기관에서 사정하고 기타시장과 종합시장의 등급분류는 중앙기관에서 사정

마.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중앙도매시장의 범위

<참고 1>

중앙도메시장과 지방도메시장 현황

□ 현행법에 의한 분류

시	시 도 계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7	계 49 개소		13	36			
서	울	6.	가락동(1)	노량진청과, 노량진수산, 양재동양곡,			
				마장동축산, 독산동축산(5)			
부	. 산	7	엄궁동(1)	범천・한전・거제・광안・명륜동청과,			
				모라동축산(6)			
대	구	3	매천동(1)	대구시축산, 대구시한약재(2)			
인	천	2	구월동(1)	인천시축산(1)			
광	주	2	각화동(1)	광주시축산(1)			
대	전	2	오정동(1)	대전시축산(1)			
울	산	1	삼산동(1)				
경	기	4	구리,수원시(2)	안양시,안산시(2)			
강	원	2	춘천시(1)	원주시청과(1)			
충	북	2	청주시(1)	충주시(1)			
충	남	1		천안시(1)			
전	북	3	전주시(1)	익산시,정읍시(2)			
전	남	3	- .	목포시연산동청과·상동청과, 여수시청과(3)			
경	북	7	-	포항시 • 김천시 • 안동시 • 영천시 • 경주시청과,			
			,	포항시 · 경주시수산(7)			
경	남	4	창원시(1)	김해시주촌축산, 북마산청과 · 마산청과(3)			
제	주			_			

주) 현재 18개 개장 공영도매시장 중 5개소(안양, 안산, 충주, 천안, 익산)는 지방도매시장임

일본도매시장 현황

□ 중앙도매시장

ㅇ 종사자 및 시장수

	<u> </u>			ii	
구분	시장수	취급금액	도매업자수	중도매업자수	매매참가인수
1 证	(1998.3현재)	(1996현재)	(1997.3현재)	(1997.3현재)	(1997.3현재)
계	87시장(56도시)	61,579억 엔	261개	6,145	49,689
청과물	72시장(55도시)	26,085	112	2,396	28,345
수산물	53시장(46시장)	30,519	95	3,501	10,334
식육	10시장(10도시)	2,457	10	110	2,010
화훼	23도시(19도시)	1,476	29	93	8,984
기타	9시장(6도시)	1,042	17	45	16

ㅇ 거래실적(1996년)

기 님	청과			수산	식육	화훼	기타
구분	야채	과실	月	一个位	一千	와웨	714
물량(천톤)	7,669	3,225	11,025	3,660	243	-	_
금액(억엔)	15,656	10,033	26,085	30,519	2,445	1,476	2,457

[※] 청과부류 물량, 금액은 '91년 이후 큰변화 없음

□ 지방도매시장

ㅇ 종사자 및 시장수

구분	시장수	취급금액	도매업자수	중도매업자수	매매참가인수
1/2_	(1996.4현재)	(1995년도)	(1996.4현재)	(1996.4현재)	(1996.4현재)
계	1,500개소 (공설157포함)	51,032억 엔	1,762	2,334	201,080
청과물	769	18,886	880		
수산물(소비지)	357	12,974	409	,	
수산물(산지)	348	11,829	367		
식육	39	2,729	35	,	
화훼	190	3,774	193		
기타		860			

ㅇ 거래실적(1995년)

7.8		청과		수산	식육	화훼	기타
구분	야채	과실	계	干证	ी म	와 체 	714
물량(천톤)	6,309	2,837	9,146	1,822	292	-	
금액(억엔)	11,574	7,292	18,866	12,974	2,729	3,774	861

[※] 청과부류 물량, 금액은 '91년 이후 하향세

4. 농수산물 공판장

- <제 2 조 (정의) 제5호 > ㅡ

◇ 농협·입협·축협·수협·삼협과 그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이 농수 산물을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 내용

ㅇ 생산자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사유

민영 도매시장 조항도 신설되고 도매상제도도 도입되므로 공판장설치도 자유롭게 확대할 필요

, 나, 현행 제도의 내용

□ 공판장 제도의 연혁

ㅇ '60년대 : 소비자에게 직접판매 원칙으로 운영

ㅇ '76. 12 : 농안법에 공판장규정 제정

'93. 6 : 일정시설을 갖춘 산지 농수산물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 가능,시지역에만 공판장 설치가능하던 것을 지역제한 없앰

□ 공판장 개설

- o 시·도지사의 승인사항
- o 농수산물집하장 중 농림부렁이 정한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공판장으로 개설 가능
- 공판장 개설시 승인 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공판장 현황('99.4현재)

구	분	계	농 협	수 협	축 협	유통공사
الد	入	104	90	8	5	1
/ π	<u>ن</u> د	(26)	(19)	(6)	(1)	(-)

주) ()는 공영도매시장내 입주한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전체공판장수에 포함

□ 운영효과

- ㅇ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도모
- ㅇ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질서 유지 도모
- > 공판장의 거래가격이 해당지역의 기준가격이 되어 상인등에 의한 가격조작 행위견제
- ㅇ 대도시로부터의 농산물 역유입 현상완화, 농가의 출하비용 및 노력절감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의 범위

<참고>

농협공판장 현황

□ 연 혁

- ㅇ 인천원예('57), 대구원예('58) 등은 일부조합을 중심으로 경매식 판매장 운영
 - 일부는 '76년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거 도매시장업무를 대행
- ㅇ '61년 : 농협중앙회는 부산공판장을 설립
- ㅇ '78~'79년 : 회원조합은 규모가 큰 상설 판매장을 공판장으로 전환추진
- '83년: 읍이하 지역 소재지 공판장을 집하장으로 명칭 변경(농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지역에만 공판장 개설)

□ 현황

		-							
Į				공	판	장			공 판 장
١	구분		국고지원		농	협자체건	설	합계	전환희망
		개장(A)	건설중	계	중앙회	회원농협	계(B)	(A+B)	경매식집하장
	개소	25	8	33	13(7)	52(12)	65(19)	90(19)	12

주) ()내에서는 공영도매시장내 입주한 도매시장공판장임

□ 국고지원 공판장 현황

- 개장운영(25개소): 점촌(농), 남원(원), 마산(원), 제천(농), 나주(농), 아산(원), 김제(원), 상주(원), 경산(농), 공주(농), 삼천포(농), 군산(원), 마산 서(원), 광양(원), 경주(농), 상주(농), 전주(농), 나주(원), 영천(농), 괴산(농),영주(농), 진해(농), 제주(농),밀양(농),성주(농)
- 건설추진중(8개소): 평창(원), 서산(원), 부여(농), 논산(농), 예산(원), 장수(농), 고홍(농), 진도(농)

□ 거래실적('98)

중앙:	중앙회공판장 회원농협공판장		합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833천톤	7,363억원	1,165	9,827	1,998	17,190
(647)	(5,471)	(541)	(4,465	(1,188)	(9,936)

※ ()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거래실적으로 전체공판장 실적에 포함됨

5. 도매시장법인

- <제 2 조 (정의) 제7호 > -

가. 도매시장법인의 연혁

 '51. 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 '73. 2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은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표현하고 "대행자"로 칭함

ㅇ '76.12 : 농안법에 기존의 "대행자"를 "지정도매인"으로 변경

ㅇ '94.11: "지정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 지정승인제 폐지

나. 도매시장법인 현황

□ 필요성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물건이 들어오도록 판촉활동을 하고, 물건을 팔아주는 업무를 하는 시장운영 주체임
- 전통적인 상관행과는 다른 인위적인 제도지만,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이 요구되는 도매시장제도에서는 수탁주체와 분산주체의 역할분담이 필요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 보호, 중도매인은 소비자 이익대변의 역할 수행

□ 기 능

ㅇ 물량집하기능 :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품목을 수집하는 기능

ㅇ 공정거래형성기능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판매해주는 기능

ㅇ 대금결제기능 : 경락 즉시 출하주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대금결제기능

ㅇ 정보전달기능 : 시장거래상황을 그때 그때 알려주는 정보전달기능

□ 현 황('99. 4현재)

구분	계	종합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약용
도 매 시 장 (공영도매시장)	49개소 (18)	12 (12)	24 (6)	3	8 .	1	1
도매시장법인 (공영도매시장)	80 (49)		51 (33)	19 (16)	8	1	1

<참고>

도매시장법인 현황

□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실적 추이

o청과부류

(단위: 천톤, 억원)

- 1	'90		'96		'97		'98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2,357	7,036	3,745	26,584	3,826	29,126	3,615	27,936
공영도매시장	1,768	5,012	3,289	23,913	3,595	27,194	3,414	26,013
법정도매시장	589	2,024	456	2,671	231	1,932	201	1,923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의 거래실적은 제외됨

ㅇ 수산부류

(단위: 천톤, 억원)

7 H	'90		'96		'97		'98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346	4,505	335	7,363	364	7,491	350	7,401
공영도매시장	156	2,504	189	4,113	218	4,412	217	4,476
법정도매시장	190	2,001	146	3,250	146	3,079	133	2,925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의 거래실적은 제외됨

□ 자본금 규모별 법인 수

(단위 : 업체수)

규모별 부류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80	51	19	8	1	1
5천만원미만	3	1	1	1	_	_
5천만원~1억원	9	8	1	– .	_	
1억원~3억원	19	9	6	4	-	-
3억원~10억원	21	15	5		_	1
10억원~30억원	14	8	. 2	3	1	_
30억원이상	14	10	4	_	_	

□ 공영도매시장 입주법인 현황

.]]	> 1 -1	-1) -1 A)	입주도매	거래규.	모('98)	-) H 7
시 장 명	소 재 지	개 장 일	시장법인	물량	금액	자본금
	<u> </u>			톤	백만원	백만원
서울시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85.6.19	서울청과	272,344	267,904	5,000
농수산물	600		중앙청과	296,693	319,689	5,010
도매시장			한국청과	416,155	355,228	7,000
			동화청과	343,422	307,300	4,900
			대아청과	455,925	172,911	5,450
			농협가락(공)	227,943	220,126	-
			강동수산	98,481	,	
			서울건해산물	27,528		·
			수협가락(공)	36,850	· ·	1
			축협가락(공)	91,526	372,683	-
소 계			10개소	2,266,867	2,368,729	
				, ,	, , .	
부산시엄궁동	사상구 엄궁동	'93.12.21	부산청과	108,207	,	· ·
농산물	650		항도청과	109,580		
도매시장			농협부산(공)	143,312	95,139	_
소 계		 	3개소	361,099	240,586	
대구시 북부	북구 매천동	'88.10.7	 대구중앙청과	79,160	69,491	600
농수산물	527-3	00.10.7	영남청과	130,584		1
도매시장	021 0		농협북대구(공)	59,159	· · · · · · · · · · · · · · · · · · ·	1
			대한청과	67,627	'	1 1
			대구제일청과	49,060	· · · · · · · · · · · · · · · · · · ·	l I
			대구경북원협(공)	33,068		
			대구수산	6,107	•	1
			대구종합수산	4,433	•	1
소계			8개소	429,198	280,187	
 인천시구월동	남동구 구월동	'94.1.11	 인천농산물	89,114	64,189	1,200
농산물	1446	J-4.1.11	덕풍청과	66,009		
도매시장			대인농산	51,934		
, , -			인천원협(공)	49,584	44,250	_
소 계			4개소	256,641	201,109	,
ガスカ	비그 가되드	,01.0.07	광주청과	01715	69,433	501
광주시 농산물	북구 각화동 437-3	'91.2.27	광주중앙청과	84,745 66,343		
동산물 도매시장	43 <i>1</i> ⁻ 3		호남농산물	53,141		E :
			광주원협(공)	111,204		
소 계		/	4개소	315,433		
<u> </u>		<u></u>	7/11-4-	010,400	201,002	L

시장명	 소 재 지	개 장 일	입주도매	거래규.	모('98)	자본금
7100		0 1	시장법인	물량	금액	1 1
				톤	백만원	백만원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87.11.2	대전중앙청과	113,372	54,948	1,300
농수산물	705	0,1121	대전청과	49,428	*	l ' E
도매시장	,00		농협대전(공)	86,685	70,005	
, , ,			대전수산	11,087	16,597	l
			한밭건해산물	511	2,759	1
소 계			5개소	261,083	186,616	
울산시	남구 삼산동	'90.3.20	울산중앙청과	37,710		l f
농수산물	904-10		울산배원협(공)	45,833		1 1
도매시장			울산중앙수산	6,559		i i
		:	울산건해산물	1,031	6,007	
			울산수협(공)	2,784		1
소 계			5개소	93,917	87,228	
ار ان	기시 <u>기</u> 기시드	'02 0 07	스이 킹 코	38,842	36,487	61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3.2.27	수원청과	· 1		l I
농수산물	58-3		세류청과 수원원협(공)	44,944 32,254	•	1 1
도매시장			수원수산	6,786		1 1
			경기남부수협(공)	5,545		
소계	,		5개소	128,371		1 1
1 1 M						
구리시_	인창동 191	'97.6.9	농협구리(공)	67,422		
농수산물			고려청과	27,052		
도매시장			구리청과 강북수산	112,314 26,144	,	
			수협구리(공)	43,844	61,871	-
소 계		·	5개소	276,776		
				5 0.010	45.050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7.9.6	안양원협(공) 태원농산	58,012 53,931		
농수산물 도매시장	934-1	ļ	동안수산	12,712		
소계 소계			3개소	124,655		1 1
·	3 = =00	107 44 07	·	,		
안산시 노스자무	이동 528	'97.11.25	농협안산(공) 국제청과	33,149	30,006	400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산수산	5,156	9,207	
			경기남부수협(공)	3,458		1 1
소 계	,		4개소	41,763	46,349	
1 . 1	11.5 400 4	200.00	호리이원/기	0.750	<i>n ca</i> 1	
춘천시 농산물	사농동 133-1	'96.9.2	춘천원협(공) 호반농산	6,759 5,212	7,571 5,371	
동산물 도매시장			700	0,414	0,011	
소계			2개소	11,971	12,942	

시 장 명	소 재 지	개장 일	입주도매	'98거리	H규모	자본금
1 0 0	-L- /1 / 1	/ 11 0 년	시장법인	물량	금액	7120
	_			톤	백만원	백만원
청주시	홍덕구 봉명동	88.11.10	청주청과	51,151	40,947	634
농수산물	2210		충북시과원협청주(공)	34,335	28,919	_
도매시장		}	청주수산	4,371	8,702	150
			3개소	89,857	78,568	
충주시	목행동 426-4	'95.11.15	충주청과물유통	8,872	7,420	510
농수산물			충북시의원협충주(공)	8,670	9,102	-
도매시장			충주수산	1,693		510
소계			3개소	19,235	19,043	
천안시	신당동 488-1	'95.7.18	천안청과	44,533	32,192	315
농산물			천안농협(공)	21,676	15,936	_
도매시장					;	
소 계			2개소	66,209	48,128	
전주시	덕진구	'93.10.29	전주청과	32,436	29,817	340
농수산물	송천동2가		전주원협(공)	52,378	39,939	-
도매시장	492-36		전주수산	2,887	6,727	300
			수협전주(공)	4,294	9,129	
소 계			4개소	91,995	85,612	
익산시	목천동 916-4	'98.1.7	이리청과	12,070	10,603	600
농수산물			익산원협(공)	47,284	33,684	
도매시장			이리수산	1,188	2,589	300
소 계			3개소	60,542	46,876	
창원시	창원시 팔용동	'95.10.14	농협창원(공)	27,165	20,836	_
농산물	7	,	경남청과	26,807	21,398	2,000
도매시장 소 계	·	·	2개소	53,972	42,234	

□ 일반법정도매시장(31개소)

시 장 명	소 재 지	개 장 일	부 류 명	도매시장법인
서울시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동 223	'88. 8. 3	양곡	대한양곡 농협(공)
서울시 노량진 청과도매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16-1	'37	청과	서울수산청과
서울시 노량진 수산도매시장	동작구 노량진동 13-8	'37	수산	노량진수산
서울시 마장동 축산도매시장	성동구 마장동 766-8	'65. 3. 17.	축산	우성농역
서울시 독산동 축산도매시장	금천구 독산동 1007-13	'69. 7. 8.	축산	태강산업
부산시 범천 청과도매시장	부산진구 범천1동 844-67	'68. 5. 25	청과	부산진중앙청과
부산시 한전 청과도매시장	부산진구 부전1동 474	'83. 7. 1	청과	한전청과
부산시 거제 청과도매시장	연제구 거제3동 486-2	'83. 4. 11	청과	거제합동청과
부산시 광안 청과도매시장	수영구 광안1동 120-262	'68. 4.	청과	남부산청과
부산시 명륜 청과도매시장	동래구 명륜1동 647-2	'75. 3. 8	청과	동부산청과
김해시 주촌 축산도매시장	주촌면 내삼리 1282	'80. 2. 21	축산	태강산업
부산시 모라 축산도매시장	사상구 모라동 270-3	'69. 4. 30	축산	동원산업
대구시 축산 도매시장	서구 중리동 1136-37	'69. 4. 18	축산	신흥산업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	중구 남성로 51-1	'82. 10. 21	한약재	대구한약재
인천시 축산도매시장	서구 가좌동 477-4	'73. 8. 3	축산	삼성식품
광주시 축산도매시장	북구 양산동 409-5	'71. 10. 26	축산	삼호축산
대전시 축산도매시장	대덕구 오정동 705	'80. 1. 9	축산	대양식품
원주시 청과도매시장	단계동 803-1	'77.10. 6	청과	원주합동청과
841119	<u> </u>			<u> </u>

시 장 명	소 재 지	개. 장 일	부 류 명	도메시장법	
정읍시 청과도매시장	정읍시 연지동 506-70	'75. 11. 5	청과	정일청과	
목포시 연산도매시장	연산동 1048-1	'97. 4. 3	청과	목포농산들	
목포시 상동도 매시장	상동 860	'97. 5. 26	청과	목포농수	
여수시 농산물도매시장	충무동 614-1	'72. 9. 7	청과	여수중앙청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죽도2동 57-3	'82. 12. 30	청과	포항청과	
경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성건동 339-2	'63. 10. 10	청과	경주중앙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모암동 187-11	'76. 3. 11	청과	김천청과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풍산읍 노리 953-7	'82. 2. 22	청과	안동농협(공 안동청과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완산동 1087-3	'81. 10. 30	청과	영천농산들	
포항시 수산도매시장	죽도1동 1-8	'68. 8. 28	수산	포항수산	
경주시 수산도매시장	성건동 339-4	'63. 9. 6	수산	경주수산	
북마산 청과도매시장	합포구 상남동 30-1	'73. 5. 20	청과	북마산청고	
마산시 청과도매시장	합포구 신포동2가 27-8	'22. 5. 1	청과	마산청과	

.

.

6. 중도매인

- <제 2 조 (정의) 제9호 > ㅡ

- ◇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거래 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이 예외적으로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농수산물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가능

가. 중도매인 제도의 연혁

ㅇ '51.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중도매인 규정 없음(누구나 구입 가능)

ㅇ '73.2 :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서 중매업 허가제도 도입

ㅇ '86.12 : 농안법 3차 개정시 중매업의 정의 규정

- " ……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

ㅇ '93.6 : 농안법 6차 개정시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ㅇ '94.11 : 중도매인을 도매거래 하는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중개허용(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변경)

나. 중도매인 현황

□ 역 할

ㅇ 가격형성기능 : 소비자 수요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에 응찰

ㅇ 물량분산기능 :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량을 구입하여 판매 및 중개

□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 A	7,741	5,998	1,290	273	132	48
공 영 도 매 시 장	6,547	5,430	1,070	47		
일반법정도매시장	1,194	568	220	226	132	48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 거래규모별 중도매인수

	구 분	계	1억원 미 만	1~3 억 원	3~5 억 원	5~10 억 원	10~20 억원	20~30 억 원	30억원 이 상
전체	계	7,741	1,078	2,208	1,272	1,555	1,038	330	260
		(100.0)	(13.9)	(28.5)	(16.4)	(20.1)	(13.4)	(4.3)	(3.4)
	공영도매시장	6,547	937	1,930	1,129	1,344	832	222	153
	일반법정도매시장	1,194	141	278	143	211	206	108	107
청과	계	5,998	864	1,762	1,024	1,289	762	198	99
		(100.0)	(14.4)	(29.4)	(17.1)	(21.5)	(12.7)	(3.3)	(1.6)
	공영도매시장	5,430	775	1,536	911	1,183	732	197	96
	일반법정도매시장	568	89	226	113	106	30	1	3

다. 외국의 중도매업 사례

□ 일 본

- o 중도매인의 영업행위를 도매시장법인으로 부터 도매로 구입하는 신 선식료품 등을 분류 또는 조제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도매시장법33조)
 - * "중도매인 정비통합요강" 및 "법인화에 관한 조치요강"을 제정하여 대형화, 법인화를 추진한 결과 90% 정도가 법인, 개인상회는 10% 수준

□ 대 만

ㅇ 승소인(중도매인 역할)을 두어 도매거래 하도록함(농산물시장거래법3조)

□ 미국, 프랑스

ㅇ 도매시장의 상인은 도매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임의처분

7. 매매참가인

─ <제 2 조 (정의) 제10호 > ─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매매참가인 등록제 폐지

□ 개정사유

ㅇ 매매참가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나. 매매참가인 제도의 연혁

ㅇ '73.2 : 매매참가인 승인제도 도입

ㅇ '76.12 : 매매참가인 등록제로 변경, 등록대상을 시행규칙에 반영

- 도매시장 거래품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자

-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가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자

- 대량실수요자로서 도매시장 거래물품을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구입하는자

ㅇ '94.5 : 매매참가인 정의 규정 신설

- 가공업자,농수산물소매업자,수출업자,소비자단체 등 실수요자로 한정

ㅇ '94.11 : 매매참가인의 정의를 수요자로 확대

○ '98.12 : 매매참가인의 등록제 폐지(개정안)

다. 매매참가인 제도의 운영실태

□ 의 의

○ 매매참가인 제도는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코자 하는 수요자를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입찰에 참가시킴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

□ 활성화 부진이유

- 매매참가인은 중도매인과 함께 경매에 참여하여 경쟁속에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 대부분이 상품 선별능력이나 평가능력이 중도매인에게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운영이 부진하며
 - 직접구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매참인의 구매담당자가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며
 - 다양한 품목의 경매참가가 번거롭다는 점도 부진요인임
- 중위가 서로 다른 출하단위별로 경매가 이루어져 필요한 물량을적기에 구입 애로
 - "사과 15kg 3단위(31~40개들이) 1백상자"와 같이 경매를 시행할 경우 매참인은 품위, 필요량 등 구입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려움
- ㅇ 가락시장의 경우
 - '97.12 현재 총 130명(청과108, 수산9, 축산13)이 매참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다수는 시장내에서 영업활동을 함
 - '97년 매참인 구입액은 810억원으로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4.5% 취급

라. 일본의 매매참가인 제도

- □ 도매시장법상 매매참가인에 대한 독립된 규정은 없으나 제36조제1항에 그 정의가 명시되어 있음
 -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업자로부터 도매를 받는 것에 따라 시장 및 취급품목 부류별마다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자

□ 오다도매시장의 관련상인 예

ㅇ 청과 : 도매법인 5개사, 중도매업자 301인, 매매참가인 2,025인

ㅇ 수산 : 도매법인 2개사, 중도매업자 100인, 매매참가인 37인

○ 화훼: 도매법인 2개사, 중도매업자 20인, 매매참가인 1,691인

매매참가인 현황

□ 구성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11 - 07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542	162	61	95	224	_
가 공 업 자	39	4		35	_	
소 매 업 자	485	144	60	57	224	
수 출 업 자	_		-		_	_
소매업자협동조합	13	9	1	3		_
소비자단체	5	5	-		_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 시장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542	162	61	95	224	_
공영도대	매 시 장	225	155	57	13	-	_
일반법정도	트매시장	317	7	4	82	224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8.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 <제 2 조 (정의) 제12호 > -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 수송, 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명칭변경: 농수산물물류센터 →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

□ 개정사유

○ 물류센타에 도매뿐 아니라 소매까지도 병행 허용함에 따라 명칭 확대 필요

나. 현행제도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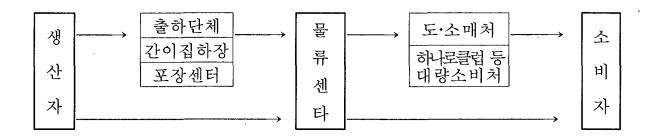
□ 의 의

- 기존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의 다 원화로 농업인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판매 처리능력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 연결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기능

- o 수집·분산기능, 가격발견기능, 보관·저장기능
- ㅇ 소포장 및 유통가공기능,정보처리 기능

□ 거래체계



□ 운영내용

- 거래형태는 예약수의조달, 매취거래, 예약수의판매, 현장판매※ 물류센타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외의 방법으로 매매
-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직영점, 가맹점, 슈퍼마켓, 대량수요처 등에 직접 배송
-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보관, 소포장, 가공, 배송, 현장 판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
- 가격결정방법은 출하자 판매희망가격, 거래처 요구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시황 등을 감안한 상대거래방식에 의하여 결정
- ㅇ 도매배송을 주기능으로 하되 직판을 병행하므로서 직거래를 제도화
 - one-stop shopping 및 농산물 수요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매장 운영
 - * '99 신규추진 4개소(전환 2개 포함)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운영 위탁

□ 추진현황

- ㅇ '99. 4현재 4개소 개장, 9개소(전환2개소 포함) 건설중
 - '98 개장(4개소) : 양재동, 창동, 청주, 부산
 - '99 개장예정(4개소) : 천안, 전주, 군위, 용인
 - 2000 개장예정(1개소) : 대전
 - 2001 개장예정(2개소) : 김해, 금산
 - ※ 전환(도매시장→물류센터) : 성남, 고양
- ㅇ '99년도 신규 4개소 선정 : 2002년까지 완공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비교

		도 매 시 장	공 판 장	물 류 센 타
1.	설치근거	ㅇ농안법(안) 제17조	ㅇ농안법(안) 제43조	ㅇ농안법(안) 제69조
2.	개설자	ㅇ특별시, 광역시, 시	○농·림·축·수·삼협조합 및 중앙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민 간유통업자, 농림·해양수산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
3.	건설지역	ㅇ시지역	o 제 한 없 음	o 제한없음
4,	허가자	○중앙도매시장: 농림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도매시장: 시장(특별 시·광역시), 도지사(시)		ㅇ농림부장관 승인
5.	지원내용	ㅇ부지매입비, 건축비	ㅇ부지매입비, 건축비	ㅇ부지매입비, 건축비
6.	지원기준	 ○ '98까지 - 특·광역시: 국고30, 지방비70% - 기타시: 국고50, 지방비5 0% ○ '99부터 - 지역제한없이 국고70%, 지방비30% 	○ '98까지 - 국고40, 지방비20, 융자20, 자부담20% ○ '99부터 - 국고40, 지방비10, 융자30, 자부담20%	○ '97~ '98선정지역 : 부지구입 비50% 융자, 건설공사비 50% 보조 * 민간: 건설공사비 60% 융자 ○ '99이후 - 공공유형: 총사업비70% 보조 - 생산자단체유형: 부지구입비 50%융자, 건설공사비 50% 보조 - 민간유형 : 총사업비 80% 융자
7.	시설기준	 농안법 시행규칙 부류별(청과, 수산, 축산 등)로 도시인구 규모(30만, 30~100만, 100만이상)에 따라 다른 시설기준 적용 	도매시장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지역특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	o 농안법 시행규칙 - 부지: 20,000m²이상 - 건물: 10,000m²이상 - 시설: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
8.	설치상황	- 공영도매시장 18개소	○104개소 - 농협90개소 - 수협8 - 축협5 - 유통공사1	 '98년도 개장: 4개소(양재, 창동, 청주, 부산) * 건설중 : 9개소(천안, 전주, 군위, 대전, 김해, 금산, 용인, 성남, 고양)

<참고 2>

농수산물 물류센타 추진현황('99.3)

(단위: 백만원)

								(1	t위 : 맥만원,
7. 14	사업규	모(평)	**************************************	사업비(국그	고)	'98까지	'99예산	사업	추진상황
구 분	부지	건물	보조	융자	계	30/f^	현액	기간	('99.1)
양 재	20,420	17,932	36,006	5,199	41,205	41,205	_	95-97	98.1.15개장
(농협)	10.001	11 505	07.000	05 4770	co oco	(5,199)	_	95-98	'98. 5.1개장
창 동 (농협)	10,291	11,597	27,896	35,473 (중소기업	63,369	63,369 (35,473)	_	90-90	90. 0.171/8
(О н)				매장:3,342)		(00,1,0)	:		
청주	20,000	5,559	12,672	8,916	21,588	21,588	-	95-98	'98.9.17개장
(농협)	E 000	G EOE	19,741		19,741	(8,916) 19,741	_	95-98	'98.12개장
부 산 (수협)	5,000	6,505	19,741		19,741	15,741		95 56	30,127 6
천안	39,757	10,000	27,808	8,500	36,308	23,200	13,108	96-99	전체공정65%
(<u>549,</u> とい <i>き</i> の)						(8,500)			
농21,축30) 전 주	10,000	6,000	12,600	6,650	19,250	10,050	9,200	96-99	전체공정40
신 ㅜ (농협)	10,000	0,000	12,000	0,000 (주차장:1,	19,200	(6,650)	5,200	30 33	77,410,040
!	05 500	F 700	15 100	750)	10.050	7040	7100	96-99	전체공정12
군 위 (군43,	35,500	5,700	15,100	3,150	18,250	7,040 (3,150)	7,100	90-99	선세6/814
농57)						(=,==-,			
장 성	27,835	5,487	-	14,000	14,000	2,883		96-2000	사업중단
(거평)	10.7700	F 000	0.510	0.000	17770	(2,883)	4.755	97-2000	
대 전 (농51,	13,700	5,000	9,510	8,220	17,730	8,220 (8,220)	4,755	91-2000	설계중
대49)						(2,==7			E/110
김해	20,000	7,000	13,750	6,000	19,750	_		97-01	사업연기
(농협)	20,000	E 000	13,000	6,000	19,000		6,000	98-01	'98신규
금 산 (인협)	20,000	5,000	15,000	0,000	19,000		(6,000)	30 01	부지매입
용 인	10,440	5,744		15,860	15,860	_	9,430	98-99	전체공정60
(삼성						1	(9,430)		
에버랜드) 성 남	25,455	14,059	44,744		44,744	23,241	7,795	·99 - 00	전 환
고양	40,918	15,961	50,193		50,193	34,108	8,042	·99-00	"
	-10,010	10,001	98,000		98,000	-	10,618	'99-02	·99선정예정
신 규2 조하			188,400		188,400		15,000	'99-02	"
종 합2	-		569,420	117,968	687,388	254,645	91,048	33 02	
계 보조			509,420	117,900	007,300	175,654	75,618		
융 자						78,991	15,430		
L	<u> </u>	L	l	بمسينين					

^{* ()}내서는 융자

제2장 생산및출하조정

여 백

1. 주요 생산지의 지정

⁻ <제 4 조 (주요 생산지의 지정 등)> ⁻

- ◇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 지정
- ◇ 생산지역 생산자에 대하여 생산자금 융자, 기술지도 등 지원

가. 제도 개선내용

□ 개정내용

- 현행: 지정·준지정 품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지지정
- o 개정: 생산단지제도는 유지하되, 지정·준지정 품목구분은 폐지

□ 개정사유

- 법상 지정·준지정 품목으로 구분하여 생산단지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구분실익이 없어 그동안 통합하여 고시하던 것을 현실화
 - 지정품목은 전국적인 생산·출하조절이 필요한 품목, 준지정품목은 지역적인 생산·출하조절이 필요한 품목
- 생산단지제도 유지필요성 : 유통개혁의 핵심인 산지에서 규격농산물의 대량출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산지를 육성하여 산지유통시설 배치, 생산자 조직 육성 등 각종 지원을 집중 필요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행 생산단지 지정('98.5)

- 품목수: 8개품목(가을무·배추, 고랭지무·배추, 고추, 마늘, 양파, 시설채소, 양채류, 파)
- 지정방법: 시군단위로 지정 (373개시군, 1,084개소)

□ 생산단지 운영상의 한계

- ㅇ 생산농가의 생산활동이 기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음
 -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이용해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집단 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지역개념에 그침
 - 생산성 저하, 출하비용의 증대,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 불안정, 농가소득 불안정 등의 문제점과 연계됨

□ 생산단지 운영효과

ㅇ 생산측면 : 개별생산의 지역적인 집단생산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규모

확대와 대규모 생산의 장점 추구

ㅇ 유통측면 : 유통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상품유통 비용의 절감효과, 생산

및 출하의 계획화,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다. 발전방향(생산단지 지원방향)

-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농림부장관이 채소류 주산단지로 고시한 지역에 최우선 지원(농림사업시행지침)
- 앞으로 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설치와 채소계약재배사업 등 산지 유통사업은 주생산단지 위주로 지원할 계획임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참고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고시 예

(농림부 고시 제98 - 23호('98. 5. 19))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기준

품 목	단 지 지	정 기 준
古	지 역	면 적
가을무・배추	읍 · 면	50ha 이상
고랭지무・배추	읍 · 면	30ha 이상
고 추	읍 · 면	50ha 이상
마 늘	읍 · 면	30ha 이상
양 파	읍 · 면	30ha 이상
. 시설채소	시 · 군	20ha 이상
파	시 · 군	100ha 이상
양 채 류	시 • 군	1ha 이상

□ 채소류 주산단지 지정현황

,		전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시군수	373	4	6	6	4	2	33	41	26	46	38	· 57	57	45	8
계	단지수	1084	5	8	9	4	2	68	119	97	140	135	191	185	104	17
가을	시군수	39	1	1	1	_		4	2	2	9	5	3	3	7	1
무· 배추	단지수	110	2	1	4		_	10	3	4	32	18	16	3	16	1
고랭	시군수	30	_	_	_	_	_	_	13	2	_	5		7	3	_
지무· 배추	단지수	86	_			-	_	-	45	2	_	18	-	12	9	
고추	시군수	78	-	_		_	-	7	8	11	11	11	11	16	3	
ユー	단지수	451			_			36	48	74	45	79	58	102	9	
마늘	시군수	46		1				1	2	4	8	3	11	7	7	2
- F	단지수	212		1		_		1	7	10	45	6	72	33	29	8
양파	시군수	22		1		_	-	_	1	_		1	5	8	5	1
84	단지수	67	_	3	-	_	_		1	_	_	1	18	19	21	4
시설	시군수	134	2	3	4	4	2	20	10	7	_ 15	13	20	16	17	1
채소	단지수	134	2	3	4	4	2	20	10	7	15	13	20	16	17	1
양채	시군수	11	-		1	-			5			-	-	-	2	3
류	단지수	11	-	-	1	-	_		5	_		-	_	-	2	3
파	시군수	13	1	_		_	_	1		_	3		7.	. –	1	_
۳	단지수	13	1				_	1		-	3	-	7	_	1	_

□ 채소류 주산단지(예시)

ㅇ 양채류

시	· 도	단지수	단 지 명
7	계	11	
광	주	1	광산구
강	원	5	태백시, 인제군,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경	남	2	김해시, 창원시
제	주	3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0 파

시	• 도	단지수	단 기 :	E C
	계	13		
부	산 `	1	강서구	
경	7]	1	고양시	
충	남	3	아산시, 서천군, 당진군	
전	남	7	여천군, 보성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군	, 진도군, 신안
경	남	1	김해시	

2. 농업관측(농발법 규정보완)

─< 제 5 조 (농업관측)>

- ◇ 가격의 등락폭이 큰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농업관측 실시 의무
- ◇ 농업관측위원회 및 관측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 제도개선의 내용

□ 개정내용

- > 농발법폐지에 따른 농업관측 규정 근거마련※ 농발법 : 농업관측 및 농업관측협의회 설치근거(제 12조)
- ㅇ 농발법보다 농업관측을 강화하여 농업관측위원회 및 관측 전담기관 설치

□ 개정사유

- > 농업관측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이 여러기관에서 분담하고 있어 관측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곤란
- ㅇ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관측기술의 발전 및 자료축적 애로
- ㅇ 관측 각종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시스템 정비를 위해 전담기관 필요
- ㅇ 관측정보에 대한 불신 등으로 생산조정과 연계성 미흡 등

나. 현행의 내용

□ 관측정보의 분석 및 가공

○ 각 기관·단체에서 수집된 자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 농업관 측협의회에서 확정한 후 분산(축산물은 축협에서 분석한 후 축산관측 협의회를 거쳐 분산)

□ 관측정보의 분산

- o 농림수산종합정보망(AFFIS)과 농경연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산
- ㅇ 농업관측월보 및 전문지등을 통해 관측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

□ 관측조사 내용

조사기관	조사사항	조사대상	조사방법
농검	재배의향	식량, 채소, 특용작물	표본농가 면접, 청취조사
	재배면적	전작목	표본농가 실측조사
	작황	9개작목	표본농가 실측조사
	실수확량	21개작목 .	표본농가 실측조사
	소비량	양곡 및 주요식품	농가・비농가 표본조사
농협중앙회	재배의향	채소(고추, 마늘, 양파,	표본농가 면접청취조사
		가을무, 배추)	
	작황	채소(고추, 마늘, 양파)	표본농가 면접청취조사
	가격	전작목	5일시장의 농판가격 조사
유통공사	재배면적 생육현황	정부 및 자체수매대상	파종종료직후 생육최성기
	예상수량 및 생산비	품목(15개)	수확초기 또는 1개월전
축협중앙회	시장조사	한육우, 돼지, 닭(산란,	가격 및 유통단계 자료수집
	사육 및 출하동향	육계)	우편설문조사

다. 발전방향

□ 농업관측 강화방안

- o 대상품목확대 : (현재) 14개 품목 → (확대) 쌀·보리·콩·밀·오이 등
- ㅇ 농업관측협의회(2급)를 관측위원회(1급)로 확대하여 기능강화
 - 축산관측포함, 기상·해외정보, 여러기관 관측 종합분석
- 공표방법: 관측공표일 지정, 일간지·전문지 및 TV방송, 공중정보통신망 등

□ 관측전담기구 강화 방안

- ㅇ 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농업관측센타 설치
- 품목별 전문가 확보(축산관측 포함)

라. 외국의 제도

□ 덧붙임 <참고 3> 참조

마.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 ㅇ 농업관측을 실시하게 하는 기관 설정
- ㅇ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ㅇ 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참고 1>

농업관측조직 및 농업관측센타

- □ 농업·축산관측에 대하여 농경연, 농·축협, 농유공 등 각 기관별로 하고있는 유사 관측업무를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에서 총괄·조정
 - 관측정보의 조사기준(항목, 기관, 대상, 시기 등), 분산방법, 농업관측 위원회 운영,예산(일반·기금 포함)지원 등의 관측관련 업무총괄조정
 - o 기초자료 조사는 농검, 농진청, 농협, 축협, 농유공 등 각 기관이 담당 하되 농업정보통계관실에서 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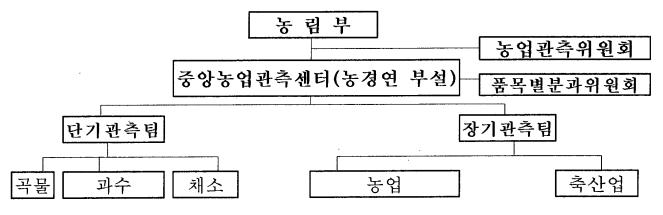
□ 농경연 부설 중앙농업관측센터 설치·운영

- ㅇ 단기관측팀. 장기관측팀으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결정
- o 각 기관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농업관측정보를 가공·분석
- o 가공·분석된 관측정보는 농업관측심의회에서 심의 후 분산
- ※ 축산관측정보는 축협에서 수집·가공·분석한 후 농업관측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분산

□ 농업관측위원회 설치·운영

- 현행 농업관측협의회를 개편, 농업관측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은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에서 담당
- 심의회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생산자, 소비자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간사는 통계기획담당관)
- 심의회 산하에 품목별분과심의회(농경연)와 축종별분과심의회
 (축협)를 설치·운영하고 축산관측협의회는 폐지

<중앙농업관측센터 조직운영 체계(안)>



<참고 2>

농업관측전담기관 형태별 장단점

< 제 1 안 >

o 농경연 부설기관 형태의 농업관측센터 설치(전담기구 신설)

장 점	단 점
○안정적으로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술과 정보의 노하우 축적	o 별도 조직운영으로 비용소요 과다
ㅇ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용이	o 개별기관간 업무의 연계 어려움
○전문인력 확보로 분석·가공 용이	o 하부조직이 없어 자료수집에 한계

< 제 2 안 >

ㅇ 현재와 같이 농경연에 관측실을 두고 전문인력 확충

장 점	단 점
○작은정부 구현 이행 ○인력보강으로 분석·가공 도움	○전문가 부재로 조사자료의 분석·가 공·예측 기대수준 미흡 ○여러기관이 중복 제공하고 있어 예산낭비 등 자료의 일관성 결여 ○관계기관간 의견수렴 등으로 자료 분산 지연

< 제 3 안 >

o 농림부 정보통계관실에 인력보강, 농업관측 총괄

장 점	단 점
○별도기구 설치에 비해 기존인력 이용으로 비용절감 및 작은정부 실현 이행 ○우편조사 및 모니터 요원의 조사에 비해 기초자료 충실, 신뢰도 확립 ○민간조직에 비해 관계기관 업무협 조 용이	○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약 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의 제 기 소지 ○ 관측전문기구 설립 논란 지속

외국의 농업관측 현황

<일 본> [전체 · 노이피출시기((50) 기리피출시기((20) 어드피출시기((20)
□ 연혁 : 농업관측실시('52), 장기관측실시('62), 연도관측실시('63)□ 관측내용
단기관측농림수산성 조사과 관측반에서 실시, 농림수산통계관측심의회 심의
- 농산물, 농업자재 등 26개품목의 수급 및 가격 ㅇ 장기관측
- 농림수산성 기획실 주관, 농정심의회 심의- 미, 맥류, 야채, 대두 등 17개품목의 수요 및 생산전망
<미 국>
□ 연혁 : 가격안정정책 일환으로 시작('22), '70년대초 현재의 관측체계 완성
□ 제도 및 운영○ 농무성 산하 협의체 형식으로 구성된 경제정보체계(EIS)에서 수행○ 국내생산자료는 농무성 농업통계국 주관, 외국생산자료는 세계농업 전망위원회 주관
□ 간행물
ㅇ 농업관측 : 국내농업, 일반경제, 무역 등에 대한 동향 및 전망
o 개별상품정보지: 소맥, 미곡, 사료, 가축 등에 대한 정보
्र नो प्रो र
<대 만> □ 연혁 : 농업관측 제도화('72)
□ 전력· 중립관득 제도와(12)□ 제도 및 운영
□ 세도 및 단정 ○ 경제부 농림국 협조하에 농촌진흥회에서 주관
 관측에 필요한 현지조사는 정부의 농림청 농업경제과가 지방관청의
재건과를 통해 실시
 각 지역에는 담당요원이 있어 농업관측에 관련된 농정보고, 농가경 제조사 등 관측관련업무 담당

- □ 관측내용
 - o 농작물 : 면적 및 수량조사
 - ㅇ 축산물 : 양돈두수 및 가격상황, 돈육공급과 수요량 예측

<참고 4>

현행 농발법의 농업관측 관련조항

법 제12조(농업관측과 생산조정)

- ①농림부장관은 가격의 진폭이 큰 농산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업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관측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되, 농업관측협의회에는 농업인·농업관련단체의 대표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의 결과에 따라 농산물의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재배면적.생산량등을 조정(이하 "생산조정"이라 한다)하거나 출하량.출하시기등을 조정(이하"출하조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④농림부장관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위하여 생산여건등을 감안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생산자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⑤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을 이행한 생산자가 출하하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가격(이하 "하한가격"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⑥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에 따라 발생한 생산자의 손실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단체가 출하자에 대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전할 수 있다
- ⑦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의 약정의 내용 및 방법, 하한가격의 수준 및 결정방법, 하한가격을 보장하여야 할 대상 물량, 손실보전의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농림부장관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수입하는 농산물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국내생산조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6조(농업관측 실시품목)

-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는 농산물의 품목은 마늘·양파·고추·무·배추·파·사과·배 및 포도로 한다. <개정 99·5·4>
-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육우·젖소·돼지·산란계·육계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축산물의 품목에 대하여 농업관측을 실시하여 축산관련 시책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99·5·4>

시행규칙 제17조(농업관측협의회의 구성)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99·5·4>
- 1. 농림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4인,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개정 99·5·4>
- 2. 농업협동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개정 99·5·4>
- 3. 농업인등, 농림관련 단체 및 소비자보호관련단체의 임직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99·5·4>
- 4. 농업관련대학의 교수 기타 농업관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 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99·5·4>
- ③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품목별 농업관측의 자료수집·조사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품목별 협의회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5·4>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품목의 주산지의 농업인등,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및 농업관련대학의 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신설 99·5·4>
- ⑤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99・5・4>

시행규칙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업관측의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 <개정 99·5·4>
- 2. 품목별 생산·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중·장기 동향 및 전망 등의 발표에 관한 사항 <개정 99·5·4>
- 3. 품목별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99·5·4>
- 4. 적정면적의 재배·생산조정 및 출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99·5·4>
-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99·5·4>

시행규칙 제19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회의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의4 내지 제12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의4(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5(회의)

-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6(간사)
- 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농림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제12조의7(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8(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계약생산

─<제 6 조 (계약생산) > ──

- ◇ 농림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또는 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
- ◇ 계약생산・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수요자에게 계약금 지원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o 현행 : 생산자단체, 저장·수출업자와 생산단지 생산자와 계약생산 알선

ㅇ 개정 : 생산자단체, 수요자와 계약생산 장려 및 농안기금 지원

□ 개정사유

- ㅇ 사업물량이 전체 생산량에 차지하는 비중(6%)이 낮아 수급조절기능 미흡
 - ㅇ 손실발생위험 부담 등으로 산지농협이 사업참여에 소극적
 - ㅇ 농민의 계약의식 미숙으로 가격상승시 위약비율이 높음

나. 현행제도의 내용

□ 계약재배 현황

- o 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파, 당근(7)
- 계약재배비중 : 생산량 620만톤(주산지 280만톤), 계약량 36만톤,
 - 생산량대비 6%, 주산지대비 13%

□ 채소계약재배 실시요령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산지 농협의 계약재배 자금으로 활용(정부 80%, 농협 20%)
- 산지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조절 실시
 - 계약가격 : 도매가격, 경영비, 생산비 등을 감안 농가와 협의 결정

- ㅇ 계약물량 판매후 발생한 손익은 정산시 농가와 공동 배분
 - 손익이 계약가격의 ±20% 이내 : 농협이 손익 전액 부담
 - 손익이 계약가격의 ±20% 이상 : 농협과 농가가 손익 분담

다. 발전방향

□ 계약재배 확대계획

- o 계약재배량: ('98) 주산지 13% → (2002) 30%
- 계약재배자금 : ('98) 2,685억원 → ('99) 3,000 → (2002) 4,500

□ 계약생산 추진실태

- 유통명령제, 가격예시제 등의 제도도 계약재배 대상 품목 및 농가를 중심으로 도입함으로써 실효성제고
- ㅇ 사업조합의 경영안전장치 마련으로 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지워자금의 운영수익과 위약금등으로 손실보전계정 설치
 - 회원농협의 유통손실보전자금의 지출범위 확대로 자율성 제고
 - ·('98) 손실보전자금 →('99)교육·홍보 등 운영비까지 지출
- ㅇ 사업활성화를 위해 추진방식 보완
 -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경영비 수준의 하한가격 보장
 - 사업평가결과 우수조합에 운영자금 확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생산자단체의 범위

<참고 1>

채소 계약재배 실시현황

□ 채소 계약재배 실적

(단위: 천톤)

		'95	' 96	'97	'98
총 생 산 량 (A)		2,835	4,780	5,693	6,211
	봄 무·배추	-	_	8	22
계	고랭지무·배추	34	73	.75	127
약	가을 무·배추	47	95	86	90
재	마 늘	_	23	18	25
배	양 파		33	49	70
실	고 추		_	7	. 5
적	대 파	_	. 8	4	6
(B)	당 근	_		· <u>-</u>	12
	계	81	232	247	357
	B/A(%)	2.9	4.9	4.3	5.7

□ 생산자조직 현황('98년말 현재)

	구 분	근거법	개소수	비고
0	작목반	근거법 없음	20,540	참여농가510천명, 평균25호
0	영농조합법인	농발법 제6조	4,214	농업인 5인이상, 자율설립
0	농업회사법인	농발법 제7조	1,595	농업인,생산자단체,농조가 설립
0	농협	농협법 제16조	1,203	지역농협
0	품목별 전국협의회	근거법 없음	20품목	1,000개조합 및 일부영농조합

□ 품목별 전국 협의회 현황('97)

(단위 : ha, 톤, 호)

		전국생	산현황	(인			
구 분	회원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농가수	
사과전국협의회	27	43,857	651,406	26,399(37.4)	633,333(97.2)	26,650	
배전국협의회	11	18,243	219,332	8,301(45.5)	121,386(55.3)	5,674	
포도전국협의회	28	27,196	357,274	9,446(34.7)	115,670(32.4)	14,287	
제주감귤협의회	20	25,781	649,060	25,781(100.0)	649,060(100.0)	36,055	
복숭아전국협의회	24	10,002	127,540	4,657(46.6)	65,023(51.0)	7,292	
단감전국협의회	32	21,795	167,000	14,041(64.4)	112,539(67.4)	10,647	
참다래전국협의회	16	1,400	12,800	422(30.1)	2,829(22.1)	1,192	
유자전국협의회	34	5,100	18,500	2,657(52.1)	10,874(58.8)	10,777	
밤전국협의회	35		108,000	23,977(-)	49,240(45.6)	17,203	
마늘전국협의회	126	38,789	417,746	19,400(50.0)	208,740(50.0)	54,361	
양파전국협의회	53	11,030	646,295	6,560(59.5)	380,480(58.9)	20,931	
대파전국협의회	16	13,600	398,000	2,686(19.8)	78,600(19.7)	5,218	
생강전국협의회	- 19	3,008	27,890	2,550(84.8)	16,979(60.9)	9,613	
고랭지채소전국협의회	40	12,017	387,722	11,056(92.0)	356,704(92.0)	5,436	
고추전국협의회	308	77,900	189,000	36,304(46.6)	87,000(46.0)	370,000	
가을무배추전국협의회)	76	30,626	2,774			_	
화훼전국협의회	45	5,368	553,102	2,790(52.0)	225,480(40.8)	5,495	
약용작물전국협의회	38	13,741	42,769	4,853(35.3)	22,254(52.0)	10,760	
버섯전국협의회	23	3,384	96,934	920(27.2)	6,241(6.4)	2,825	

^{※ 1) &#}x27;97. 11. 21 결성

^{2) ()}는 품목별 전국 생산대비 조직의 생산비율

<참고 2>

주요국 청과물가격정책의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국	EU	대 만
1. 가격정책의 주체	중앙정부	공공법인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중앙정부
 가격정책의 수단 					
1) 직접적 가격	·수입비축	가격차보전+	없음	·시장격리+	·계약재배+
정책 수단		공동출하 ·수매비축		가격지지 	가격차보전
2) 간접적 가격	·수매비축	·산지폐기	·유통명령제	·공동규격제	없음
정책 수단	·유통개선사업	·출하조정	- 물량관리,	(품질규제)	
	·출하조정사업		품질규제,		
			시장촉진		
3.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야채생산출하	1937년 농산물	공동농업정책(행정명령
	및가격안정에	안정법	유통법이래 농	법)	
	관한법률	·과실진훙특별	업법에 규정	,	
		조치법		·	
4. 재원의 성격	공공기금	공공기금	민간기금	민간기금	공공기금
5. 재원의 명칭	·농안기금	·야채공급안정	·생산자 자조금	·시장개입기금	·하절기채소
		기금			가격 보증기금
,		·과실생산출하			
		안정기금		,	
6. 재원조달방안	·정부+운용수익금	・ そ앙정부+都道	·생산자	·생산단체	·중앙정부+
	+장기차입금	府縣+출하단체		·EU 회원국	지방정부+
,	*운용수익금위주	*중앙정부 보조금	*중앙정부 보조금		유통공사+
		위주	위주		도매시장
7. 공동출하	미정착	정착	정착	정착	미정착

4. 자조금의 적립지원(농발법 규정보완)

- ─ < 제 7 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 ─
- ◇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 지급
- ◇ 자조금 조성방법, 보조대상 농수산물과 보조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ㅇ 농발법 폐지에 따른 자조금 규정 신설 및 강화
- ※ 농발법: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운영 보조금 지원(제13조)
- ㅇ 농발법 규정보다 구체화 하기 위해 농안기금에서 보조금 지원내용 신설

□ 개정사유

 WTO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지지에 한계가 있어 생산 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수급안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의 확대 조성 지원필요

나. 현행제도의 내용

- □ '90년 농발법에 실시근거 마련
 - ㅇ 대상 : 돼지, 닭, 우유, 기타 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 □ 자조금 조성방법
 - 생산자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은 자조금조성의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 생산가액의1천분의 5 범위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정함
 - 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보조(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정부가 다음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금에 출연하여 보전)
- □ '98현재 양돈, 양계, 낙농, 감귤에 대해 자조금제 실시중

□ 양돈업, 양계업에 대해서는 자조금 보조

(단위:백만원)

구분	'95조성액			'96조성액			'97조성액		
172	자부담	보조	계	자부담	보조	계	자부담	보조	· 계
양계	212	100	312	183	91	274	164		164
양돈	34	22	66	84	42	126	102	51	153

※ 예산은 1개소당 1억원 이내 보조

□ 현행제도의 문제점

- 과잉생산시 정부의 빈번한 개입으로 인해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과 인식 부족
- ㅇ 자조금 참여농가의 적극적인 참여 저조('96양돈농가의 경우 17%참여)
- o 현행 자조금 지급기준액이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다양한 사업추진에는 한계

다. 발전방향

□ 지원기준의 확대

ㅇ 자조금 조성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지원 대상품목 및 규모의 확대

- o 돼지, 닭, 우유 등 축산부문 위주에서 가격진폭이 심한 주요 채소 및 과수까지 확대
- 지원규모: ('98) 168백만원(축산) → ('99) 2,167(축산167)

라. 외국의 제도

□ 덧붙임: 미국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마.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o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참고 1>

미국의 자조금제도 운영현황

□ 실시품목

- ㅇ 연방 특별법에 의한 품목
- 1990년 현재 자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했던 품목은 17개 (양모, 모헤어, 면화, 감자, 계란, 낙농, 양봉, 쇠고기, 돼지고기, 수 박, 대두, 버섯, 라임, 피칸 등)

□ 주 정부법에 의해 자조금제도는 거의 모든 주에서 실시

□ 실시목적

- ㅇ 각 품목별로 목적이 다르거나 일부는 유사함
- 생산 및 경쟁력 강화, 국내의 시장유지 및 확대, 교육.연구개발, 시장개척, 등 급규격화, 소비자 복지증진 등

□ 자조금 용도(일반적)

o 상품 소비촉진활동(시장확대 유지) 65%, 조사연구 15%, 교육 12%, 기타 8%

□ 낙농축산부문 자조금조성 예

- 실시배경: 과잉생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과잉생산 문제를 소비측 면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의 자구노력
- ㅇ 실시품목 및 부과금액

품목	부과금	부과시기	운영기관	실시시기
계란	계란 360개들이 상자당 2센 트(산란계 3천수 이상 농가 에 한함)		미국 계란위원회	1974
낙농	원유 100파운드당 15센트	집유시	낙농홍보 및 연구 위원회	1983
소	거래시 두당 1달러	유통단계별 - 생우 : 거래시 - 도축우 : 도축시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	1985
양돈	비육돈, 자돈, 번식돈의 시 장가액 및 돈육수입액의 0.25%	도축장	돈육위원회(생산자 대표, 수입업자)	1985

농발법상 자조금 관련조항

법 제13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림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자조금의 조성방법등)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 1. 제5조의2 제1호내지 제6호의 생산자단체
 - *농.축.수(어촌계포함).임.엽연초.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2.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특정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이 회원인 사단법인
-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당해 생산자단체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의 조성방법과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령 제24조(보조금의 지급대상 농림수산물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돼지
- 2. 닭
- 3. 우유
- 4. 기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품목

시행령 제25조(보조금의 지급)

-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자조금의 사용목적
 - 2. 자조금의 조성액
 - 3.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육조절사업
 - 2.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 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 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24조의 보조금 지급대상 이 되는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이 조직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의 100분의 50범위내로 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축산물인 경우에는 축산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농산물인 경우에는 농수산물가 격안정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금에 출연하여 보전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자조금의 조성기준)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이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는 생산자단체 (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에 납입하는 금액은 자조금조성의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 물생산가액의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산자단체가 정한다

시행규칙 제27조(자조금관리규정 기재사항)

-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금조성단체가 정하는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사업
 - 3. 명칭
 - 4. 사무소의 소재지
 - 5. 회원의 자격
 -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탈퇴.제명시의 납임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
 - 8. 자조금의 납입방법.조성기준의 산정방법
 - 9. 자조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과 수납장소
 - 10.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1.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의 정수.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사항
 - 12.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5. 가격예시(농발법 규정보완)

-< 제 8 조 (가격예시) >-

- ◇ 농림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 예시
-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하한가격보장을 위한 적절시책 추진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ㅇ 현행 : 농발법 제12조의 하한가격 조항
 -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가 생산조정·출하조정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하여 보장하고 있음
- 개선 :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파종기 이전에 하한 가격을 예시하고, 수확기의 가격이 예시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를 보호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제도

□ 개정사유

ㅇ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격예시제 내실화 도모

나. 제도의 운용실태

□ 예시가격 사례('98.10.29)

품	목	경영비(원/kg)	예시가(원/kg)	예시가기준
가 읕	을 무	64	65	경영비
가을	배추	49	50	경영비
마	늘	889	1,200	경영비+자가노력비 80%
양	파	121	180	경영비+자가노력비 80%

- 저장성 없는 품목(무·배추) : 경영비 수준
- 저장성 있는 품목(마늘·양파) : 경영비+α(자가노력비의 80%)
- ※ 경영비: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임차료, 고용노력비 등
 - 조사기관: 농촌진흥청, 조사작목: 59작목, 조사농가: 7,596농가

다. 발전방향(가격예시제 운용방안)

□ 대상품목

○ 대상품목 : 우선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무(봄·고랭지·가을), 배추 (봄·고랭지·가을), 마늘, 양파만 실시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및 대상농가 확대 추진

□ 하한가격 보장

- o 하한가격 보장을 위해 가락시장도매가격이 하한가격보다 3일 연속 낮을 경우 산지폐기후 농가보상이나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 o 출하기획단을 통한 지역별·시기별 출하조절 및 유통명령발령

□ 추진방법

- ㅇ 하한가격 예시 대상품목 예
 - 가격변동이 심한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 ㅇ 농림부장관은 주요품목에 대해 하한가격을 예시
 - 농업관측결과, 경영비, 생산량,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미래의 수급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격결정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해 품목의 경영비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주장 일부 제기
- 농산물 하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수매비축, 유통조절명령, 출하조절, 산지폐기 등 수단강구

라. 외국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

□ 덧붙임: 외국의 채소류 수급안정 제도

마.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가격예시 대상 품목

<참고>

외국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

일 본

□ 지정채소 가격안정사업

- 기요: 지정산지의 생산농가가 등록출하단체(농협 등)을 통해 지정
 소비지에 출하하여 판매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차액보전
- ㅇ 시행주체 : 채소공급안정기금
- ㅇ 대상품목 : 14개품목 29개 작형
- 지정산지 1,198개
 - 지정소비지: 167개도시, 197개 시장
 - 등록 출하단체 : 57개 (농협연합회 51, 농협 2, 양파상협 등 4개단체)
- ㅇ 가격보전 : 판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이하 형성시 차액보전
 - (보증기준가격 평균판매가격)×0.9×출하수량
 - · 단. 중요채소는 (보증기준가격 평균판매가격)×1.0×출하수량
 - ※ 보증기준가격: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0.9를 곱한 가격

□ 중요채소 긴급수급조정사업

- 개요: 지정채소 중 특히 수급조정이 필요한 4개품목(양파, 양배추,
 무.배추)에 대하여 일정요건 발생시 실시하는 수급조정사업
- ㅇ 시행주체 : 전국채소수급조정기구
 - 전농, 현경제련, 농림중앙금고 등이 출자(56개회원)
 - 상근직원 4명, 출자금 807백만엔
- ㅇ 추진방법
 - 출하예정지역 도매가격이 기준가격의 80% 하회, 150% 상회시
 - → 산지조정 : 출하억제, 출하촉진
 - 출하예정지역 도매가격이 기준가격의 70% 하회시
 - → 출하조정: 가격이 보다 좋은 타지역에 출하처 변경
 - → 산지처리 : 저장, 가공용 판매, 산지폐기

□ 특정채소 등 가격안정사업

- 개요 : 지방정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정 채소 가격안정사업과 유사
- ㅇ 시행주체 : 도도부현 구역단위로 설립된 법인
- ㅇ 대상품목(39개): 특정채소(27개품목) + 지정채소(양파, 감자를 제외한 12개 품목)
- ㅇ 가격보전: 판매가격이 보증기준가격 이하 형성시 차액보전
 - (보증기준가격 평균판매가격)×0.8×출하수량
 - ※ 보증기준가격: 과거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0.8을 곱한 가격 단, 지정채소는 0.9를 곱한 가격

EU

□ 시장격리(Market Withdrawal)

- ㅇ 결정주체: 생산자단체
- 자금지원 : 3년간(생산가액의 1 ~ 3%)
 - ㅇ 기금조성 및 사용
 - 재원 ; 판매량에 따른 농가로부터의 징수금 및 정부보조금
 - 사용 : 시장격리 수행시 대농가 보상금
 - ㅇ 격리가격은 수매가격 + 기준가격의 10%의 범위내

□ 공공수매(Public Buying - in)

- ㅇ 대상품목 : 생산자단체가 시장격리하지 않은 품목
- o 수매시기: EU 대표시장가격이 3일 연속 수매가격 이하로 하락시
- ㅇ 수매중단 : 시장가격이 3일 연속 수매가격 이상 상승시
- ※ 기준가격 및 수매가격
- 기준가격: 과거 3개년 시장가격과 생산자 소득지지 수준
- 수매가격 : 품목별로 기준가격의 30 ~ 65% 사이에서 결정

6. 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

--<제 9 조 (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 >-

- ◇ 저장성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농안기금으로 수매하여 판매·수출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 ◇ 수매사업을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에 위탁 가능

가. 제도개선내용

□ 내용상 차이는 없음

o 수매사업위탁기관에 기존의 농·수·축·임협중앙회 이외에 인삼협 중앙회를 추가

나. 현행제도의 내용

□ 정부수매사업

- o 출하조정사업: 저장성 없는 농산물(무·배추 등)
 - 수매 및 방출 : 농협이 밭떼기로 수매하여 폐기하거나 판매·수출
- ㅇ 정부비축사업 : 저장성 있는 농수산물(마늘, 양파, 사과, 수산물)
 - 수매 및 방출 : 농수협이 생산자로부터 수매하여 유통공사를 통해 판매
- o 수매가격: 예시가(콩), 하한가(마늘·양파), 시중가(사과·수산물)
- ㅇ 판매가격 : 시중가의 70%이상에서 정책적으로 결정

□ 정부수매실적 : ('95) 80천톤 → ('96) 56 → ('97) 49 → ('98) 39

(톤, 억원)

	'95	'96	'97	'98(계획)
ㅇ 농 산 물	55,125(180)	31,122(282)	7,902(130)	10,400(174)
- 마 늘	1,752(19)	13,850(165)	-	~
- 양 파	42,953(64)			
- 사 과	3,060(29)	1,308(18)	2,000(28)	1,600(21)
- 콩 등	7,537(68)	15,561(99)	5,902(97)	8,800(153)
ㅇ 수 산 물	25,106(508)	24,413(544)	40,854(682)	28,701(666)
계	80,231(688)	55,535(826)	48,756(812)	39,101(1,035)

다. 수매제도 개선방향

☐ 수매업무를 유통공사에서 생산자단체로 이관, 일관적인 수급안정 추진 ☐ 가격동향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매나 방출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도입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o 수매·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UR 농업협정문상의 국내보조

감축대상보조와 허용대상 보조로 구분하여 감축대상보조는 이행기간 내에 일정비율로 축소

□ 감축대상보조

- ㅇ 무역왜곡 효과를 유발하는 국내보조
- ㅇ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

□ 최소허용보조(De-minimis)

- ㅇ 감축대상에는 포함되나 감축약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서
- 해당년도의 특정품목 총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 농업 총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은 품목 불특정적 국내보조가 있음 ※ 개도국(우리나라 포함)의 경우 그 비율을 10%로 우대 적용

□ 허용대상국내보조

- ㅇ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기준
 - 해당보조가 소비자의 부담이 아닌 정부의 공공재정계획에 의한 보조
 -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보조
- ㅇ 허용대상 국내보조의 유형
 - 정부의 서비스 정책
 - · 정부의 일반서비스정책 : 연구사업, 교육훈련, 정보·유통 및 판매촉진, 운송 수단 등 하부구조지원등
- · 식량안보목적의 공공재고, 국내식량원조
 -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 생산과 무관한 소득지원, 소득보험이나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 · 자연재해 구호지원, 탈농지원, 휴경보상·투자원조를 통한 구조조정지원
 - 환경보전지원 등

※ 우리나라의 농산물협정 이행계획서상 국내보조 분야

ㅇ 특정품목적 보조

- 정부수매, 생산장려금 지급, 국내외 가격차보전, 적체원유처분결손보전 등이 있으나 이중 품목별 생산액의 10%를 초과하여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5개 품목)의 정부수매에 의한 국내보조

o 품목불특정보조

- 영농자금 이차보전, 양축자금 이차보전, 특수비료판매 처분손 보조가 있으나 그 합계가 총 생산액의 10% 미만으로 감축대상에서 제외

<참고>

수매·비축사업 현황

정부출하조정사업

□ 목적

 정부가 과잉생산 또는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저장성이 없는 무.배추 등 채소류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 판매.수출.기증.페기 함으로써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ㅇ 수매 및 보관
- 과잉생산 또는 수급불안 예상시 산지에서 농협을 통하여 수확기 이전 에 밭떼기로 수매
- 수매포장은 농가가 관리
- ㅇ 판매방법
- 판매처 : 도매시장 판매원칙
- 가격폭락시 : 출하를 중지하거나 산지에서 폐기
- 소비자가격 폭등시 : 수매물량의 출하를 확대
- ㅇ '97년의 출하조정사업 처럼 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에는 실효성 저하
- 배추 등의 산지가격안정으로 포전매취 실적이 저조
- 사업규모가 당초 50천톤, 예산은 100억 규모였으나 사업실적은 1백톤 18억 집행에 그침

□ 기대효과

ㅇ 수급이 불안정한 저장성이 없는 무.배추 등 채소류 가격안정에 기여

정부비축사업

□ 목적

- o 정부가 저장성이 있는 농수산물을 성출하기에 수매하여 농업인의 소득증 대에 기여하고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방출하여 소비자가격 안정 도모
- ㅇ 정부가 부족한 농수산물을 수입비축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품목

- ㅇ 수매비축
- 농산물 : 콩, 땅콩,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
- 수산물 : 김, 간미역, 마른미역, 마른오징어, 냉동오징어, 냉동고등어, 냉동조기, 냉동명태, 냉동갈치 등
- ㅇ 수입비축
- 농산물 : 콩, 팥, 참깨, 땅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 사업방법

- 수매가 결정은 과잉.과소생산이 되풀이되는 마늘,양파의 경우는 사전예시된 하한가격(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
- ㅇ 과잉생산 품목은 수급 및 시장상황에 따라 시가 수매
- ㅇ 콩, 참깨 등 상시 부족한 농산물은 최저가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수매
- '97년의 경우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 수급안정으로 정부수매 취소

□ 기대효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

7.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신설)

- ---< 제 10 조 (유통협약과 유통조절명령) >-
- ◇ 생산자·수집상·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등이 자율적인 수급 및 품질향상을 위해 유통협약 체결
- ◇ 생산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와 협의를 거쳐 유통 명령 발령

가. 제도 개선내용

□ 개선 내용: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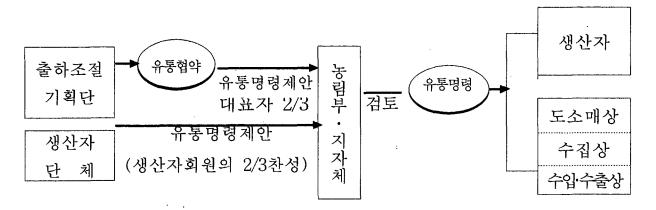
○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가격안정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생산자·소 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부패·변질이 쉬운 채소류·우유 등에 대하여 농·소·상·정이 참여하는 「유통협약」및「유통명령」제도 도입

□ 제도도입사유

-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직접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어려워 농· 소·상·정의「유통협약」및「유통명령」정책이 새롭게 대두
- 농산물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민들이 제값받는 것인데 정부가 주도하는 기존의 계약재배·수매비축 등의 시책만으로는 「농산물 제값받기」에 한계
 - 하한가격 보장을 위한 생산·출하약정제도를 도입('93)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으로 '97년 부터 중단
 - 채소계약재배사업('95)도 농협의 소극적 참여와 농민의 계약의식 미숙으로 어려운 실정(위약율: 마늘 27%)

나.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추진방안

□ 추진체제



※ 유통명령대상은 유통협약, 대상품목의 유통특성, 파급영향 등을 감안 결정

□ 대상품목

- o 부패·변질이 쉬운 주요 농산물 중 농림부령으로 규정하는 품목
- 관리가 가능한 계약재배 품목이나 생산이 전문화되고 주산지화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실시
 - 계약재배품목 :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
 - 생산의 전문화 및 주산지화 품목 : 감귤, 우유 등

□ 제안권자 및 제안절차

- 출하조절기획단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출하조절기획단이 유통협약을 하고, 협약내용의 이행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생산자·유통인대표 2/3이상 찬성으로 장관에게 제안
- 생산자단체 : 농림부령으로 규정한 생산자단체가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럼 및 생산자단체회원의 2/3이상 동의 후 장관에게 제안

□ 제안시기

- >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획단 또는 생산자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제안 가능
- 당면한 과잉생산을 해결하기위한 명령도 가능하고, 미래의 상황에따른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기 위한 명령제안도 가능

□ 발령권자

- ㅇ 유통명령효과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농림부장관이 발령
- 감귤 등과 같이 유통명령 효과가 지역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시·도 지사도 발령 가능

□ 발령내용

- o 생산조정 : 농업관측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및 폐기·도태, 간벌·폐원 등
- o 출하조절:출하시기 조절,출하량 조절 및 수매·비축 등
- 품질규제 : 판매 최소등급·크기·숙도 기준 및 포장규격 표준화 등
- o 홍보·판촉 : 소비확대, 수출, 홍보 및 공동연구 등
- ㅇ 자조금조성 : 출하조절, 홍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수수료 강제징수 등

□ 지원 및 제재

- 아유통협약과 명령의 시행과 이행에 따른 경비 및 손실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ㅇ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농안법)

다. 외국의 제도

o 미국은 1937년 유통협약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을 제정하여 생산자의 2/3 찬성하에 채소·과일·특작 및 우유에 대하여 유통명령 발령(현 40개)

< 미국의 유통명령 유형 >

구분	유형		내 용														
	판매 규제	생산자할당	개별 생산자에게 판매량 할당생산자가격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														
		시장할당	특정시장에 출하하는 물량 규제가격차별화 이론을 청과물에 적용														
물량통제		출하유보	ㅇ 저장을 통한 판매 규제														
	유통	취급자할당	ㅇ 일정 기간동안에 취급물량 규제														
								ㅠㅎ 규제									
	11 711	室の介色	- 일반적으로 공휴일 전후														
품 질 통 제		통 제	ㅇ 시장출하 농산물의 등급, 규격 통제														
수 요 촉 진			ㅇ 포장 및 유통의 규격화, 연구, 보조, 광고														

- 프랑스는 1975년 근거법(Interprofecsions Agricoles Loi)을 제정하고 채소·과일사업자협회(INTERFEL)의 만장일치 동의하에 유통명령 시행 (현 23개)
 - ※ 스페인·오스트리아 도입예정, EU차원에서 연구 검토 중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o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등 유통명령에 포함될 사항

□ 시행규칙 개정

- ㅇ 유통명령을 할 수 있는 품목
- 부패·변질하기 쉬운 농수산물
- ㅇ 유통조절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o 유통조절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 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1>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의 내용

☐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

- 내용: 수급불균형이 현저하여 가격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생산자소비자· 유통상인·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수급안정을 위한 상호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
- o 사례 : 5cm 미만의 저급 양파의 유통금지 협약('98.5.8)
- ㅇ 당사자별 역할 예
- 생산자, 수집상, 저장업자 : 품위저하품 출하억제, 산지폐기등 출하면적 자율조정
- 도·소매업자 : 출하 및 가격정보제공
- 소비자 : 소비확대
- 정부 : 유통정보제공, 저급품 출하억제 지도, 자율적인 출하조절 유도
- ㅇ 유통협약 내용 예시
- 생산자단체, 수집상은 시기별 출하계획에 의거 성실한 출하실시
- 품위저하품에 대한 자율적인 수매 및 출하억제 실시
- 소비확대 운동을 전개하여 과잉물량 흡수
- 정부는 가격지지를 위해 적극노력

□ 유통명령(Marketing Order)

- 이 내 용 : 유통협약의 한계점인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생산자·유통인의 동의하에 물량·품질통제 및 시장지지등의 유통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o 사례: 미국의 Marketing Order 우유 등 40개, 프랑스는 감자등 23개

<참고2>

유통협약·유통명령사례 비교표

구 분	미 국	프 랑 스	제주 감귤
도입시기	1937	1975	1997-1999.12
및 근거	Agricultural Marketing	Interprofessions	감귤생산조정 및 유통에
	Agreement Act	Agricoles Loi	관한 조례
담당	ㅇ 품목별 집행위원회	o 채소·과일 생산자·유통인	ㅇ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기관	- 생산자 대표가 1/2이상	협의회(정부가 승인)	및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
		- 생산자단체,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으로 구성(8명)	
	ㅇ 농림부 유통국(USDA	ㅇ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이 제주도, 사군, 읍면
	AMS), 5개 지방시무소		
절차	① 생산자단체 제안	① 전국사업자간 협의회	① 생산조정계획수립
		대표자 제안	(제주지사)
	② 농림성 주관 청문회	② 소위원회 연구(경제·기술	② 읍·면·동 및 마을별 생산
	개최	측면) 및 대안제시	조정계획 수립(시장・군수・
			읍·면·동장)
	③ 농민투표(Referendum)	③ 대표자간 합의(만장일치)	③ 농기별생산계획량 확정고지
			(시·읍·면 위원장)
	④ 농민의 2/3찬성 및	④ 관계부처 협의	④ 생산조정 이행여부 확인
	출하업자의 동의		지도(마을위원회)
	⑤ 농림부장관 공포	⑤ 법으로 공포	·
사례	ㅇ 33개주에서 40개	o 감자 75mm이상 유통금지 등	ㅇ '97년 생산량을 신고량 701
	유통명령제 시행중	23개 유통명령 시행 중	천톤 보다 적은 600천톤
			으로 생산 조정
			- 실제 생산량 647천톤
지원	ㅇ 정부지원 없음	ㅇ 정부지원 없음	ㅇ 위원회·출하연합회
			운영비 일부지원
			※생산조정에 따른 지원없음
제재	ㅇ 할당량 초과시 3배 벌금	ㅇ 500프랑~피해전체액수	o 행정·재정 지원 중단
			ㅇ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장 도매시장

여 백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

--- < 제17조 ~ 제20조 > -

- ◇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절차 규정
- ◇ 제18조 (개설구역) : 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 ◇ 제19조 (허가기준): 도매시장 허가기준
- ◇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를 다소 강화 : 경쟁촉진, 거래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포함

□ 개정사유

개설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시장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도매시장 관리의 내실화 도모

나. 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

-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지방 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시가 개설하되 시의경우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 o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시는 업무규정과 관리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규정 변경시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함

□ 도매시장 개설구역

-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시의 구역으로함
- o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접한 구역을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음

□ 도매시장 허가기준

- o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 ㅇ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ㅇ 업무규정이 도매시장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적합할 것
- ㅇ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할 것

□ 개설자의 의무

- o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설과 합리적인 관리
- ㅇ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 ㅇ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 ㅇ 투자계획서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수립ㆍ시행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o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도매시장의 개설구역

□ 연 혁

- '51: 시청소재지인 도시에 중앙도매시장 개설. 중앙도매시장의 업무 구역은 상공부장관이 지정(중앙도매시장법)
 - 업무구역 내에서는 도매시장 취급물품에 대한 유사도매행위 금지
 - ㅇ '73 : 개설지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당해시의 행정구역 일원으로 함
 -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지역을 도매시장 개설지역으로 포함

□ 현황

- ㅇ 도매시장 개설구역은 특별시.광역시.시의 행정구역으로 함
- 공영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구리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시 행정구역
- 구리도매시장은 당초 서울 동부권도매시장으로 서울시내에 입지를 검토
 하기도 하였으나 구리시로 변경확정
- 사업비 부담비율 : 국고 50%, 서울 23%, 경기도 17%, 구리시 10%
- 개설구역: 구리시·남양주시, 서울시 동북권 6개구(동대문·중랑·성북· 강북·노원·도봉구)

□ 개설구역 의의

- ㅇ 건설이전단계에서 개설권역내의 유통량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규모 추정
- 목표년도 까지 당해 권역의 인구, 소비량 등의 각종 변수를 분석하여 도매시장이 공급가능한 물동량 규모 추정, 적정 부지·건물 등 확보
- ㅇ 도매시장 유통량 추정을 통해 적정 운영관리계획 수립
- 시설배치, 물류동선 및 운영관리 사업자 선정, 관련상인 확보 등
- 손익분석, 투자효율성 분석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
- ㅇ 개설지역내 상인 등의 이전으로 유통근대화 촉진
- 낙후된 시장시설 정비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
- ㅇ 개설구역내 지자체에 재정적 기여 및 행정처분권 집행 등의 권한 발생
- 거래제한 고시를 통한 개설구역내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거래 질서 확립 및 영업활성화 유도(농안법 개정시 거래제한고시 폐지)

2. 도매시장 관리 · 운영

- < 제 21 조, 제 22 조 >

- ◇ 도매시장의 관리(제21조)
 - o 개설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나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 도매시장의 운영(제22조)
 - ㅇ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
 - ㅇ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함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현재는 관리사무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지방공사나 공공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였으나 개정안은 모두 시장관리주체로 동등하게 인정
- ㅇ 관리구역을 당해 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2개이상의 도매시장도 관리 가능
- ㅇ 도매상제 도입 근거 신설

□ 개정사유

- 시장관리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장관리 주체로 인정하고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관리주체의 동격부여
- ㅇ 도매상제 도입 : 별도 검토(" 뒤 도매상 지정 항"참조)

나. 현행제도의 내용

□ 시장관리 연혁

- '51. 6 : 중앙도매시장법에서는 공익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도매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 ㅇ '76. 12 : 지정도매인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를 하도록 규정
- '86. 12 :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가 관리업무 수행 가능
- o '93. 6 : 시장의 관리는 지방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
- 지방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지정도매법인이 관리 가능토록 예외 명시

- ㅇ '94. 11 : 공무원에 의한 관리사무소제도를 원칙
-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 지방시장도 개설자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도매법인의 관리 조항 삭제

□ 도매시장 현황

- o 관리·운영 업무 구분
- 관리업무 : 상인 인·허가(취소) 및 지도감독, 거래질서유지 등 공권력 적 업무와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 운영업무 : 수탁판매, 대금결제 등 상행위
- o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담당 주체
- 현재 관리업무는 개설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가 담당
 - · 관리사무소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관리공사(18개 공영 도매시장 중 가락·구리시장) 또는 공공출자법인에 의해 관리
 - ※ 다만 관리공사는 공권력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관리업무가 시와 공사로 이원화
- 상행위인 운영업무는 시에서 지정한 민간법인(도매시장법인)이 수행
- ㅇ 일반법정도매시장
- 민간업자가 개설자에게 도매시장 시설물을 기부체납 또는 무상사용 토록 하고 운영권(도매시장법인)을 가지고 자기소유 시설인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음(공정거래를 위한 공권력 행사 곤란)

다. 외국의 도매시장 관리운영 실태

ㅇ 일본 : 관리운영이원화

ㅇ 대만 : 관리운영일원화

도매상 체제인 미국은 도매회사와 별도로 상인조직이 시장관리를 수행하므로 실질적인 관리운영 이원화

<참고>

주요 도매시장별 관리운영형태

도매시장	관 리 방 식
프랑스 런지스 도매시장	ㅇ 파리시가 개설, 관리공사가 시장운영관리
네덜란드 알스미어화훼경매장	ㅇ 꽃 판매협동조합이 운영
독일 본 Central Market	ㅇ 생산자 협동조합이 운영
독일 프랑크프르트 Gross Market	ㅇ 130여 도매상이 영업
영국 New Covent Garden Market	ㅇ 관리운영 주체는 개인회사
이탈리아 로마 도매시장	o 개설자는 시의회로 상인, 농민 등으로 운 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벨기에 Sint, Truiden시장 등	ㅇ 생산자 협동조합이 직접운영관리
벨기에 Mechelen 시장 ·	o 시가 일정시설을 제공, 상인들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free market
미국 뉴욕 헌츠포인트도매시장	ㅇ 70여 도매상이 시장 운영관리 직접수행
미국 시라쿠스 중앙뉴욕시장	17개 도매상, 100여명의 농민(직판장)이 공동운영시장관리위원회(Board)가 구성, 시장관리
미국 LA 농산물도매시장	ㅇ 24개 도매상이 시장 운영관리 직접수행
대만 대북 제1과채비발시장	ㅇ 대북시에서 민관합작공사를 설립,운영
일본 동경 오다도매시장	ㅇ 시장 운영은 도매업자, 관리는 공무원

3. 도매시장법인 지정

- ─ < 제 23 조(도매시장법인 지정) > −
- ◇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
 - o 3 ~ 10년의 지정유효기간 설정가능
-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할 수 없음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o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과 동일 호적에 있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를 허용
-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기준을 폐지

□ 개정사유

- ㅇ 동일 호적안에 있는 자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호적만을 분리하면 적용이 제외됨
- 보증금과 운전자금의 확보여부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심사시 심사로써 통제가능함

나. 현행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ㅇ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지정함(법)
 - 3 ~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개설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적정수의 범위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시행령)

□ 도매시장법인의 자격(법)

- 해당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
 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되거나집행이 면제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 임원중 판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없을 것
- 이 임원중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현황

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지정기간
서울 가락동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강동수산,서울건해산물	'98.1.1 - 2000.12.31(3년) "
부산시	부산청과, 항도청과	'98.12.4 - 2003.12.3(5년)
대구시	대구중앙청과 영남청과 대한청과	'97.5.15 - 2002.5.14(5년) '97.5.15 - 2000.5.14(3년)
	제일청과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99.4.1 - 2002.5.14(3년) '97.5.15 - 2000.5.14(3년) '99.4.1 - 2002.5.14(3년)
인천시	인천농산물 건영농산, 덕풍청과	'97.1.11 - 2002.1.10(5년) '97.1.11 - 2000.1.10(3년)
광주시	광주청과, 광주중앙청과 호남농산물	'96.2.27 - 2001.2.26(5년) '96.11.8 - 2001.11.7(5년)
대전시	대전청과,대전중앙청과,대전수산,한밭건해산물	'97.7.1 - 2000.6.30(3년)
울산시	울산중앙청과,울산중앙수산,울산건해산	'95.7.20 -2005.7.19(10년)
춘천시	호반농산	'98.11.10 -2001.11.9(3년)
구리시	구리청과,고려청과,강북수산	'97.3.10 - 2000.3.9(3년)
안양시	태원농산,동안수산	'97.7.16 - 2000.7.15(3년)
안산시	안산수산	'97.11.1 - 2000.10.31(3년)
수원시	수원청과,세류청과,수원수산	'98.2.28 - 2003.2.28(5년)
청주시	청주청과 청주수산	'97.7.1 - 2002.6.30(5년) '98.3.1 - 2001.6.30(3년)
충주시 천안시 전주시	충주청과유통,충주수산 천안청과 전주청과,전주수산	'98.7.29 - 2001.7.28(3년) '98.4.12 - 2001.4.11(3년) '93.10.11 - 2003.10.10(10년)
익산시 창원시	이리청과,이리수산 경남청과	'97.12.31 - 2000.12.29(3년) '96.11.15 - '99.11.14(3년)

4. 공공출자법인

< 제 24 조 (공공출자법인) > -

-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공공출자법인의 출자자 :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농림축수협등, 농수산물의 거래상인과 그상인단체
 - ㅇ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축수협이 출자

가. 제도개선 내용

□ 현행과 같음

나. 현행 제도의 내용

□ 현황

- ㅇ 개설자는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수행기능
- ㅇ 공공출자법인의 출자자
 -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수축협 등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도매 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의 농수산물거래상인과 그 상인단체, 도매 시장법인,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자체, 관리공사, 농림수축협등의 공동출자액은 총출자액의 50%를 초과해야 함
- ㅇ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
 - ※ 공공출자법인으로 목포 상동농수산물도매시장 1개소 운영

□ 설립 부진사유

- 공무원의 상행위 직접 관여기피와 설립운영에 따른 위험부담 등으로 설립추진에 소극적인 태도
- ㅇ 개설자 외의 출자자는 지분 과소 참여로 기대이익 실현 불가능 우려
- ㅇ 도매시장법인은 기존 독점 경영에 대한 기득권 상실
- ㅇ 상인단체의 출자제한과 이익배당 문제의 곤란

□ 공공출자법인의 장·단점

<장 점>

- 관리사무소 미설치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해소와 동시에 지자체는 시장사용료 수입 등 안정된 수익보장
- 주식회사 형태인 공공출자법인이 관리와 운영을 하므로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써비스도 제고될 수 있음
- 시가 직접 도매시장을 관리하지 않고 경영마인드를 가진 법인이 관리함으로서 도매시장 수지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해결

<단 점>

- o 현행 이원화로 추진시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없으나 공공 출자법인 설립시에는 추가로 출자금이 소요
- 인허가, 시장내 질서유지 등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행정 조치가 어려움(권한위임의 한계로 개설자가 조치)
- 공공출자법인은 단일 운영주체이므로 구역내 유사도매시장 등 기존 상권 흡수가 어려움

5. 중도매업 허가

---< 제 25 조 (중도매업의 허가) >---

◇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중도매인의 거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금 또는 담보를 도매 시장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폐지
- o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과 동일 호적안에 있는 자는 도매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허용

□ 개정사유

- 이 보증금 납부조항 폐지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상호거래약정 등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상 최저보증금수준은 거래규모에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의 상호 신용도에 따라 거래규모가 결정되는 상황임(법정 최저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힘등)
- * 일본 도매시장법에도 중도매인 및 매참인의 보증금 납부제도 없음
- 주주 및 임직원과 동일 호적안에 있는 자의 중도매업 금지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완화
 - 호적만을 분리하면 적용이 제외됨

나. 현행제도의 내용

□ 보증금 납부

-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제공하는 거래보증금 및 담보는 중도매 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결정
 - * 보증금 수준(현 시행규칙 제14조) : 100만원 이상(가락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1인당 평균 28백만원)
- 따라서, 법인은 중도매인 거래한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판매대금
 이 거래한도를 초과해도 영업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미수금
 관리를 하고 있음

□ 허가조건

-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 한자 및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o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자
- ㅇ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 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o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

□ 집단적인 경매 불참 및 매매참가인의 경매 방해 금지

□ 중도메업의 개설 유효기간 설정

o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업 허가시 3~10년이내의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

다. 외국의 제도

□ 일본의 경우에도 중도메인 및 메메참가인의 보증금 납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6. 경매사의 임면

---< 제 27 조 (경매사의 임면) > ---

- ◇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제27조)
 - o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임면
- ◇ 경매사의 업무를 명시하고 형법관련 규정적용 명시(제28조)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할 경우 개설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삭제
 - 임명승인 취소가능 규정도 삭제
- o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집상 또는 그 임직원은 경매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o 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업무에 종사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

□ 개정사유

-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이므로 임면승인의 사전적 규제보다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활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 특히, 수뢰와 관련해서는 법제28조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승인제의 필요성이 적음
- o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도매시장법인 소속의 경매사는 당해 도매시장내의 타유통주체와의 엄격한 분리
- 결직금지는 개인의 직업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며,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신분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음

나. 현행제도의 내용

□ 경매사의 임무

-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수탁받는 농수산물을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주는 매매자의 역할
 -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가격평가, 경락자결정 등 도매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수행
- ㅇ 경매사는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의 핵심적 역할 수행
 - 경매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폐지)

□ 경매사의 자격

- ㅇ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자로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파산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 ㅇ 경매사는 형법 129조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봄
 -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 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 부정퇴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경매사의 임면

- ㅇ 도매시장법인은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함
- · ㅇ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 임면시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폐지)
 - 개설자는 경매사가 명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임면승인 취소를 할 수 있음(폐지)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개정

- ㅇ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경매사의 수
- ㅇ 경매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 자격시험절차, 합격자등록 및 자격증교부 등

<참고 1>

경매사 공영제 검토

□ 검토배경

- 경매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요구되나 법인에 소속되어 법인의 이익
 대변하기 때문에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불만 야기
 - 판매잔품을 중도매인에게 떠 넘기기
 -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
 - 중도매인과 담합하여 낙찰가격 조작
- 경매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매사를 개설자 소속으로 하는 경매사 공영제 의견 제기

□ 경매사 소속 검토

- 경매사의 역할은 경매대상물품을 가급적 높은 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를 책임지는 수탁주체와 분리될 수 없음
 - 분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주영업인 판매기능이 제3자에 의해 좌우 되고 자신의 영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 ㅇ 출하자 이익을 위해서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이 유리
 - 경매에서 가격이 높게 나와야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 수입도 많아 지는 것임 → 출하자와 도매시장법인간은 상호이익이 일치함
- ㅇ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한다고 해서 부조리가 근절되는 것이 아님
 - 경매과정의 녹음·녹화, 판매원표의 철저한 관리, 불공정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 등 부조리 제거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당함
- 공무원 신분의 경매사는 공정성이 다소 제고될 수 있으나, 고가판매, 신속한 물량처리에는 한계

□ 주요 외국의 경매사제도

구 분	한 국 (가락)	일 본 (오다)	대 만 (대북)	미 국 (뉴욕)	프랑스 (런지스)
시장관리	관리공사	동경도	정부위탁 (공사직영)	시위탁 (용역회사)	관리공사
운영형태	도매시장 중심운영	도매시장 중심운영	도매시장 중심운영	도 매 상 중심운영	도 매 상 중심운영
거래방법	경매·수의	경매·수의	경매·수의	수 의	수 의
경 매 사	도매법인 소 속	도매법인 소 속	공사소속		_

^{*} 현재까지 경매사 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대만의 경우만 경매사를 공공출자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참고 2>

경매사 자격시험 현황

가. 실시근거 : 농안법시행규칙 제16조(경매사의 자격시험)

ㅇ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유통공사가 실시

나. 응시자격: 연령, 학력, 경력제한 없음

<임면 제한자>

-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다. 시험방법 및 과목

ㅇ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도매시장 관계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 실기시험: 실기필답(상품성평가), 실기평가(모의경매)

라. 최근 시험실시(제6회) 일시 : '97. 8.12~13(2일간)

ㅇ 공고: '97. 6

ㅇ 총 589명 응시하여 271명 합격

마. 경매사 자격취득현황('99. 2현재)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화 훼	약 용
인 원	2,417명	1,777	484	87	13	53	3

일본의 경매사공영제에 대한 방침

문) 경매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어떤가?

답) 지금까지 여러번 거론된 것이지만 경매사공사론이란 것은 경매사가 집하 및 기타업무는 하지 않고 경매만 하겠다는 의도에서 발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래서는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은 기대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집하 그 자체가 지정도매인 및 경매사의 중요한 기능의하나이므로 경매사가 판매만 한다는 것은 반쪽기능밖에 수행치 않는 것이며, 따라서 지정도매인은 집하만 하는 사람을 고용하게되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경비의 과다발생으로 지정도매인의운영이 문제되며 또한 도매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경매사란 지정도매회사의 소속직원으로서집하도 하고 정보수집 전파도 하며 판매를 행하는 실무자이며 공정한 가격형성을 주도하는 도매시장의 꽃인 것이다(일본 중앙도매시장에서의 실무자 업무편람)

- ㅇ 근 거 : 도매시장법 43조, 중앙도매시장업무규정 작성지침 제12조,
 - 도매업자(우리나라의 도매시장법인)에 소속

7. 수집상 등록

-	<	제	29	ス	(수집상의	등록)	>
	•	· 'II	40		\	071	

- ◇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함
- ◇ 수집상은 도매시장에서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 금지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수집상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축소("동일호적안에 있는자" 삭제)

□ 개정사유

- 현행법에는 이들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규제의 실익이 없고 영업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아 제외함
- 이 시장도매인은 산지 수집도 가능하므로 수집상 업무를 할수 없는 자로 명시하지 않음

나. 현행제도의 내용

□ 수집상의 정의(제2조)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 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연혁

○ '94.11 : 수집상등록제 도입('95.7.1 제도시행)

□ 등록제 실시목적

- 유통분야에서 수집상의 기능을 인정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농수산물의 출하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
- ㅇ 수집상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중도매인의 불법수탁, 수집행위 근절

□ 등록대상 수집상의 범위

 수집상 영업을 하는 시기, 계속성 여부, 영농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 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

<등록예외 대상>

- ㅇ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 ㅇ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예외적으로 상장 · 매매하는 경우
- ㅇ 시장도매인이 매매하는 경우
- ㅇ 기타 농림부렁이 정하는 경우

□ 농수산물 수집상 현황('97년말 기준)

ㅇ 전국 수집상 등록인원 : 13,275명

7 13	ન્યો	부 류 별		
구 분	계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
합 계(전국)	13,275	11,093	1,921	261
공영도매시장	9,332	7,788	1,389	155
일반법정도매시장	1,542	904	532	106
농수산물공판장	2,401	2,401	-	_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ㅇ 수집상 등록 예외대상

8. 출하자 등록(신설)

- <	제	30	조	(출하자의	등록)	>
•	- 1	UU		\ Y== -	0 1/	•

-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을 등록
- ◇ 등록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통해 출하하는 경우 우대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출하자 등록제 신설(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

□ 개정사유

- 출하자 관리의 효율화와 예약출하 촉진으로 거래질서 확립과 홍수
 출하 방지 등 수급 안정화를 기함
- 현행 수집상 등록제는 안정적인 출하관리가 어려워 출하자 등록제는
 도입하되 우대조치를 병행

나. 현행제도의 내용

□ 수집상의 등록

- o 수집상이 출하하는 경우에만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
- 생산자나 생산자단체는 등록을 하지 않고 도매시장에 출하

□ 수집상 등록제도의 한계

- ㅇ 전체 출하물량 중 수집상 출하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97 수집상 출하량 비율 : 금액 기준 14%(청과부류 8%, 수산부류 39%)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정적인 출하관리가 어려움
 - '97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출하량 비율 : 금액 기준 78%(청과부류 89%, 수산부류 30%)

다. 발전방향(출하자 등록 및 우대계획)

- ㅇ 도매시장 개설자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등록시켜 관리할 수 있게 함
-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등록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출하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인하, 우선 경매 실시 등의 우대할 수 있음

라. 대만의 출하주등록제

- □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에 등록해야 함
- □ 등록대상자 : 농민, 농민단체, 판운상(농민이나 도매시장에서 산물을 구입하여 기타 시장으로 운반하여 거래하는 자), 수입상 등
 - ㅇ 출하하고자 하는 농민으로서 등록 않은 자는 신분증을 제시
- □ 농민단체, 판운상, 수입상은 거래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직할시나 현(시) 주관기관이 필요시 검열할 수 있음
 - 농민단체 : 공동운송판매에 참가하는 출하회원명부(성명, 주소, 물품명, 수량 기재)
 - ㅇ 판운상 : 농산물 입출등기부(물품명, 수량, 물품공급원, 장소 기재)
 - 수입상: 수입농산물 검사합격증, 농산물 수입등기부(물품명, 수량, 출처 기재)
 - ※ 농산물 시장거래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9. 매매방법(정가 또는 수의매매)

----- < 제 32 조 (매매방법) > -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되,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등 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 가능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 가능

□ 개정사유

-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추어 효율적인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소위 "이중경매"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경매 등을 거쳐 가격이 결정된 경우는 경매를 실시하지 않아도되도록 예시

나. 현행제도의 내용

□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ㅇ 원칙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정가 또는 수의매매 대상품목 선정 기준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중 업무규정으로 정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 > 농림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어 도매시장법인이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 ㅇ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o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 거래량이 적은 품목
 -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시작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품목 (일명 선취거래)

※ 선취매매

- 경매하기 전에 중도매인이나 매참인이 도매시장법인에 상장된 농산물에 한해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정해놓은 일정범위 내에서 가져간후 대금은 해당품목의 동일등급 최고경락값으로 정산하는 거래방식
- 다만, 구매자가 상품에 대해 신뢰를 할수 있는 표준규격출하품에 한해 선취를 허용해야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음

□ 거래방법 및 절차

- ㅇ 정가매매
 -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찰제로 거래하는 방법
 - 판매절차 및 가격결정(예 : 바나나, 자몽 등 수입농산물)
 - ① 중도매인이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요청
 - ②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자에게 필요수량 공급 요청
 - ③ 수입업자는 수입단가 및 기타 비용을 감안하여 희망단가 제시
 - ④ 수입업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단가를 정하여 상장
 - ⑤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자 제시단가에 맞춰 중도매인에게 定價매매

ㅇ 수의매매

- 상대매매라고도 하며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홍정하여 결정하는 거래방법

- 저장성이 있고 수요공급이 안정적이며 품질 또는 등급화를 통해 규격화된 상품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품목의 특성이나 특정한 경우 또는 경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허용

다. 발전방향

이 시장여건 및 품목 특성에 따라 탄력적이며 다양한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참고 1>

매매방법 관련용어

□ 입찰

- ㅇ 경매방법과 비슷하지만 동일인이 최고가격을 한번 제출
-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자기의 희망가격을 적어 경매사에게 제 시하면 최고가 제시자에게 낙찰시키는 방법
- 원료농산물 또는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로서 일정조건의 예정가격을 내정하고 있거나 수입농산물을 재판매할 때까지 거래하는 방법

□ 정가매매

- o 출하농산물에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찰제로 거래하는 방법
- ㅇ 판매절차 및 가격결정(예 : 바나나,자몽 등 수입농산물)
- 중도매인이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요청
-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자에게 필요수량 공급 요청
- 수입업자는 수입단가 및 기타 비용을 감안하여 희망단가 제시
- 수입업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단가를 정하여 상장
- 도매시장법인은 수입업자 제시단가에 맞춰 중도매인에게 定價매매

□ 수의매매

- 상대매매라고도 하며 특정한 판매자가 구매자와 직접 상대하여 가격을 홍정하여 결정하는 거래방법
- 저장성이 있고 수요공급이 안정적이며 품질 또는 등급화를 통해 규 격화된 상품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 ㅇ 품목의 특성이나 특정한 경우 또는 경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한해 허용

<참고 2>

가락동도매시장 정가 또는 수의매매

- 업무규정 제3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 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5와 같다.
 - ②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시작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6과 같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당일 동일품목, 동일등급의 거 래가격 중 최고가격으로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시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 ⑤도매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가 또는 수의매매 품목

	부 류	별	품	목
과	실	류(7)	버찌, 산딸기, 머루, 야지	h,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
채	소	류(15)	건고추, 아욱, 근대, 우영 마른고사리, 고구마줄기, 무말랭이, 호박고지, 박고	

경매시작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선취매매)

	부 류	별	. 품 목
과	채	류(5)	딸기, 토마토, 참외, 메론, 수박
양	채	류(7)	양상추, 셀러리, 브로코리, 피망, 루비볼, 파세리, 칼리 후라우어
버	섯	류(5)	양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버섯, 싸리버섯
활	어	류(3)	가자미류, 농어, 돔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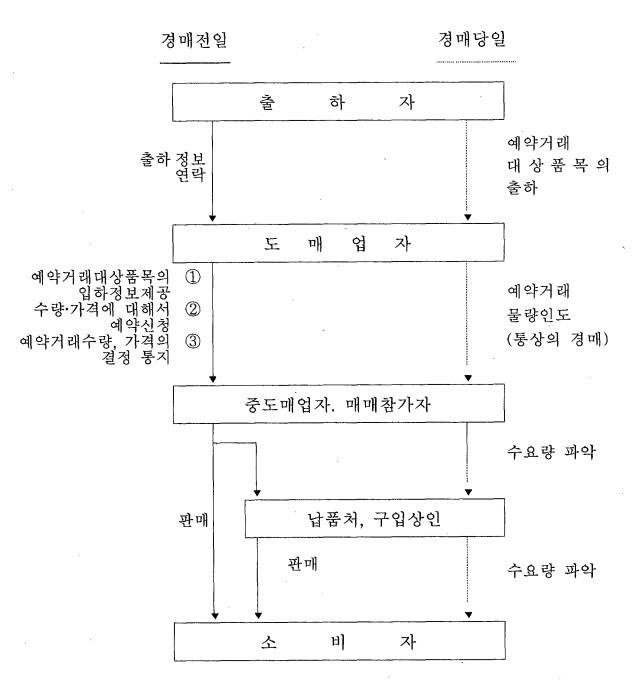
<참고 3>

일본도매시장의 경매 또는 입찰의 예외(법 제34조)

도매업자는 중앙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도매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1) 일정 규격 또는 저장성이 있고 그 공급사정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신선식료품 등 농림수산성령이 정한 것 또는 품목, 품질이 특수하기 때 문에 수요가 일반적이 아닌 신선식료품 등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 중에서 경매 또는 입찰방법 이외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업 무규정으로 정한 것을 도매할 때
- (2) 재해의 발생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23조)에 있어서 업무규정으로 정한것에 따라 개설자가 경매 또는 입찰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1. 재해의 발생
- 2. 입하의 지연
- 3. 도매의 상대방이 소수일 경우
- 4. 경매 또는 입찰방법으로 도매했을 경우에 발생한 잔품을 도매할 경우
- 5. 도매업자와 중매업자 또는 매매참가인 사이에 사전 체결한 계약에 근 거하여 확보한 신선식료품 등을 도매할 경우
- 6. 긴급 출항하는 선박에 신선식료품 등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 도매개 시 시각 이전에 도매할 경우
- 7. 도매시장법 제37조(도매의 상대방 제한)단서규정에 의거 중매업자 및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도매할 경우
 - * 현재 대규모 도매시장에서의 선취(수의거래)비율은 60 ~ 70% 수준

일본 중앙도매시장의 예약상대거래 체계도



- * 예약상대거래의 포인트
- ㅇ 명확한 출하정보에 의거한 예약신청
- o 입하수량 중 일정수량은 반드시 경매상장을 확보
- 신청 고가격 순의 판매수량 결정(수량과 가격이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 매수 인의 영업상 유리)
- ㅇ 통상의 판매개시시간 전에 예약거래수량과 가격을 공표

10. 거래성립 최저가격제시제

- ---< 제33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제1항 단서 >-
- ◇ 도매시장법인은 상장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 가격 제시자에게 판매
- o 출하자가 서면 등 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 최저가격으로 예시한 경우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지 못함

가. 제도개선 내용

□ 현행과 같음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황

- 어면제출에 의한 최저가격제시제는 저조하며,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구두로 가격제시
- ㅇ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동제도 도입 취지 인식이 미약

□ 문제점

- 최저가격을 제시하고 낙찰가격형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재 경매실시, 물량반출, 출하주의 동의절차 등 업무처리가 복잡함
- ㅇ 시세변동이 민간한 품목일수록 동제도 활용이 어려움

□ 개선방향

- 최저가격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PC통신, 팩시밀리 등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
- 가격정보의 신속한 분산으로 출하주가 당일의 시세에 적합한 거래
 최저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

나.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ㅇ 거래 최저가격 제시 요건

1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허용 기준

-<제 35 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함
- o 다만 농수산물의 포장·가공·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 가능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허용사업에 수출입 업무도 포함

□ 개정사유

-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라 수출입 물량을 도매시장에서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 도매시장법인의 물량수집능력이 낮아 안정적 물량확보·조정과 시장활성화에 어려움

나. 현행제도의 내용

□ 겸영제한의 필요성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에 특화하도록 하여 타업종 겸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부실의 영향이 도매시장에 파급되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

□ 겸영가능한 사업

- 취급 농수산물의 산지 포장·선별·저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필요한 업무
- 수탁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시장출하물량 조정을 위하여 소비지에서 실시하는 저장업
 - ㅇ 표준규격출하 또는 소분포장을 위하여 행하는 포장업 및 단순가공업
 - ㅇ 농수산물의 수입판매 및 수출 대행업

□ 제도의 운영실태

- 부대사업 수행시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단체와 공동수행토록 규정되어 법인의 부대사업 실적 미약
- 법인에서 산지포장센터 등을 통한 포장·가공 출하상장시 불공정 가격 결정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법인이 부대사업을 기피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ㅇ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업무 절차

12.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설)

___< 제 36 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 __

-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고, 3년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정 유효기간 설정 가능
- ◇ 도매시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법정요건에 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이어야 함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시장도매인(도매상) 제도 도입

□ 개정사유

- 공영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확대에 따라 전체 도매시장을 상장경매제로 할 경우 출하자의 선택권이 축소된다는 비판 제기
- 생산자의 규모화·조직화에 따른 시장교섭력 강화, 소매유통의 규모화, 체인화 확대로 상호 신용하에 생산자조직, 대형유통업체와 일정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도매회사 육성 필요성이 증대

나. 제도의 운영방법

□ 도입범위

- ㅇ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자유롭게 지정하도록함
- 다만 중앙도매시장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함

□ 자격요건과 실시방안

- ㅇ 자격요건 : 일정요건을 갖추어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 3~10년의 지정유효기간 설정 가능
 -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에 준함
- 생산자단체·중도매인·수집상 중에서 적정수의 시장도매인을 허가

ㅇ 업무범위

- 구입 : 매수 및 수탁을 허용(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설자가 품목·기간을 정하여 수탁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판매 : 동일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외의 자에게 판매
 - · 다만, 입하량이 현저히 많은 경우 등 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매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 대금결제

- ㅇ 별도의 정산제도를 통해야 함(직접대금결제 금지)
 - ㅇ 농수산물을 수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징수 최고한도 설정

□ 시설배분

- o 기존시장 시설(경매장 및 상가동)의 일정부분을 할애하여 시장도매인 에게 배정
- ㅇ 매장은 도매상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사용료는 현실화
- 신설시장에 도입시는 시장도매인의 영업에 적합하도록 경매시장과는
 설계를 차별화

다. 외국의 제도

□ 도매상의 종류와 영업형태(미국의 경우)

- ㅇ 도매상 종류(미국의 신선농산물법)
- Commission Merchant :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
- Dealer : 자기책임하에 구매와 판매
- Broker :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
- 도매상들의 영업형태는 자금력, 신용상태, 거래처, 취급품목 등 영업조건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됨
- 위탁판매와 구매·판매를 겸하는 경우
- 중개와 구매·판매를 겸하는 경우
- 위탁을 위주로 하는 경우
- 타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 외국도매시장의 거래형태

운 영 방 식	도 매 시 장
상대매매 방식	프랑스 런지스 도매시장, 독일 프랑크프르트 Gross Market, 영국 New Covent Garden Market, 이탈리아 로마 도매시장, 미국 뉴욕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미국 시라큐스 중앙뉴욕시장, 미국 LA 농산물도매시장, 캐나다 온타리오 농산물도매시장
경매방식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벨기에 Sint, Truiden시장 등, 벨기에 Mechelen 시장, 대만 대북 제1과채비발시장, 일본 동경 오다도매시장, 독일 본 Central Market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자료>

- 1. 경매제와 도매상제 비교
- 2. 시장도매인 관련 운영규정
- 3. 도매상제의 도입 필요성 검토
- 4. 도매상의 주요 영업범위 검토
- 5. 정산제도 및 정산절차 검토
- 6. 미국의 농산물 도매상제도
- 7.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상 체제 병존체제 검토
- 8. 일본의 경매원칙 재검토 논의
- 9. 상장ㆍ경매제 추진성과
- 10. '도매상제 도입에 따른 경매제 보완대책
- 11.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품목거래
- 12. 가락동 도매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현황
- 13. 부산시 엄궁동도매시장 상장예외 거래현황
- 14. 일본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집하허용 사례

<참고 1>

경매제와 도매상제 비교

	경 매 제	도 매 상 제
채택국가	ㅇ우리나라, 일본, 대만	ㅇ미국, 유럽*
장 점	○가격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출하주에 대한 대금정산 보장 ○유사도매시장 횡포 방지 ○상품성향상에 기여 ○도매상제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규제가 가능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의 출하 선택권 보장 ○신속한 수집·분산으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단 점		○(경매제 장점의 반대) ○거래의 투명성 부족 및 세원 파악의 어려움 ○도매상별로 물량집하 및 분산 장소, 저장시설 등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여 기존시장에의 적용에 애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거의 위탁상의 폐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음

※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는 생산자 조직에 의해 설치된 산지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수의매매가 일반적(네덜란드의 Alsmeer 화훼경매시장, 독일의 본Central Market는 경매실시)

시장도매인 관련 운영규정

관 런 내 용	用	고
○ 시장도매인의 지정(제36조)	도매시장법인과	동일
- 지정유효기간 설정,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İ
○ 시장도매인의 영업(제37조)		
- 매수 또는 수탁하여 도매거래하거나 매매를 중개	도매시장법인과 기능	차별화
- 당해시장내의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외의 자에게 판매	유통단계 축	소
○ 수탁의 거부금지 등(제38조)	도매시장법인과	동일
- 수탁 또는 수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		
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자는 즉시 인수(제39조)	"	
○ 하역업무(제40조)	"	
- 표준하역비 부담, 하역업무는 용역체결 운영 가능		
○ 대금결제(제41조)		
- 매매된 경우 즉시 결제, 정산제도 이용	정산제도이용의무호	화 신설
○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제42조)	도매시장법인과	동일
○ 시장도매인이 매수하여 도매거래하는 경우 수집상등록 면제(제29조)	"	
○ 민영도매시장에서도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 가능(제48조)	"	
○ 유사도매시장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구역내의	u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가능(제64조)		
○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실시(제77조)	"	
○ 시장도매인에 대한 기장사항, 거래내역보고 지시(제79조)	н	
ㅇ "업무처리의 개선 등 명령(제81조)	"	
○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제82조)	"	

<참고 3>

도매상제 도입 필요성 검토

□ 찬성론

- ㅇ 생산자(출하자)의 출하선택권 보장
 - 상장경매거래의 도매시장법인과 수의매매를 주로하는 도매상제를 도입하여 판매유형에 따른 선택권 보장
- ㅇ 도매시장내 유통주체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유통효율 증대
 - 다양한 거래형태간의 경쟁을 통하여 농산물유통의 효율성을 증진 하고 유통주체의 경쟁체질을 강화할 필요
- ㅇ 산지 및 경제여건의 변화
 - 산지생산자의 조직화 진전, 출하단위의 규모화, 컴퓨터 등 정보통 신환경의 변화로 산지유통여건이 달라짐
 - 금융 및 회계시스템의 발전, 공정거래법의 시행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제재에 관한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짐

□ 반대론

- ㅇ 과거 위탁상으로의 회귀 우려
 - 대금정산지연, 자의적인 가격결정, 탈세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희생 하에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음
- 정착단계에 있는 경매제도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농민에게 불리한영향
- 생산자의 출하규모가 적고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도입시 농민의 시장교섭력 취약으로 농민 불리

□ 검 토

- ㅇ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장과 경매체제 도입을 위하여 거래제도 다양화 필요
- ㅇ 도매상제도의 장점인 유통의 효율성,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 추진
- 다만,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산제도의 도입, 표준 송품장의 운영, 거래물량 게시 등 의무 부과

<참고 4>

도매상의 주요 영업범위 검토

□ 영업범위

- ① 매수・수탁병행 인정
 - 도매상과 거래하는 출하자에게 매수 또는 수탁에 관한 판매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상행위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수탁을 예외적으로만 허용시 상품구색 갖춤, 입하물량 불균형 등으로 도매시장 혼란 야기
- ② 매수원칙, 수탁예외
 - ㅇ 수탁을 원칙으로 하는 도매시장법인과의 균형 유지
 - 과거 위탁상의 폐해가 커 아직까지 도매상에 대한 신용도가 낮으므로 매수원칙 선언 필요
 - ㅇ 수탁거래시 가격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출하농가 피해 우려 큼

<검 토>

- 매수위주의 도매상 영업이 도매시장 전체의 경쟁구조를 촉진하여 출하 농가보호와 유통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
- 다만, 도매상의 수탁을 금지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도매상의 거래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며, 범법행위만 늘어나게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매수와 수탁을 함께 인정하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설자가 수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 마련

□ 도매상의 중도매인 등에 대한 재판매허용 여부

- ① 재판매 허용
 - 도매상, 중도매인에 판매행위 금지는 상인의 기본적인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것임
 - o 다양한 물량을 판매하여야 하는 도매상이 특정품목에 대한 수집활동이 취약한 경우 상호간 자유로운 상품이동이 보장되어야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

② 재판매 금지

 시장내 재판매 허용시 도매시장내 거래단계를 축소하지 못하고 여러 단계의 도매상, 중도매인을 중복하여 거치므로 유통단계 축소라는 당초의 도매상제 도입취지에 위배 특히 중도매인을 상대로 판매를 허용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실시하는 경매질서에
 혼란을 주고 중도매인을 도매상의 중간판매상으로 전락시킬 우려 있음

<검 토>

- 도매시장내 도매상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경매로 인해 유통단계
 가 길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서 출발
- 따라서 도매시장내 재판매 문제는 도매상의 영업편의 측면 보다는 유통단계축소라는 취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도매상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에 관하여 기존의 중도매인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

□ 정산제도 이용 여부

- ① 정산제도 불필요
 - 대금결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굳이 복잡한 정산제도 적용 불필요
- ② 정산제도 이용의무화 필요
 - 정산제도의 필요성을 대금결제 안전뿐 아니라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긴요
 - ㅇ 도매상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서도 정산제도를 통한 대금결제가 필요

<검 토>

- 도매상제도하의 상대수의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개경쟁매매보다
 가격결정의 투명성 측면이 취약
 - 도매상의 매취·수탁 과정에서 결제의 지연 및 부당거래의 방지 필요
- ㅇ 도매상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임
 - 초기에 도매상의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출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
- ㅇ 도매상제도의 정착여부에 따라 정산제도의 간소한 운영도 얼마든지 가능
 - 거래의 투명성·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한 간소화된 정산 제도 채택도 가능

<참고 5>

정산제도 및 정산절차 검토

□ 필요성

-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의 핵심내용은 가격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대금지급 방법의 즉시성 및 공정성에 있음
- 도매상제도하의 상대수의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개경쟁매매보다 가격결정의 투명성 측면은 취약함에 이견 없음
 - 도매상의 매취·수탁 과정에서 결제의 지연 및 부당거래의 방지 필요
 - 분산과정에서의 거래자료 감시는 사실상 곤란
 - ·도매시장법인은 분산자료가 명확히 노출되나, 도매상은 분산자료의 은폐 또는 분식이 용이
 - ·수탁의 경우 위탁수수료에 제한을 받으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취 품목에 대해 폭리를 취할 개연성 내재

□ 기존의 정산체계

-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정산기구의 역할까지 수행
 - 도매시장법인은 매입을 원칙으로 영업하는 중도매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외상거래를 실시하며, 출하자에게는 즉시 대금결제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중도매인의 매입시점과 판매시점사이의 금융부담을 도매 시장법인의 회계처리절차로서 보완역할을 하는 것이며, 금번에 도입 하고자 하는 정산제도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
- ㅇ 미국의 경우 정산에 관하여 자유로움
 - 그러나 사회전반의 금융시스템이 거래에 관하여 투명한 노출이 가능하도록 위비되어 있음
 - 대금정산시 수표 및 지로 사용이 일반적 관행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신용평가상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사업영위를 계속할 수 없음
 - 따라서 별도의 정산체계 없어도 거래당사자간 신용거래가 가능

①수표에 의한 대금결제, ②거래내역의 정확한 기재(농무성 공무원이수시로 검사) ③위탁판매품송장의 정확한 기록유지 ④불공정, 부정행위를 소비자단계부터 생산자단계까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tracking system) 투명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수탁판매의 경우 정산절차(안)

- ① 출하자는 송장작성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출입시 제출
 - 출하자 보관용1부, 개설자 제출용 1부, 도매상 보관용 1부 작성
- ② 출입구에서는 송장내역을 PC에 입력하여 정산조직과 자료공유
- ③ 도매상은 점포앞에 반입물량, 전일거래가격을 공시
- ④ 도매상은 판매후 정산서(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사본 보관
- ⑤ 도매상은 정산서(계산서)내역을 정산조직 공유 PC에 입력
- ⑥ 출하주는 송장 1부를 가지고 정산조직에 제출, 확인, 대금청구
- ⑦ 정산조직내의 PC와 은행간 펌뱅킹 활용으로 대금정산
- 도매상은 지정금융기관내에 대금결제용 운전자금을 예치
- ⑧ 정산조직은 표준거래가격, 반입물량 정보를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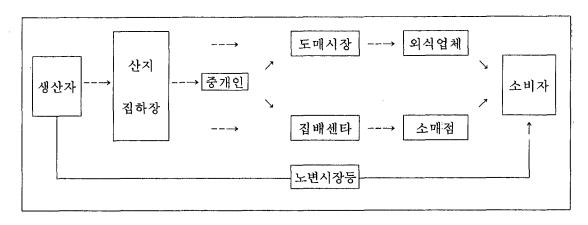
□ 매수판매의 경우 정산절차(안)

- ① 출하자와 도매상은 판매(매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 출하자 보관용 1부, 도매상 보관용 1부 작성
 - 계약서 하단에 개설자 제출용(계약서 내용 기재) 절취선 마련
- ※ 불가피하게 구두계약을 한 경우 출입구에서 반입증명서를 발급후 관리
- ② 도매시장 출입구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PC에 입력하여 정산조직과 자료공유
- ③ 도매상은 반입물량, 전일거래가격을 공시
- ④ 도매상은 판매후 정산서(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사본 보관
- ⑤ 도매상은 정산서(계산서)내역을 정산조직 PC에 입력
- ⑥ 정산조직은 표준거래가격, 반입물량 정보를 공시
- * 매수계약서 또는 반입증명서 관리 필요성
 - 매수판매의 경우 도매상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 필요
 - 매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더라도 상관행 특성상 거래내역 노출을 기피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기피 예상
 - 도매상의 반입물량 파악을 위해서는 수탁의 경우처럼 송장형태의 반 입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
 - 매수계약서 미제출자에 대한 불이익 등 관리방안 필요

미국의 농산물 도매상제도

□ 미국의 청과물 유통상 특징

- o 국내 농산물의 96.3%가 산지집하장(shipping point operation)을 통해 거래
 - 산지 집하장에서 집하·세척·선별·등급화·포장·예냉·저장 등이 종합 처리
 - 대부분(80%)이 개인기업이 운영, 나머지는 협동조합이 운영
- 산지 집하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상이나 수퍼마켓 및 수퍼체인 등 대 형 소매기구가 운영하는 집배센타와 전화 또는 fax를 통해 직접거래
 -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중개인(broker)을 통한 거래물량 : 25~40%(수수료율 : 2~3%)
- ㅇ 출하주와 도매시장거래는 대부분 매취 판매 형태로 거래
 - 매취판매 마진율 : 7~8%
- 위탁판매는 등외상품이나 산지집하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에 한함
 - · 위탁판매시 법정수수료율 7~20%(일반적으로 10~15%)
- 마켓팅 오더(marketing order): 자조적 생산조직(농무부 허가)으로서 생산물량의 조정, 판로선택, 출하조정, 상품표준화, 판촉 활동, 공정거 래질서유지, 유통정보 수집기능 수행



□ 도매단계에서의 유통

- ㅇ 44개의 소비지 도매시장 존재(민간투자 16, 주정부투자 14 등)
 - 도매시장유통은 농산물유통법에 의한 가격공표의무, 병충해·안전성 등의 검사제도 외에는 어떠한 규제도 없음
- 도매시장 거래 청과물은 전체 유통량의 약 1/3수준으로 점유율이 떨 어지다가 최근 다소 증가하는 경향
 - 수퍼체인점의 도매시장 구입비율 약 30%이나 최근 증가 경향
 - · 산지 집하장과의 직접거래시 예상되는 위험 회피목적 및 소량품 목 중심으로 도매시장에서 구입
- o 도매시장내 주된 상활동 주체는 독립도매상(wholesaler)들이며 시장 관리는 자율적
- * 뉴욕 Hunts Point Terminal Market : 1967년 개설후 뉴욕시가 직접 관리, 1986년 도매상조합에 위임. 도매상 조합은 다시 관리전문회사인 ABS사에 용역관리(안전, 관리, 위생)
 - 도매시장 대표 16명으로 이사회 운영
- * LA 농산물 도매시장(LAWPM)은 시설주인 사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9명의 도매시장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도매시장은 대개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많고 가족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장내 점포 겸 창고·사무실을 시설주로부터 장기계약으로 임차 사용 하는데 이용권의 매매가 가능
 - 영업규모는 1 unit(42평)~17 unit까지 다양
 - 도매상이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 세무서에 자 본과 신용 및 경영능력만 있으면 가능

□ 미국에서 도매상체제의 성공 요인

- > 농가의 생산규모가 크고 품목별로 생산이 전문화되어 있어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가질 수 있음
- -- 호당 평균수확면적 : 채소 23.3ha, 과수 15.5
- o 산지집하장에서 포장·규격화·예냉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짐
- 원격지 거래자간의 거래는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기술내용이나 구두만으로 가격을 결정·거래하는 통명거래 가능

< 통명거래·신용거래 촉진요인>

- 영농규모가 크고, 규격화, 저온유통체계화 구축, 전국권 시장정보체계및 통신망의 확립
- ㅇ 농무부 검사관에 의한 농산물의 상태와 등급에 관한 검사체계 확립
 -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거래에서 분쟁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거 래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높임
 - 등급판정 검사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거래의 안전을 위해 검사 를 받는데 유료이며 판매자가 부담
 - 수송차량내부에 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책임소재 명확구분 가능
- 송장(invoice)제도 확립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품목별·등급별 중량, 단가, 가액을 기재
 - 도매시장에 대한 수수료, 과세부과, 신용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 전역의 산지집하장, 중개상, 도매시장, 트럭운송업자의 상호, 회사형태, 주소, 전화번호, 상품처리능력, 주요취급품목, 신용정도가 기재된 신용평가서를 매년 2회 발행
 - 원거리에 떨어진 거래자간의 신용확인 가능

<참고 7>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상 병존체제 검토

□ 법안내용

- 도매상제 도입으로 출하자가 동일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도매상
 양측 어느곳에든 자유로이 선택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시장운영 가능
- 기존도매시장에는 이미 도매시장법인이 입주해 있고 개설예정인 도매시장도 입주법인이 결정되거나 협의중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병행 체제 운영이 불가피

□ 쟁점사항

- o 병행제 불가론(도매시장법인협회, 농협, 식품유통학회)
 - 도매상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 경매제를 교란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 으로는 경매제가 붕괴되어 출하자의 손실과 출하선택권 축소 초래
- o 병행제의 필요성 주장(중도매인연합회)
 - 시장별로는 일부 품목이나 부류에 따라 반드시 도매상제 도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병행제 실시는 불가피
 - 중앙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을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병행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도매상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

□ 정부안: 병행제를 실시

- ㅇ 기존시장에는 경매가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도매상제도 운영
 - 신설시장은 도매상제만을 전제로 개설할 수도 있으나 기존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병행제 인정 불가피
- 중앙도매시장에의 도매상제 도입효과를 지방시장에서 우선 검증하기 위해서는 병행제 시장 운영이 필요함
 - 중앙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매원칙 재검토 논의

□ 논쟁의 개요

- ㅇ 경매워칙의 폐지. 상대매매 인정에 대하여 생산자와 중도매인들 반발
- 시장 거래실태와 제도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매시장법 개정문제 제기(유통문제연구회)
- 생산자와 중도매인은 과거의 위탁상시대로의 복귀를 우려

□ 경매와 상대매매에 대한 보완책 제시

- 각 시장의 거래실태, 품목마다 특성에 맞추어 개설자와 관계업자로 구성된 기관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여 업무규정으로 제시하는 방식 유도
- 경매의 경우
 - 기계화와 복수 경매시간의 설정 등 방식을 개선
- 상대매매의 경우
 - ·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거래수량과 평균가격을 신속하게 공표하는 시스템 도입
 - 부당차별이 없도록 개설자와 관계업계에서 감시기구 설치
 - 불복 상신제도를 만들어 개설자가 지도
 - 품목 부족시와 재해발생시에는 경매원칙으로 복귀
- 판매상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장수량의 정확한 계산과 정보제공 확보 등을 조건로 산지에서 직접 판매처에 배송할 수 있게 함
- 전본거래가 가능한 품목은 저장고, 창고를 장외지정보관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제시
- 개설자의 역할은 행정비용과 사업자의 부담이 낮은 감시방법의 이행,사전체크에서 사후체크방식으로 전환

□ 중도매인의 반발

- ㅇ 과거 위탁상시대로의 후퇴
- ㅇ 경매원칙의 후퇴는 시장시스템의 붕괴 초래
- ㅇ 상대매매는 수수료도 상대적이 됨
- ㅇ 공개성.투명성이 없어져 산지출하에 영향이 큼

□ 경매원칙 폐지와 관련한 기타의견

- ㅇ 경매가 효율적이므로 원칙으로 하지 않아도 남을 것임
- ㅇ 위탁집하와 예외거래도 변한다
- ㅇ 경매와 상대매매는 거래의 다양성(탄력적운용)에서 생각해야 함
- 경매, 상대매매는 국가, 개설자가 정하지 말고 지역, 시장특성을 고려 하여 업계당사자가 결정
- ⇒ 경매의 폐지문제가 아니라 경매제도의 경직적 적용에서 상대매매를 인정하는 방향의 논의이며, 상대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도매시장에 상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참고 9>

상장경매제 추진성과

□ 상장경매 절차

○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 도매시장법인은 수탁품 판매를 위한 경매준비("상장")
 → 도매시장법인은 다수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최고가격제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낙찰시킴

□ 상장경매제 추진

- '91.7.1부터 경매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가는 방법 으로 상장경매 추진
- ㅇ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 '94.11.1 시행된 개정농안법에 근거하여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 중도매인 직접 수탁판매 허용

□ 경매제에 대한 비판

- 시장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인 제도운용으로 당초의 제도도입 목적달성이 미흡하고 부작용이 발생
 - 대도시도매시장의 일부품목 및 일부 지방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가 제대로 안되어 기록상장과 담합경매 발생
 - 서류상으로 가상의 출하자를 내세워 상장경매한 것으로 가장하거나 경매를 하더라도 담합으로 특정 중도매인에게 낙찰
- ㅇ 경매관련 비용문제 제기 및 도매시장법인의 수탁 독점
- ㅇ 출하량 조절 미비 및 가격등락 심화
- 일부품목을 중심으로 취급 중도메인수가 부족 및 도메시장법인의 물량집하가 미흡하여 공정경매여건 미흡

□ 상장경매제의 성과

- 상장경매는 소매상들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결과
 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소매상들이 중도매인(도매상)으로부터 물품구입시 구입가격이 적정한 지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상인들의 농간이 개입될 소지가 적음
- ㅇ 거래의 투명성 제고
 - 농민은 자신이 출하한 농산물이 실제 얼마에 팔렸는지 그 거래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 (종전 중도매인 위탁시는 실제 팔린 것보다 낮은 값으로 대금을 정산해 주더라도 확인 곤란)
- ㅇ 거래의 공정성 제고
 - 중도매인이 자의적인 가격결정이 아니라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됨 에 따라 수급을 반영한 공정가격의 형성 가능
- ㅇ 대금정산 보장
 - 도매법인은 판매즉시 출하자 계좌로 대금을 온라인 입금시켜 주나, 위탁중도매인은 장기간 대금정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
- ㅇ 생산자의 출하조절이 가능
 - 도매시장별, 도매법인별 시세를 신속히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농민은 시세를 보아가며 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 됨
- ㅇ 유사도매시장 횡포 방지
 - 상장경매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전국의 대표적 시세가 되어 유사도 매시장의 위탁상들도 과거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게 됨
- 상품성 향상에 기여
 - 품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농민은 상품성 향상 노력을 적극적 으로 기울이게 됨
- ㅇ 유통마진 감소
 - 소매상들도 전날 경매가격을 보고 적정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만큼 유통마진이 감소

<참고 11>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 연 혁

- '94년 농안법파동을 계기로 종합적인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고, '95.1 월부터 전품목 상장경매 본격 추진
- ㅇ '95. 1 : 전품목 상장경매제 시행과 병행하여 상장예외제를 예외적으로 허용
- 30개 채소류 품목을 허용(이하 가락시장의 예)
- '96. 1 : 채소류 품목을 추가하여 총 61개품목 운영
- ㅇ '98. 1 : 상장예외 가능품목을 추가하여 총 90개품목 운영(과일13, 채소77)
- o '99. 1 : 상장예외 가능품목을 추가하여 총 110개품목 운영(과일28, 채소82)

□ 필요성

- 일부 지방 소규모 도매시장은 상당수 품목이 상장경매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법과 관행의 괴리 및 불필요한 유통비용 유발
- 품목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수탁이 어렵거나 상장거래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의 직접집하 허용
 - 도매시장에는 다양한 품목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도매법인의 수탁기능을 보완
 - 품목의 특성, 거래관행에 맞춘 자연스러운 유통을 유도하며
 - 개별출하자 보호 의미가 적은 품목에 대하여 탄력적인 거래방식의 도입

<가락동시장 상장예외 현황>

□ 상장예외품목 지정수 및 거래실적

(단위 : 톤,백만원,%)

연	도	' 95	'96	'97	'98	′99
품목수		30(채소)	61(채소)	61(채소)	90 (과일13,채소 77)	110 (과일28,채소82)
거래	물량	11,439(0.6)	32,027(1.6)	40,848(2.1)	57,037	_
실적	금액	14,828(1.3)	48,757(3.6)	58,742(4.1)	81,994	_

주) ()는 채소총거래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

□ 취급 중도매인 허가현황('99.4 현재)

o 계: 284명(과실류 19, 일반채소류 225, 건고추 40)

□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기준

- ㅇ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인 상장경매제 최대한 유지
- 오매시장법인에 의한 상장경매가 정착되어 출하자(생산자) 및 중도매 인으로 부터 거래방법에 대한 별도의 요구가 없는 품목은 계속 상장 경매품목으로 지정
- ㅇ 상장경매가 부진하거나 출하자. 중도매인으로부터 상장예외거래 지정요구 품목중
 -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많고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품목은 계속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
 - 소량거래, 저장성이 큰 품목, 계절적으로 일시 출하되는 품목 등 상장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
- 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중 도매시장법인 상장경매 물량이 총거래
 물량의 60%이상으로 경매여건이 조성된 품목은 상장경매품목으로 전환
- 현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거래방법이 지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거래방법을 신규로 지정

< 과실류 >

- ㅇ 법인상장예외 신규 지정품목(15개)
 - 현재 상장경매품목중 반입물량이 극히 소량이며 물량이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품목과 법인집하능력 부족 및 취급 전문 중도매인이 소수로 경매가 곤란한 품목(모과,살구,매실,대추,곶감 등 5개)
 - 저장성이 있고 출하자가 공급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하고 있어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키위,파인애플,자몽, 레몬,망고,야자,건포도,아몬드,코코넛, 아보카도 등 10개)

< 채소류 >

- ㅇ 법인상장예외 신규 지정품목(7개)
 - 현재 상장경매품목중 법인 집하능력 부족 및 취급 전문 중도매인이 적어 경매가 곤란한 품목 (양상추,샐러리,풋콩,완두콩,강낭콩 등 5개)
 - 저장성이 있고 출하자가 공급 수량 및 가격을 결정하여 출하하고 있어 정가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되고 있는 품목(건마늘,깐마늘 등 2개)

<참고 12>

가락동 도매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현황

(기간: '99.1, 1 ~ '99.12.31)

구 분	계	도매시장법인 상장경매품목	법인상장 예외품목			
계	162	52	110			
과실	39		호두, 밤, 앵두, 버찌, 산딸기, 은행, 석류, 머루, 무화과, 잣, 탱자, 보리수, 오디, 모과, 살구, 매실, 대추, 곶감, 키위, 파인애플, 자몽, 레몬, 망고, 야자, 건포도, 아몬드, 코코넛, 아보카드 (28개 품목)			
채소	123	가지, 풋고추, 붉은고추, 수박, 참외, 토마토, 메론, 딸기, 부추, 상추, 깻잎, 쑥갓, 시금치, 열무, 얼갈이, 아욱, 근대, 봄동, 치커리, 양파, 청경채, 피망, 풋마늘,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 버섯, 싸리버섯, 감자, 고구마,	춘채, 유채, 토란, 마, 더덕, 도라지, 우엉, 연근, 야콘, 토란대, 땅콩, 동부, 채두, 건고추, 목이버섯, 석이버섯, 영지버섯, 아스파라거스, 케일, 비트, 방울양배추, 적환무, 두릅, 원추리, 돌나물, 고들빼기, 명아주, 비름, 쑥, 고비, 속새, 쏨바귀, 참나물, 고사리, 죽순, 무말랭이, 호박고지, 박고지, 건가지, 건표고, 계피, 호박잎, 고추잎, 솔잎, 머위, 가죽나무순, 콩나물, 숙주나물, 갓, 취나물, 달래, 고구마순, 냉이, 신선초, 생강, 브로코리, 파세리, 루비볼, 칼리후라워, 물미역, 파래, 잎마늘, 마늘쫑, 말, 톳, 청각, 다시마, 무순, 알파파, 겨자잎, 교나, 비타민, 빈스, 순무, 도토리양상추, 샐러리, 풋콩, 완두콩, 강낭콩, 건마늘, 깐마늘 (82개 품목)			

주) **고딕체**는 '99년도 신규지정 품목임

<참고 13>

부산시 엄궁동도매시장 상장예외거래 현황

- □ 상장예외품목 지정기준
 - ㅇ 거래물량이 적은 품목(연간 200톤 미만)
 - ㅇ 당해품목 취급 중도매인 수가 적어 경매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품목
 - 출하시기가 계절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비규격 산물 출하되어 경매 거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품목
 - ㅇ 품목의 특성상 상품성 유지가 어려워 하차 및 진열경매가 어려운 품목
 - 저장성이 강하여 생산지에서 가격이 형성되거나 매매가격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출하되는 품목
- □ 상장예외품목수 : 총 68개 품목
 - 지정기간 : '98. 4. 1 ~ '99. 3. 31
- □ 품목별 지정기준(68개 품목)
 - ㅇ 거래물량이 적거나 계절성 일시적 반입 등으로 경매거래가 부적합한 품목(37개품목)
 - 과채류(2) : 박, 수세미
 - 엽채류(23): 꼬들빼기, 씀바귀, 참나물, 아욱, 춘채, 달래, 냉이, 고사리, 건고사리, 토란대, 유채, 두룹, 근대, 쑥, 컴프리, 돌나물, 청경채, 겨자채, 비름, 고추잎, 호박잎, 머위잎, 방하
 - 근채류(6): 배추뿌리, 더덕, 도라지, 비트, 야콘, 적환무
 - 기 타(6): 알로에, 두류, 호박고지, 박고지, 건가지, 가죽나무순
 - ㅇ 품목의 특성상 취급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23개품목)
 - 엽채류(2) : 미나리, 치커리
 - 양채류(9): 아스파라거스, 파세리, 샐러리, 콜리플라워, 브록코리, 케일, 스포로스, 오크라, 방울양배추
 - 기 타(12): 콩나물, 숙주나물, 미역, 파래, 미역줄기, 염장미역, 다시마, 톳, 청각, 몰, 감식초, 무말랭이
 - 이미 비상장거래 중이거나 도매법인 상장거래로는 중도매인의 물품 매입이 곤란한 품목(8개품목)
 - 엽채류(2) : 고구마순, 갓
 - 조미채류(4): 건고추, 건마늘, 깐마늘, 생강
 - 기 타(2): 생송이, 건표고

일본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집하허용 사례

- 중도매업자의 업무에 관해서 중도매업자는 오직 분하기능을 담당한다는 방침에서 그 중앙도매시장 개설구역내에서는 판매의 위탁인수및 그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그 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도매업자가 직접 집하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 ※ 법 제44조(중도매업자의 업무규제) 중도매업자는 제33조제1항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업무를 행하는 중앙도매시장에 관계된 개설구역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에 게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간도매업자가 그 허가에 관계되는 취급품목의 분류에 속하는 신선식료품 등을 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가 그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그 허가에 관계되는 취급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식료품 등을 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
- * 시행규칙 제28조(중도매업자가 도매업자이외의 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법 제44조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대로 한다
 - (1) 중도매업자는 그 허가에 관계되는 취급품목의 부류에 속하는 신선 식료품등에 있어서 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기가 곤란한 것을 당해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 하여 판매하려할 경우, 그 품목, 수량, 매입의 상대방 및 그 중앙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사항을 게기한 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고,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2) 전항의 허가에 관한 가부의 결정은 그 신선식료품 등에 관한 거래 의 상황, 그 중앙도매시장의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기가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하도록 할 것
- (3)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업자가 그 허가에 관계되는 신선식료품 등의 전부를 판매한 경우, 그 뜻을 개설자에게 신고하도록 할 것
- ※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구입처 비율('96년도)

단위:%

구분	도매법인	도매법인 이외	계
청과부류	89.9	10.1	100.0
수산부류	88.6	11.4	100.0
축산부류	85.5	14.5	100.0
화훼부류	93.6	6.4	100.0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시장과

13. 표준하역비

- <제 40조 (하역업무) > -

- ◇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부담으로 함
- ◇ 표준하역비의 개념을 "도매시장내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로 정의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도입으로 하역비 부담의 주체를 출 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함

□ 필요성

- o 하역비 부담자체가 불특정 다수(출하자)로서 하역비 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없음
 - 특히, 하역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현행의 하역노조 형태로는 하역의 효율화, 하역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있음
- o 농수산물의 출하상태가 하역작업의 기계화·능률화를 지연
- ㅇ 하역비의 적정요율 개념 미도입
 - 시장별로 하역료 상이
 - 동일 중량인 경우에도 하역료 차등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황

통상적으로 하역비는 하역노조와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며, 부담 주체인 출하자는 배제되고 있음

- 출하자는 거래금액의 4~7%의 상장수수료외에 도매시장에서의 하차·선별 등을 위한 1~2%의 하역비를 추가로 부담
- 가락시장의 경우 학계, 출하자 대표가 참여하여 하역비 조정협의를 하기도 함
- ㅇ 구리・안양・안산・익산 등 신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 품목별 하역비 현황

(단위: 원)

품목	배추	알타리 열무	풋마늘 대파	건조 마늘	양파	배, 귤 사과	수박
단위	차량 (4톤)	차량 (4톤)	차량 (3톤)	차량 (3톤)	kg (18~20)	상자 (10kg)	차량 (4톤)
하역비	43,000	43,000	44,000	41;000	140	160	60,000

다. 표준하역비 설정방안

- 포장화·파렛트화 정도 등 품목별 특성과 시장별 하역기계화 정도 등을 고려 표준하역비를 개설자가 결정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하역노조, 출하자 대표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별 관리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표준하역비 결정
- 시장별 사정을 고려하여 개설자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하여비 결정요령을 '99년중 전문가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작성 배포

라, 발전방향

- 산지출하체계의 개선에 따라 규격포장출하, 파렛트출하 등 도매시장
 으로의 출하형태도 변화 예상
- ⇒ 표준하역비 개념을 도입하여 출하형태와 하역비를 연계함으로써 하역업무 개선을 촉진

마. 외국의 제도

국가	하역업무 현황
일본	 출하자에 의한 직접하역, 출하자와 운송업자의 계약에 의한 운송업자 하역 등 다양 대부분 하역기계화 이루어짐 하역비는 출하자 부담(기계화 되고 법인직원이 보조하고 있어 하역 비가 경미) * 오사까도매시장 - 도매회사 직원이 자동화 설비로 하역작업 별도의 하역비는 없음 - 경매된 물건은 중도매인(매참인)이 전동차 등으로 각자 이동
대만	 시장관리기구가 하역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하역업무 수행 하역은 수작업에 의존 하역비는 출하자 부담

바. 하위법령 개정검토

□ 업무규정 개정

ㅇ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참고 1>

하역료 결정방법 및 하역료 징수현황 예

الاراساريا	ું હો ન સે સો પો ધો	하역비	'98청과류	′98하역료	비율
시장별	하 역 료 결 정 방 법	부담주체	거래금액(A)	(B)	(B/A)
				백만원	%
가락	ㅇ하역료 조정협의회에서 결정	출하자	1,643,158	22,321	1.4
	- 구성인원 : 32명(출하자대표15,		백만원		
	도매법인6, 중도매인4, 하역노조		(상장예외		
	3, 전문학자2, 관리공사2)		품목제외)		
부산	ㅇ하역료조정협의회에서 결정	출하자	247,136	4,168	1.7
	- 구성인원 : 8명(도매법인3, 하역				
	노조3, 생산자단체2)		,		
대구	o 하역료조정 협의회에서 결정	출하자	257,260	2,161	0.8
	구성인원: 7명(도매법인6, 중도매인1)				
	* 법인별로 출하주와 하역반 의견				
	수렴후 조정협의회에서 결정				
광주	ㅇ하역료조정 협의회에서 결정	출하자	251,561	3,567	1.4
0 1	- 구성인원 : 8명(도매법인4, 항운노		201,001	0,00.	1.1
	,				
	조 3, 수집상연합회 1)	,			
구리	o 상장수수료에서 하역료를 부담	도매법인	184,181	1,906	1.1
		(공판장)			, i
안양	o 상장수수료에서 하역료를 부담	도매법인	89,633	1,280	1.4
		(공판장)			·
수원	ㅇ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출하자	106,790	1,778	1.7
	- 구성인원 : 17명(도매법인8, 중				
	도매인8, 출하자1)				
울산	ㅇ도매시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출하자	67,029	1,129	1.7
	- 구성인원 : 11명(도매법인5, 중				
	도매인5, 공무원1)				

<참고 2>

가락동도매시장 하역노조 및 장비 현황

□ 하역노동조합

ㅇ 구 성 : 전국항운노조, 전국연합노조 소속 9개분회, 1,469명

o 설립: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거 설립신고로 설립되는데 반하여 가락시장내 하역노동조합은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근로자 공급사업)에 의하여 설립
- o 운영 및 관리
- 통상적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각 조합이 정한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가 자유
- 감독기관의 행정지도, 업무감사, 운영보고 등도 일반 노동조합과 는 다른형태로 운영
 - ※ 하역노조 관리·감독기관: 노동부(동부지방사무소), 서울시(송파구청)
- 일반노동조합과는 달리 소속회사의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각조합이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성되며
- 조합원의 신규채용, 인사이동, 해고 및 퇴직에 관하여 조합자체에서 권한을 가지는 특수형태의 노동조합으로 제3자 개입금지 등으로 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하역장비 확보현황('98 현재)

구 분	합 계	지게차	전동차	대차 ·	손수레(대)
합 계	940	16	49	27	831
서울청과	237	3	_	2	220
과일분회	166	2		2	150
채소분회	71	1	_	_	70
농 협(공)	150	2	48	10	90
과일분회	122	1	21 .	10	90
채소분회	28	1	27		
중앙청과	268	2	_	8	255
과일분회	173	2	-	8	160
채소분회	95		_	-	95
동화청과분회	155	3	-		150
한국청과분회	127	3	1	7	116
대아청과분회	3	3	_	-	

배송료는 하차비와 동일 학역노임 협정표 '97. 4. 1부터 시행함,

※ 포장, 파렛트 적재출하품의 하역단가: 1,800원/1파렛트하여, '97. 4. 15일부터 적용

품 명	규격및중량	하역비
	7-8톤	60,000
	롱5.5톤	53,000
	동4.5-5톤	
	₹4.5~5 ~	43,000
배 추	4톤	41,000
	2.5-3톤	35,000
	1.4톤	21,000
	1톤	17,000
	10-11톤	70,000
.n == =1	롱6-8톤	60,000
냉 동 차 (배추,무)	롱 4 .5-5톤	49,000
	4톤	41,000
	10-11톤	70,000
	7-8톤	
		60,000
	롱5.5톤	53,000
	롱4.5-5톤	46,000
	4돈	41,000
외대무	2.5-3톤	35,000
	2톤	26,000
	1.4톤	22,000
	1톤	17,000
	10-11톤	70,000
	8-9톤	70,000
알타리 고구마순	7-8톤	70,000
양배추	롱5.5톤	60,000
	5톤	58,000
초동무	4.5톤	52,000
다발무	4.6년 4톤	43,000
얼가리	3톤	
열무	<u> </u>	37,000
- 1		35,000
	1.4톤	20,000
	1톤	17,000
풋마늘	8-10톤	75,000
대파,쪽	6톤	70,000
파	롱5톤	68,000
※풎마늘	4.5톤	60,000
	3톤	44,000
선별료는	2톤	41,000
하역비와	1.4톤	26,000
동일	1톤	20,000
	7-10톤	75,000
	5-6톤	70,000
У	4.5톤	64,000
	05	
건조마늘	<u> 3톤</u>	41,000
	2톤	37,000

품 명	규격,중량	T-X 23 -
	11 11 0 0	하역비
건조마늘	<u>1.4돈</u> 1톤	23,000
		21,000
마 눌	1단	60
대파,쪽파	1단	10
제주파	1단	60
	1 k	15
	2k	20
	4k	60
마늘쫑	8k	100
	12k	160
	16k	190
İ	20k	200
	10k	90
ļ	11k-12k	100
	13k	110
	14k	130
'망마눌	15k	140
ું હ	16k	150
Ì	17k	160
	18k	170
}	19k-20k	180
2) p) L		100
깐마늘	포대	
	2-5k	50
	6-7k	60
양 파	8-9k	80
ठ भ	10-13k	90
ľ	14-17k	130
	18-20k	140
ļ	20k이상	160
감자,고구마	1box	190
당 근	1box	190
감자,당근(마대)	40k	270
	4k	60
	8k	100
1a)	10-12k	160
호박	13-15k	170
오이, 가지	16-20k	190
	21k이상	250
	4k	60
Ì	8k	100
상추,깻잎,	10-12k	160
시금치쑥갓	10 10	100
,근대,아욱	13-16k	190
열무,콩,봄동,갓	17-20k	200
얼가리,파(보따리)	25k	290

- - -	-7 -13 -77 -13	
품 명	규격,중량	하역비
	25-30k	350
상추,깻잎,시	35k	400
금치,쑥갓,근 대,아욱,열무	40k	450
콩,봄동,갓	45k	500
얼가리,	50k	550
파(보따리)	50k이상	650
	· 4k	60
	8k	100
고추,꽈리,청	10~12k	160
초,홍초,피망	13-16k	180
	17-20k	200
부추	단당	7
포항부추		290
대구부추		350
 갓	단당	15
취나물	20k	250
생강지포	20k	170
미나리	18k	230
	4k	60
물냉이	8k	100
,	12k이상	160
물미역	25k	290
미역상자	LON	200
느타리	2k	35
양송이	4k	60
표고(가고)		300
	0.2k	3
팽이	5k	100
파래	1상자	120
 배추	1망	60
양배추	1망	60
무(마대)	1망	170
<u></u>	8(소)	100
옥수수	10(중)	140
	20k	190
연근	30k	300
양상추,샐러 리,브로코리	10-12k	150
치커리,칼리, 파세리	15-20k	200
	제주산	200
적채	근교산	130
	21-25k	270
건고추	특60k이 상	930

과일부하차비및배송료 인상요율표									
푺 명	규격,중량	하역비							
배,사과,귤	10k	160							
사과,배,귤 파인애플	15k	180							
포도,토마토 파인애플	스치로폴,박스	180							
바나나	15k	240							
	15k	260							
참 외	18k이상	350							
	다라	310							
딸 기	소박스(2-4)	60							
귤,사과,배	4.7k	80							
사과,귵,포도 감,자두	상 자	230							
	30k이하	400							
밤	30k이상	600							
호도,땅콩	마대	500							
	상자	230							
곶 감	한접	90							
	반접	60							
메론,거봉 방울토마토	4-5k	80							
자몽,레몬 오렌지	15k	290							

늙은호박, 수박 하차비									
풁 명	규격및중량	하역비							
복 수 박	중	140							
= - = -	대	190							
,	1톤	38,000							
수 박	1.4톤	38,000							
늙은호박	2.5톤	46,000							
	3톤	50,000							
· 선별료는	3.5톤	60,000							
하역비와	4톤	60,000							
동일금액임	롱4.5톤	64,000							
	5톤	70,000							
	롱5.5톤	72,000							
	8톤	75,000							
	11본	83,000							
제주수박	10-11톤	176,000							
※선별료는	8톤	147,000							
차연비와 하역비와	5본	119,000							
	콘테이너	59,000							
동일금액임	통당	60							

14. 대금결제(정산제도의 이용)

- ---<제 41 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 ◇ 수탁한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대금을 즉시 결제하여야 함
- ◇ 대금결제는 출하자가 표준정산서를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이 직접결제하지 못함
 - ㅇ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의 판단으로 직접 결제하도록 할 수 있음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시장도매인은 정산조직에 의한 대금결제 의무화

□ 개정사유

- 거래의 안정성과 공정성의 핵심내용은 가격결정과정의 투명성과 대금지급 방법의 즉시성 및 공정성에 있음
- 도매상제도하의 상대수의거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개경쟁매매보다가격결정의 투명성 측면은 취약함
 - 도매상의 매취 수탁 과정에서 결제의 지연 및 부당거래의 방지 필요
- ㅇ 분산과정에서의 거래자료 감시는 사실상 곤란
 - 도매시장법인은 분산자료가 명확히 노출되나, 도매상은 분산자료의 은폐 또는 분식이 용이
 - 수탁의 경우 위탁수수료에 제한을 받으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매취 품목에 대해 폭리를 취할 개연성 내재

나. 현행제도의 내용

□ 기존의 정산체계

- ㅇ 우리나라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실질적으로 정산기구의 역할까지 수행
 - 도매시장법인은 매입을 원칙으로 영업하는 중도매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외상거래를 실시하며, 출하자에게는 즉시 대금결제를 하고 있음

- 이것은 중도매인의 매입시점과 판매시점사이의 금융부담을 도매 시장법인의 회계처리절차로서 보완역할을 하는 것이며, 금번에 도 입하고자 하는 정산제도의 역할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임

다. 정산제도 운영계획

□ 기본체계

- ㅇ 즉시결제 원칙
 - 매취 또는 수탁매매가 완료된때에는 즉시 결제
 - 수탁된 물품의 매매완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일정시간을 초과 하여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매잔품에 대하여는 평균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결제
- ㅇ 직접결제금지 : 정산제도 사용 의무화
 - 결제의 지연 및 부당거래의 방지,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출하주에 대한 시장도매인의 직접결제 금지
 - 시장입구에서 출하자에게 교부하는 표준정산서에 의해서 시장도매
 인의 거래내역 기재후 출하자가 직접 정산창구에서 대금수령

□ 유형별 운영방안

- ㅇ 개설자가 정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정산기구는 우선 관리사무소(관리공사)내에 두되 장기적으로는 별도 기구화
 -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받아 운영
 - 보증금잔액이 없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거래금지 조치
- ㅇ 금융기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 시장도매인의 결제대금은 Firm Banking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표 사용을 의무화
 - 출하자는 표준정산서에 의해서만 대금인출이 가능토록 함
 - 금융기관과 시장도매인간의 거래보증계약 체결로 부실법인 견제

- ㅇ 도매시장법인의 정산체계 공동이용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의 구매물량의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를 대행하고 추후 정산하는 체계를 공동이용하는 방안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제도이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임
- ㅇ 시장도매인이 자체적으로 정산기구를 만드는 경우
 -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불을 대행하도록 정산조합을 설치
 - 정산조합은 시장도매인에게서 사후에 대금회수를 하며, 금융위험을
 부담
 - 정산실적이 불량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의 의결로 대금결제 대행을 중단

□ 정산절차 예시(안)

- ① 출하자는 송장작성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출입시 제출
 - 출하자 보관용1부, 개설자 제출용 1부, 도매상 보관용 1부 작성
- ② 출입구에서는 송장내역을 PC에 입력하여 정산조직과 자료공유
- ③ 도매상은 점포앞에 반입물량, 전일거래가격을 공시
- ④ 도매상은 판매후 정산서(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하고 사본 보관
- ⑤ 도매상은 정산서(계산서)내역을 정산조직 공유 PC에 입력
- ⑥ 출하주는 송장 1부를 가지고 정산조직에 제출, 확인, 대금청구
- ⑦ 정산조직내의 PC와 은행간 펌뱅킹 활용으로 대금정산
- 도매상은 지정금융기관내에 대금결제용 운전자금을 예치
- ⑧ 정산조직은 표준거래가격, 반입물량 정보를 공시

□ 보증제도

- ㅇ 보증금 납부의무는 규제개혁조치에 의하여 철폐됨
- 따라서 보증금 규모 및 예치방법은 정산기구 또는 금융기관과
 시장도매인간의 보증계약에 의하도록 함
- o 개별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규모 및 정산지체내역 등 신용도 판단을 위한 객관적 정보는 공개토록하여 출하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

□ 분쟁조정창구 설치

- o 대금정산, 거래가격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리사무소 (관리공사)에 분쟁조정실을 설치·운영
- 감독 및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하여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조치

□ 위반시 조치

- ㅇ 정산실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불량거래자는 경고 및 지도실시
-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안 제82조) 또는 과징금 부과(안 제83조)
 - 농안법 및 이에 근거한 명령위반자에 대한 일반적 제재 방안 강구

라. 외국의 제도

- ㅇ 미국의 경우 정산에 관하여 자유로움
 - 그러나 사회전반의 금융시스템이 거래에 관하여 투명한 노출이 가능하도록 완비되어 있음
 - 대금정산시 수표 및 지로 사용이 일반적 관행이며 이를 어기는 경우 신용평가상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사업영위를 계속할 수 없음
 - 따라서 별도의 정산체계 없어도 거래당사자간 신용거래가 가능

①수표에 의한 대금결제, ②거래내역의 정확한 기재(농무성 공무원이수시로 검사) ③위탁판매품송장의 정확한 기록유지 ④불공정,부정행위를 소비자단계부터 생산자단계까지 적발할 수 있는시스템(tracking system) 투명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마.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 ㅇ 출하자에게 대금지급을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
- o 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참고1>

일본의 정산회사 운영방식

-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대금정산방식으로는 ① 개인지불방식 ② 중 도매인조합 대불방식 ③ 정산회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
 - 개인지불방식: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개별로 거래계약을 맺고, 도매법인의 창구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도매법인이 리스크를 부담
 - 조합대불방식: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조합이 거래협약을 맺고, 중도매 인조합이 도매법인에게 대급지불을 대행하고 중도매인으로부터 대금 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합이 리스크를 짐
 - 정산회사방식: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외의 제3자 기관으로서 독립된 정산회사가 대금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며, 도매법인, 중도매인, 개설자, 금융기관 등이 출자함
- 각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각 시장별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정산회사를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도매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시장별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 야 될 사항임
- 참고로, 현재 일본 도매시장 경우는 이 3가지 방식증 어느 하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2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다양한 방식으로 대금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도매인조합 대불방식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 일본의 청과물 중앙도매시장 정산회사 출자비율
- 도매업자 47%, 중도매업자 20%, 매매참가인 14%, 개설자 15%, 은행 등 금융기관4%

<참고 2>

일본도매시장의 중도매인조합 운영사례

▶ 모델 : 나고야중앙도매시장북부시장 청과도매협동조합

□ 조합의 구성

- ㅇ 시장내 73개 중도매인 모두가 조합에 가입
- ㅇ 1개 중도매인당 100만엔씩 조합에 출자를 하고, 매월 2만엔씩 조합비를 냄
- 신규로 영업권을 취득하려는 중도매인은 조합원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조합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경우, 이를 시에 보고 하여 허가를 얻도록 함
- 나고야북부도매시장에서는 소매업자까지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에서 도매시장의 가장 선진모델로 인정 받고 있음

□ 중도매인의 형태

- ㅇ 80% 이상이 유한회사,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음
-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후계자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1955년부터 회사형태로 허가를 내 주게 되었음
- o 73개 조합원의 직원 총 수는 1,200명이며 직원이 많은 곳은 130명, 적은 곳(개인활동)은 2명까지 있음
- ㅇ 중도매인은 상호보증을 통해 전체 보증을 이루고 있음.

□ 경영환경

- 상품배송에 따른 경비(운송비용)를 중도매인이 모두 부담하며, 반품되는 상품의 비중도 높아 경영압박을 받음
- 도매시장법인이 생산자로부터 가격요구를 받거나 일정가격으로 매취하여, 중도매인에게 가격협상을 해 오는데, 이를 수용할 경우 대개경락가보다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조합에는 거래후 5일만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거래처인 대형양판점 등에서 한달만에 정산을 해 주는 등 정산기일을 늘려 잡고 있어 자 금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 정 산

- o 조합원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후 5일만에 정산을 받고, 도매시 장법인에게는 조합이 4일만에 정산을 하는 조합대불방식을 취함
- ㅇ 중도매업자조합과 소매업자조합과의 대금지급 기일은 3일
- o 이같은 정산체계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중도매인이 안정적이고 효과 적인 정산을 하기 위해 정립
 - 조합원이 제 때 결재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중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에게 통보하여 거래를 중지시킴
 - 조합은 정산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조합원의 거래사항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함은 물론 거래명세서를 조합원과 도매시장법인에게 통보해 주는 역할 수행

<참고 3>

표준송품장 및 대금정산서 양식 예시

□ 표준송품장

수신			1		(주)	귀하	발	·신				2)
	아래	농수	산물의	판매를	의뢰합	납니다.		3	19	년	£	일 일	
4	품된	루 및	! 품종	⑦포장 및	,		87	등급 5	및 -	수량			① _月
생산자	<u>⑤</u> 품	목	⑥품종	규격			, 			,		9계	고
								<u> </u>					
					· · · · · · · · · · · · · · · · · · ·								
	①į	 계	1										
①운임	일금	- :		원정	(₩)	①차	량	<u>기사</u> 번호			
	송금	금융	· 구기관명		14)		(8)주	소				
출			좌번호		(15))		19전	화	D	DD()(19)	-
하	계좌	à	ll 금주		(6))		20FA	λX				
사		수집			17	1		21)7]	타	농	어민,	생산자	단체,
	<u> </u>	-록1	번호		U.	,		(비등	록)	물류	센타,	수입업지	·, 기타

□ 작성요령

- ① 판매를 의뢰할 도매시장법인(도매상)명을 명기
- ② 출하처(공동출하는 단체명, 개별출하자는 자신의 성명)를 기입
- ③ 출하 날짜를 기입
- ④ 개별출하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입하고 단체의 경우 공동정산일 때는 단체명을, 개별정산일 때는 각 회원(출하 해당자)의 성명을 기입
- ⑤ 출하품목을 기입
- ⑥ 출하품종을 기입
- ⑦ 단위별 중량을 기입
- ⑧ 등급별 수량을 기입
- ⑨ 개개 출하자의 전체수량을 기입
- ⑩ 기타 특이사항을 기입
- ① 전체수량을 기입
- ⑩ 출하물품의 운임을 기입
- ③ 수송차량의 기사 성명과 차량번호를 기입
- ⑭ 판매대금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명을 기입
- ⑤ 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입

- ⑥ 판매대금을 받을 통장의 예금주명을 기입
- ⑰ 수집상은 자신의 등록번호를 기입
- ⑧ 출하자(단체)의 주소를 기입
- ⑩ 출하자(단체)의 전화번호를 기입
- ② 출하자(단체)의 팩스번호를 기입
- ② 해당란에 ○표를 한다

□ 대금 정산서

(출하자용)

출하자 코드:

시장도매인 코드:

		10 -1 01	A)		713	-1)	1	r1] .].	スィ	어리를 지어	
	19 년 월 일 발행자 도매상 주소, 연락처, 직인										
주:	노(또는 출	·하처명)							,		
	병(또는 생				계	좌녃	번호 📗				
	품 명	단위	등급	과수	-		수량	단가	-	판매금액	
-	<u> </u>										
-											
							1				
	합계								1		
							위탁	个个 显			
1	즈	소					운임/	선급금			
수	•				공:	제		선별비			
					금	വ		발부담금			
령	주민등	록번호			E	<u>-</u> 4		지원금			
자	(3) 6) 7)	드로비중/									
	(ハロハ)	등록번호)						:계	ļ		
	상	명					총지급	액			

(구매자용)

구매자 코드:

시장도매인 코드:

19 \	선 월 일		발행자	도	매상 주소 <u>, '</u>					
출하처명		하주	품목	수량	단7	가 판매금액				
= = 1110		Ji (************************************		<u> </u>						
	ı									
합계				i						
	 성 명		<u> </u>		코드번호					
人 コ コ ス			<u></u>							
수령자 주	민등록번호									
(구매자) (사업	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고 4>

농수산물 매수계약서 예시

I. 목적물의 표시

품목	품종	포장규격	등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		

Ⅱ. 위 목적물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I 항의 표기 수량과 금액으로 한다. 단,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제2조(대금지급) 매매대금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갑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4조(목적물의 수거) ①갑의 목적물 인도후 을은 199 . . .까지 목적물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길 때에는 갑은 을에 대한 통지없이 반출종료약정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목적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폐기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수거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위험부담) 목적물은 인도시까지 갑이 관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을이 지기로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하자담보) 을은 이 계약체결후 목적물의 품종,등급,수량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갑에게 계약해제, 매매대금 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제)갑 또는 을은 본계약의 제2조 내지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후 후일의 증거로서 갑·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199 . . .

메드이(가) 성명		(인)		전:	화번호	
매도인(갑)	주소					
매수이(음)	성명	또는 상호	(인)	전:	화번호	
매구인(宣)	주소		(시	장 명)	

----- 절 취 선(도매시장 제출용)-----

※ 본 자료는 도매시장 반입증명서로 활용

I. 목적물의 표시

품목	품종	포장규격	등급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계							

Ⅱ. 거래당사자

	성명	(인)	전화번호	
매도인(갑)	주소				
	구분	농어업인,생산자	단체,수집	상,물류센타,수입업자,기타	
매수인(을)	성명	또는 상호	(인)	전화번호	
	주소		(시	장 명)	

농수산물 출하계약서 예시

(출하주와의 농수신물 위(수)탁 판매계약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농수산물 위(수)탁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판매인의 지정) 을은 갑을 위탁판매인으로 지정하고 을이 생산 또는 수집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갑에게 위탁 판매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출하하는 농수산물을 성실히 수탁판매 하기로 한다

제2조(판매위탁의 통지)을이 갑에게 농수산물을 위탁할 때에는 최선의 선 별과 규격포장으로 출하하되 품명, 등급, 수량, 중량 등을 정확히 기재한 출하통지서(송장)를 농수산물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단, 품질인증 농수 산물을 출하할 경우 반드시 정부가 발행하는 인증마크를 부착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출하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한계)을은 농수산물을 갑의 판매장소에 하차시까지 일체의 경비 및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갑은 하차후부터 판매시까지의 보관책임을 진다. 단, 하역에 따른 표준하역비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진다.

제4조(판매및정산)①갑은 을이 위탁한 농수산물을 인수후 1일이내에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판매종료 24시간 이내에 을에게 송금하거나 직접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갑이 도매인의 경우에는 개설자와 체결한정산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다.

- ②대금결제 송금구좌 번호는 (), 예금주()으로 한다. 단, 송금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 ③갑은 판매대금 정산시 을이 부담하여야 할 위탁수수료, 운임, 하역료, 선별비, 선급금 등 판매를 위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판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하역료 중 개설자의 표준하역비 징수방침에 의한 하역료는 갑이 부담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을은 농수산물 판매대금의 ()%를 위탁수수료로 갑에게 농수산물 판매대금에서 지불한다. 단, 품질인증품은 ()%를 지불한다 제6조(출하장려금)①갑은 을이 본약정에 의하여 판매위탁한 농수산물 판매금액의 ()%를 매월 또는 매분기 마다 출하장려금으로 을에게 환급하기로 한다. 단, 을이 품질인증품을 출하할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 범위내에서 출하장려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경영상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출하장 려금을 을에게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갑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하장려금 지급율을 변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통지 및 농수산 전문지에 1회이상 공시하여 을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제7조(판매유보)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입하 당일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①경매 또는 입찰 종료후 농수산물을 입하아여 경매, 입찰, 정가, 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 할 수 없을 경우
- ②을이 경락을 유보하였을 경우
- ③농수산물의 상품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판매가 불가하여 을이 인수하거나 폐기처분할 경우 운임, 상하역비, 선별비, 보관료 등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제8조(성실의무)①갑은 수탁 농수산물을 성실히 판매함과 아울러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을은 농수산물 출하에 있어서 선별, 포장, 품질 등에 대하여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약정기간)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199 년 월 일부터 199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출하약정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계약기간의 종료로인한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10조(해약)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갑이나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①을이 일정기간 계속하여 출하하지 않을 때
- ②갑이나 을이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 ③본약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11조(기타)본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도매시장 조례(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2조(관할법원)본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위 각조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수탁자) 주소

대표전화

팩스

(상 호명)

(인)

"을"(위탁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명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1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제 42 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 --

◇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도매상) 및 중도매인이 징수할 수 있는 금원의 명목 및 요율에 대해 규정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선 내용

- ㅇ 시장도매인의 수수료 징수 조항 마련
 - 시장도매인이 납부하는 수수료 :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쓰레기유발부담금
 -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도매상), 중도매인이 수수료 징수
- ㅇ 쓰레기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종전 : 규격출하촉진 → 확대 : 스레기 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포함

□ 필요성

- ㅇ 시장 도매인(도매상) 제도 도입에 따라 수수료 징수 대상자 포함 필요
- ㅇ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시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징수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제도의 내용

□ 부담수수료 유형

- 도매시장사용료 :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개설자가 징수
- 시설사용료: 도매시장에 부수되는 시설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자에게 개설자가 징수
- 쓰레기유발부담금: 도매시장의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비규격출하 물량에 대하여 개설자가 징수(양파,마늘,배추,무,양배추, 대파)
- 이 위탁수수료 : 출하자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상장예외품목을 취급시)이 징수

o 중개수수료 :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시장도매인 또는 중 도매인이 매수한 자로부터 징수

< 기타 부담 수수료 >

- o 하역비: 통상 출하자가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내려 놓는다는 명분으로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이 판대대금정산시 하역료를 공제(하역노조에 전달)한후 출하대금 지급
 - 최근 도매시장법인이 자체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o 청소비, 전기료, 수수료 등 : 관리비의 성격으로 수혜자가 부담하며 개설자가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 수수료 징수자

구분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쓰레기유발부담금				
위탁수수료		0	△(상장예약품목)	
중개수수료			0	0

□ 수수료 부담자

구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출하자
도매시장사용료	0	△(상장예외품목)	0	
시설사용료	0	0		
쓰레기유발부담금	0	0	0	
위탁수수료				0
표준하역비	0	스(상장예외품목)	. 0	△(班子)中19)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사용료 납부, 표준하역비 자부담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 ㅇ 각종 수수료 징수대상 및 요율
- ㅇ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대상품목

<참고 1>

전국 도매시장의 수수료 현황

□ 상장수수료 현황

- o 상장경매 수수료 1%P 이상 인하 추진
 - 도매시장 법인수익·비용 및 적정 수수료 수준분석 ('98.4)
 - 상장경매 수수료 인하관련 관계자 의견 수렴 ('98.5)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추진지시 ('98.5~6)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관계자 회의개최('98. 7)
 - 중소도시 도매시장 중 일괄적으로 상장수수료 인하가 곤란한 시장은 우수출하주의 상장수수료를 1%p 수준 인하 지시('98.10.1)
- ㅇ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현황

(단위:%)

시 장	현행수수료	인하전 수수료	
가락동	4	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6	7	
대전, 충주	6	6.5	
수원, 창원, 전주, 청주, 천안	6.5	7	
구리, 안양, 안산, 익산	7	7	

* 구리, 안양, 안산, 익산도매시장은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 하여 상장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

□ 공영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현황

	품 목	'98징수액 (천원)	시행일	비	고
가 락	배추·무·마늘(3개)	1,183,173	' 96. 6. 1		
부 산	-	_	_	'99시 천	행계획
대 구	_	_	_	'99시 천	챙계획
인 천	_	_			
광 주	. –		_	'99시 천	행계획
대 전	- .	, <u> </u>	_	미	정
울 산	-	_	_	미	정
수 원	무·배추·파·양파·양배추·마늘(6개)	45,166	' 98. 1. 1		
구 리	배추·무·마늘(3개)	107,404	'97. 5.16		
안 산	무·배추·마늘·양배추·대파·양파(6개)	8,519	'98. 1. 1		-
안 양	배추·무·마늘(3개)	32,961	'97. 9. 7	,	_,
춘 천		-	-	미	정
청주	마늘·양파·배추·무·양배추·대파(6개)	31,856	'96. 7. 1	(00 x) *	리 - 리 중1
충주		_	_	'99시 ਰ 미	
천 안 전 주	_	•	_	미	정 정
전 T 익 산	_	_	_	च	정
창원	_		_	प	정
계	_	1,409,079			

□ 가락동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 운영현황

ㅇ 품목별 징수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배추	무	마늘	부과기간
1996년	767,011	650,202	53,063	63,746	'96.6 ~ 12월
1997년	1,393,550	1,321,714	64,871	6,965	'97.1 ~ 12월
1998년	1,183,173	1,127.070	50,333	5,770	'98.1 ~ 12월

※ 양파, 양배추, 대파는 부담금 부과대상품이나 포장화로 징수실적이 없음 ('96.6.1부터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시행)

ㅇ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	합 계	포장재 지원	장비구입 및 시설개선사업	교육연구	기 타
'97	449,765	208,255	172,752	39,170	29,588
' 98	985,072	944,590	-	12,011	28,471

<참고 2>

각종 요율현황(가락시장 청과부류 기준)

구분	지불자	수취자	요율	비고
쓰레기유발부담금 - 출하부담금	도매법인도매 시장공판장,중 도매인,매참인, 출하자	개설자	양파 : 400원/톤 마늘.양파 :5,000 무.양배추 : 700,대파 : 500	농안법 도매시장업무규정
- 행위부담금 (다듬기, 재포장)	도매법인,도매 시장공판장,중 도매인,매참인	,	매발생 행위별로 5만원 이내	상동
청소비	중도매인	개설자	잡쓰레기 : 종량제(2,310원/ℓ) 대량 : 건조기처리(14천원/톤)	당사자간 합의
출하장려금	도매시장법인	출하자	상장수수료수입의 150/1,000이내	도매시장조례
판매장려금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상동	상동
하역비	출하자	하역노조	하역요율협정단가	당사자간 합의
위탁(상장)수수료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거래금액의 4%	농안법 도매시장조례
중개수수료	구매자	중도매인	거래금액의 2%	도매시장조례
시설사용료	사용자	개설자	당해시설의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10)이내	농안법

* 출하장려금 : 출하 약정체결자에게만 지급

* 판매장려금 : 기준금액 이상 외상대금 결제시 지급

* 위탁수수료 : '98.7.1부터 5% → 4%로 인하조정

- 도매시장법인은 4.0% 징수하여 법인자체 운영비로 2.7%, 출하장려금 0.45%, 판매장려금 0.5%, 시장사용료 0.35%를 사용

* 농안법 및 서울시 조례상의 수수료 징수상한

	위탁성	·장 수수료	중 개 수 수 료		
부 류 별	농안법	서울시 조례	농안법	서울시 조례	
청과부류	거래금액의70/1,000	거래금액의 60/1,000		거래금액의 20/1,000	
수 산 선어	7] 7] 7] 6] 60 7 000	거래금액의 50/1,000		거래금액의 20/1,000	
부류 건어	거래금액의 60/1,000	거래금액의 35/1,000	거래금액	거래금액의 20/1,000	
			의40/1000	소 : 거래금액의 13/1,000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20/1,000	거래금액의 15/1,000		돼지 : 거래금액의 15/1,000	
				기타 : 거래금액의 10/1,000	

여 백

제4장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등

여 백

1. 공판장의 개설 및 운영

< 제 43 조 ~ 제 45 조 > -

- ◇ 농림축수협중앙회 또는 그 협동조합, 공익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생산자단체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 개설
- ◇ 거래방법은 수탁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공판장 실정에 따라 운영방법에 탄력성 부여

가. 제도개정 내용

□ 개정 내용

- ㅇ 공판장 개설주체 확대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공익법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도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ㅇ 공판장의 거래관계자를 두는 규정 완화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및 경매사를 둔다 → 둘수 있다로 완화

□ 개정사유

- ㅇ 민간도매시장 개설 허용 등에 따라 공판장 개설자 확대
- > 공판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관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완화

나. 현행제도의 내용

□ 공판장 현황('99.4현재)

7 분	계,	농 협	수 협	축 협	유통공사
개 소	104	90	8	5	1

□ 청과부류 거래실적('98년)

합	계	중앙회공판장		회원농협공판장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1,998,047톤 (1,188,346)	1,718,978백만원 (993,642)	833,160 (646,843)	736,314 (547,150)	1,164,887 (541,503)	982,664 (446,492)

^{* ()}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거래실적으로 전체 공판장 실적에 포함됨

□ 청과부류 공판장 거래관계자

계	경매사	중도매인	수 집 상	매매참가인
6,469	295	3,086	2,401	687

□ 공판장 운영방법

o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에 있어서 준용되는 규정(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제31조 : 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 : 매매방법(경매 및 입찰의 원칙)

- 제33조 : 경매 및 입찰방법

- 제34조 : 거래의 특례(제3자 판매)

- 제38조 : 수탁거부의 금지

- 제40조 : 하역업무

- 제41조 제1항 : 대금결제(즉시 결제의무)

- 제42조 : 수수료의 징수제한

2. 유통자회사의 공판장 운영(신설)

─ <제 46 조 제 5 항 > ㅡ

◇ 농림축수협등은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도메시장공판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음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ㅇ 농협자회사도 민간법인 자격으로 도매시장 운영참여 근거 마련

□ 개정사유

- ㅇ 탄력성이 약한 생산자조직 형태로 공판장을 운영하는데 한계
 - 단위농협 공판장은 조합과 독립회계가 되어있지 않아 비용개념 부족
 - *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공판장의 자회사 전환 추진
- 민간인도 도매시장 개설을 허용하였으므로 공판장도 자회사로 운영
 하여 경쟁체제를 도입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 황

- ㅇ 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원칙에 따라 18개 공영도매시장에 도매시장공판장 입주
- ㅇ 농협 회원조합이 도매시장과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산지 공판장 개설, 운영
- ㅇ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유통이 양재동 물류센타 개장,운영('98.1)

□ 유통자회사 설립근거

-<유통자회사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개정안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농림축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2조의4(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법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농수산물 수퍼 및 농수산물 직판장등 소비지 유통사업
- 2. 농수산물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 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다. 농협공판장 유통자회사 전환 검토(농협중앙회)

□ 추진배경

- ㅇ 농산물유통개혁 대책의 공영도매시장 개혁 과제
- ㅇ 농협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한 경제사업장 자회사 전환
- ㅇ 기 설립 유통자회사<(주)농협유통>의 물류센타 성공적 운영
- ㅇ 도매유통사업의 전문화 미흡에 따른 경쟁력 강화 대책

□ 필요성

- ㅇ 농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 ㅇ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독립경영체제 확립
- ㅇ 도매시장 수탁주체로서 영업 중시 경영체제 확립
- ㅇ 기업적 경영방식 특성 도입으로 도매시장내 경쟁 촉진
 -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탄력적 경영으로 경쟁력 확보
- ㅇ 물류센타 개장과 더불어 농산물 도매업무의 전문화 도모

□ 예상문제점 및 보완대책

<예상문제점>

- 제도적으로 농협공판장을 유통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더라도 도매 시장 개설자가 협조하지 않을시는 추진 곤란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 등 구조조정시 민간도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시 탈락 우려
- ㅇ 농안기금 등 자금조달 및 산지지원 위축 우려

<보완대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생산자 단체 또는 농림축협 등의 이용에 대한 지속적, 우선적 편의 제공
- ㅇ 농안기금 및 농협자체 유통저리자금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ㅇ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 子會社化
- ㅇ 출자 및 운영방법 : 100% 농협 출자로 독립적 운영
- 공판장 2개소를 '99년에 추진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00년 이후 단계적 확대

□ 대상 공판장

o 제 1단계(1999년): 가락, 구리공판장

- 가락공판장 : 기존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 중 입주 도매법인과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공판장

- 구리공판장 : 신설 공영도매시장에 입주공판장 중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 제 2단계(2000년): 1단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 확대(부산,

대전공판장)

○ 제 3단계(2001년 이후) : 공영도매시장 입주공판장 전체 확대

□ 자본금 규모('99년 대상공판장)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상 취급액	자본준비금 (A)	고정투자 (B)	계 (A+B)
가락공판장	300,000	5,500	1,500	7,000
구리공판장	150,000	2,500	1,500	4,000
계		8,000	3,000	11,000

□ 연차별 계획

연도별	구 분	'99	2000	2001 이후	계
대 상	중앙회	가락 구리 (2)	부산 대전 (2)	공영 입주 공판장 (6)	(10)
공판장	회원농협			자회사 희망 회원농협 (4)	(4)
	계	2개소	2개소	10개소	14개소

라 일본 농협의 자회사 운영사례

※ 일본농협의 자회사(협동회사) 관리

- ㅇ 농협법을 기본으로 회사관리
- ㅇ 협동회사의 설립은 농림수산성의 사전 협의사항
- ㅇ 회사 설립 후의 정관변경 등도 사전 협의사항

□ 회사명 : 주)월일월곡중앙청과

ㅇ 설립연월일: '82. 1월

○ 자본금 : 143백만엔

ㅇ 전농지분 : 100%

- ㅇ 업무기능
 - 청과류 및 가공품의 판매와 이에 부대하는 업무
- ㅇ 업무지역 : 수도권인 사이타마 동부지구, 치바 북부, 이바라기 남부

□ 회사명 : 주)전농중일본센타

ㅇ 설립연월일: '91. 10월

ㅇ 자본금 : 100백만엔

ㅇ 전농지분 : 50%

ㅇ 업무기능 : 농산물의 포장가공사업과 판매 및 그 외 농산가공품의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업무

ㅇ 업무지역: 나고야시, 아이치현

□ 회사명 : 삿뽀로 호구렌청과(주)

ㅇ 설립연월일: '76. 1월

○ 자본금 : 280백만엔

북해도경제련지분 : 93%(북해도시 7%)

ㅇ 업무기능 : 청과, 과실류 도매

ㅇ 업무지역 : 북해도 삿뽀로시

<참 고>

농협공판장 직접운영과 유통자회사 설립운영비교

□ 농협공판장과 자회사 운영의 장단점

구분	장 점	단 점
	ㅇ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ㅇ 조직운영 경직성으로 경쟁력
	에 초점을 두고 공익적 운영	열세
	ㅇ 농안법상 특례운영	- 인사이동에 의한 전문성 부
77 ml 71	- 지정·재지정 절차가 없음	족, 유능인재 채용곤란
공판장	- 특례운영으로 융통성 확보	- 의사결정 다단계로 신속대처
	ㅇ 선도금 등 운영자금 지원 및	곤란
	수급용이	ㅇ 공공성, 공익성 위주 경영으
		로 운영 내실화 소홀
	ㅇ 기업경영방식에 의한 독립성	o 지정·재지정 등에 민간도매
	부여로 책임경영체제 구축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시 탈락
	용이, 독립적 회계제도	우려
자회사	ㅇ 조직, 인력, 예산등의 탄력적	ㅇ 자금조달 및 산지지원 위축
*	경영으로 경쟁력 확보	
	ㅇ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도매업무의 전문화 도모	

□ 농협공판장과 민간도매법인 주요 경영방법 비교

구	분	농협공판장	도매법인
		ㅇ중앙회 제규정 적용	ㅇ정관 및 자체 사규
운영	내규	ㅇ시조례 및 도매시장업무규정	ㅇ시조례 및 도매시장업무규정
급	여	ㅇ급여규정으로 고정적	ㅇ사업실적에 따라 성과급 차등
		ㅇ전품목 상장경매로 공정성	
경	п}	제고에 기여	○일부 수의매매 또는 기록상장
		○출하주 접대 및 출하유치	ㅇ출하유치를 위한 접대 및 비
출하	유치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미흡	용 지원 자율

3. 민영도매시장(신설)

── <제 47 조 (민영도매시장) > ─

- ◇ 민간인이 도매시장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 거래방법은 경매 또는 수의매매를 개설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경매를 하는 경우 공판장에 준하여 운영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o 민간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민간도매시장 허용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며, 공판장 운영규정을 준용

□ 개정사유

- ㅇ 도매시장개설을 민간에도 허용함으로써 규제완화 및 민간자본 유치
- 이 대부분 종합부류시장인 공영도매시장과는 달리 전문품목별 도매 시장 등 틈새시장으로서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보완을 기대
- 일부 지역에서 민영 도매시장 개설을 시도하였으나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는 사례 발생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행도매시장의 개설

ㅇ 개설자 : 특별시, 광역시, 시

○ 관 리:개설자(관리사무소, 관리공사)의 시설물 관리

ㅇ 운 영: 개설자가 지정한 도매시장법인

□ 거래체계

-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거래방법과 도매상을 업주시켜 수의매매를
 하는 방식 중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선택 가능
- o 중도매인, 경매사, 수집상 등 거래관계자에 대하여는 공판장의 경우를 준용토록 함

□ 개설허가 기준

- o 허가 신청절차 :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허가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내의 도매유통시설 설치현황, 업무규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

□ 개설지원 계획

- 개설허가라는 행정적 지원외에 출하촉진, 시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도 가능
-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개설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설을 유도할 계획은 없음

4. 포전매매계약

--- < 제 53 조 (포전매매의 계약) > --

- ◇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는 서면계약을 의무화
- ◇ 포전매매된 농산물의 반출약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않을시 계약해지 단, 매수인이 반출약정일 경과전에 사유, 반출 예정일을 서면통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
- ◇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메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음

가. 제도의 운영실태

□ 개정내용

- 포전매매된 농산물의 반출 약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단, 매수인이 반출 약정일 경과시에 사유,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개정사유

- 포전매매를 하고도 반출약정일 당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수집상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생산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음
 - 수집상에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 있음
 - * 가격상승시 생산자측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드문 경우임
- 수집상이 포전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 생산자가 계약준수의 의무 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다른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포전매매 현황

(단위:%)

구분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홍성(70)고창	당진(90)완주			·
'92	(85)창녕(80)	(95)나주(90)			
92	정선(95)명주	평창(80)인제		· -	_
	(95)평창(99)	(80)홍천(80)			
	나주(90)고창	나주(85)고창		무안(10)의성(5	무안(20)창녕
' 95	(90)평창(85)	(80)평창(80)	_	~10)	(10)
	정선(80)	정선(85)			
	부여(90)평창	서산(95)평창	김제(50)보성	무안(5~10)고홍	무안(5)창녕(0)
97	(80)정선(80)	(80)정선(85)	(50)남원(20)	(5~10)의성(5)	
91	고창(95)나주	고창(85)나주	평창(50)정선	서산(5)	,
	(90)	(85)	(50)제주(55)		

* 자료 :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농수산물유통공사, 각년도)

□ 포전매매를 하는 주된 요인

- 가격과 작황불안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산자와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상인들의 이해가 일치
 - 채소류는 재배면적의 변동이 심하고, 상품특성상 병충해나 기상조 건에 따라 작황이 불안정
 - 생산량의 변동은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져 농가경제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는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면 일찍 처분하려는 경향
 - 투기성이 강한 수집상은 수확기의 가격폭등으로 인한 초과이윤을 기대하여 가격등락과 작황불안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생육기에 밭때기로 매입
- ㅇ 수확시기의 집중과 노동력 수요가 경합되는 작부체계
 - 고랭지배추는 일정시기에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확과 동시에 출하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지역내 농가만으로는 수확기의 노동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됨
 - 양파는 저장성은 있으나 수확시기가 봄철 밭작물의 파종시기와 보 리수확 및 모내기 등과 겹쳐 일손부족은 더욱 심함
 - 수집상들은 전문작업조를 두거나 외부인력을 조직적으로 확보하여
 수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에 대처 가능

- ㅇ 도매시장의 기능과 질서에 대한 농가의 불신이 팽배
 - 부패성이 크고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채소는 일단 도매시장에 출 하하면 거래조건이 불리하더라도 농가로서는 판매할 수밖에 없음
 - 밭떼기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시기,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농 민이직접 결정할 수 있음
 - 도매시장에서는 꾸준히 출하하는 수집상과는 달리 일회성으로 출하하는 일반농가의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쳐준다는 인식이 만연
- ㅇ 농가의 판매능력이 전문 수집상에 비해 부족
 - 생산농가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수집상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여 출하처나 출하시기의 결정등에 애로
 - 유통에 보다 관심을 갖는 대규모 농가는 자체적인 출하능력을 가 지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판매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음

□ 포전매매계약서 작성 현황

- ㅇ 계약서 작성현황(농협, '95조사연구자료) :작성(12.9%), 미작성 (87.1%)
 - ㅇ 계약서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사례
 - 약속일에 인수해 가지 않음에 따른 손해
 - 후속작물의 재배시기 상실(임의처분시 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
 - 농작물 수거비용 및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
 - 관리책임의 한계가 불분명
 - 작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가격인하 요구
 - 대금지불조건의 불분명(계약금만 지불하고 농작물 인수 요구)
 - 매수인이 임의로 농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 잔여 농작물의 처리문제로 인한 손해
 - 계약해제 방법의 불명확
 - ㅇ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과거의 관행적인 계약습관 때문에 서면계약을 불편하게 여김
 - 계약서의 상시 미소지 등으로 즉각적인 계약서 작성이 곤란
 - 상인들의 계약서 작성 기피

<참고 1>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예시)

* 농협의 표준계약서 참고

I. 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의 지상	}-
품목			재배면적		m² (평)

Ⅱ. 위 목적물을 포전매매함에 있어 매도인(이하 "갑"이라 함)과 매수인(이 하 "을"이라 함)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매매대금	금	원정 중
계약금	금	원정은 199 년 월 일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정은 199 년 월 일에 지급하고
잔 금	금	원정은 199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함

제2조(소유권의 이전) 갑은 매매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물을 포전상태로 인도하며,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3조(목적물의 수거) ①갑의 목적물 인도후 을은 199 . . .까지 목적물을 모두 수거해야 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한 통지없이 반출종료약정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목적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임의로 처분(폐기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수거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험부담) 목적물은 인도시까지 갑이 관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천재지면 등 불가항력이나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훼손,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을이 지기로 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하자담보) 을은 이 계약체결후 목적물의 품질,수확량,재배면적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갑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계약해제)①중도금 지급기일 전까지(중도금 약정이 없을 경우 잔금 지급기일 14일 전까지),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을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갑 또는 을은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 후 후일의 증거로서 갑·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199 . .

매도인(갑)

성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매수인(을)

성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입회인

성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 계약서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1. 용어의 정의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 잇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 애매한 내용의 단어사용은 피해야 한다
- o 자구의 변조를 막기위해 PC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다. 특히 금액의 기 재는 한자나 한글을 사용하여 변조를 막아야 한다

2. 계약서가 여러장일 경우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간의간인 및 입회인 또는 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어야 한다

3. 계약서 용지의 사용

-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에 걸쳐 보존할 수 있는 용지를 사용하고
-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제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맞는 크기의 용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용지 크기)

4. 목적물의 표시

- ㅇ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거나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자구의 수정

- 자구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당사자 쌍방이 정정인을 날인한다.
- 삭제는 두줄로 지우고, 추가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쉽게 병기 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한다. 이때 각 행 의 앞 여백에 삭○자, 가○자, 삭○자·가○자, 정정○자 등로 표시한다.

6. 계약당사자의 표시

- 당사자의 표시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권한 있는 자가 계약서를 작성,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표시는 주소,성명,대리인(대표자)으로 하며, 주소는 주민등록 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 에는 이와 병기해서 한다.
-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7. 계약서의 주요 확인사항

- 당사자 및 목적물 이행의 확보 한쪽의 이행불능시 위험부담
- ㅇ 담보책임 및 계약해제 ㅇ 조건 및 기한 ㅇ 비용의 부담 및 재판관할

<참고 2>

고랭지배추 밭떼기 거래현황

-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사업 현황자료 ('97. 11 농협)
- □ 분석대상 : 강원도 10개지역 농협관내 고랭지배추 경작농가 96호
 - ㅇ 농협과 계약재배 농가는 30%인 29농가이며, 이중 16농가는 밭떼기 거래도 겸함

□ 경영규모별 밭떼기 거래이유

가격불안정	판로부족	작황불안	일손부족	목돈마련	기 타	계
47호	20	6	3	3	1	80
(58.8%)	(25.0)	(7.5)	(3.8)	(3.8)	(1.3)	(100.0)

□ 산지수집상과의 거래형태

- o 고랭지배추 수집상은 대부분 강원도 이외의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상 인들로서, 여러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며 연중 수집활동을 하는 전업수 집상으로 나타남
 - 거주지 : 타지역(88.8%), 지역내(5.0%), 인근지역(5.0%)
 - 유 형 : 전업수집상(78.8%), 농가부업수집상(5.0%), 비농가부업수집상(2.5%)
 - 취급품목 : 다품목(51.3%), 단일품목(35.0%)
- 특정 상인과 단골로 거래하는 농가는 4%에 불과하며, 매년 다른 상인
 과 거래하는 농가는 대부분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남
- ㅇ 가격결정은 농가가 제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90%에 달함
 - 농가제시 가격기준은 주로 이웃농가의 거래수준을 참고로 함
 - · 이웃농가의 거래수준(62.5%), 생산비(11.1%), 주산지작황(8.3%)
 - 따라서 한 지역내에서의 가격형성은 첫 번째 거래한 농가의 계약
 가격이 기준치로서 역할을 하게 됨

□ 밭뗴기거래의 계약관련 사항

- ㅇ 농가와 수집상간의 거래시기는 가격전망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하락시에는 거의 출하기에 임박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가격상 승시의 경우 상인들의 물량확보 경쟁으로 조기에 거래됨

- '97년의 경우 7월이후 계속적인 가격하락으로 계약시기가 점차 늦어짐·7월물(정식후 31.8일), 8월물(37.0일), 9월물(38.6일), 10월물(45.0일)
- o 밭떼기거래시 받는 계약금 비중은 농가별로 일정치 않으나 평균적으로 42%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ㅇ 밭떼기거래 계약은 대부분 구두(95%)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 이유는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이 잘 이행되어서 서면계약의 필요성이 없다는 농가가 많음
 - · 잔금수령 시기가 계약일로부터 9일이내에 불과함
 - 구두계약 이유
 - · 계약이행 순조(76.3%), 상인이 원치 않음(7.9%), 서면작성이 불리해 (7.9%), 계약서 작성이 귀찮아서(1.3%), 기타(6.6%)
 - o 최근 3년 기간중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41.7%로, 계약대로 이행된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계약파기의 원인은 대부분 계약시보다 출하기 가격이 폭락하여 상 인이 인수해가지 않는 경우(95.0%)가 대부분임
 - · 이 경우 상인은 대부분 계약금을 포기하고, 농가에서는 타상인에게 재판 매하거나 시장에 직접출하 또는 폐기함
 - o 수집상들은 계약후 가격폭락이나 작황부진으로 손해가 날 경우 농가 에 감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는 농가가 60%이상으로 나타남

<상인 손해시 농가의 태도>

	\ \ \ \ \ \ \ \ \ \ \ \ \ \ \ \ \ \ \		11 4			
7 1-1	가격목	가격폭락시		작황부진시		
一 一 亡	농가감액	조정없음	농가감액	조정없음		
농가호수	49호 (61.3%)	31 (38.7)	48 (60.0)	32 (40.0)		

○ 가격폭등시에는 추가정산을 하지 않고 상인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75%에 이름

<가격폭등시 상인의 태도>

구 분	조쟁없음	선물사례	추가정산	계
계	60호(75.0%)	9(11.3)	11(13.8)	80(100.0)

- ㅇ 계약이후의 포전관리는 주로 농가의 부담으로 농가에서 관리함
 - 농가부담관리(70.9%), 상인부담농가관리(17.7%), 상인부담관리(12.5%)
 - 수확작업은 모두 상인이 주도하여 출하

여 백

제5장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여 백

1.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 제 54 조(농안기금) > -

- ◇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 ◇ 기금은 융자·대출 또는 지출사업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운용하며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가. 제도의 운영실태

□ 기금운용현황

- 운용규모: '98: 1조7,940억원 → '99: 1조8,720억원
- ㅇ 농안기금 사업의 주요내용
 - 가격안정사업: 정부 수매 및 수입비축, 민간 저장·가공·수출수매

지원, 채소류 출하조정 및 가격안정 사업

- 유통개선사업 : 도매시장건설, 산지생산자조직 육성, 도매시장공판장 등

소비지 출하촉진, 직거래지원, 수출시장 개척 등의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조사연구·경영지도 및 사업평가

- ㅇ 기금 대출방법 및 조건
 - 농림부가 기금대출취급기관인 농·수·임·삼협 및 유통공사에 자금을 대여
 - 기금대출 취급기관이 정부지침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출조건 : 지자체 도매시장 시설지원(10년), 가공업체 원료수매자금 (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미만 단기융자이며, 대출이자율은 5~8%임

나. 기금통합계획

- □ 농림부계획 : 인삼산업진흥기금 융자기금을 농안기금에 통합 운영 ('99년 : 법령 등 정비 및 인수작업후 2001년부터 시행)
- □ 추진상황 :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금 통합작업 및 정부기관경영진 단과 결부되어있는 사안으로 내부준비를 거쳐 '99년2월말 기획 예산위원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실무작업 추진예정

농안기금 운용현황

□ 설치근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¹

☐ **설치목적** : 농수산물(쌀·보리 제외)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와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근대화 촉진

□ 연 혁

o 1966. 8. 3: 「농산물가격안정기금법(법률 제1815호)」 제정

1976.12.31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법률 제2926호)」
 제정, 종전의「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을 제정법률에 통합

 1994.10.이후: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796호)」에 의거 농안기금 운영

□ 기금의 재원(현행)

- ㅇ 정부의 예산에 의한 출연금
- ㅇ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 ㅇ 농수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이익금의 부과금
- ㅇ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 또는 다른기금으로 부터의 차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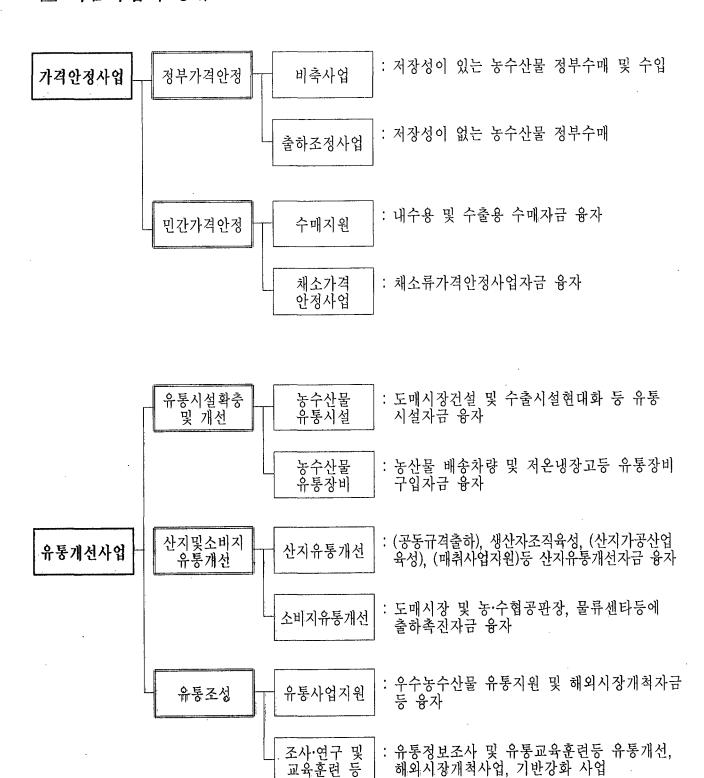
□ 기금의 지출사업(현행)

- o 정부수매·수입사업과 당해사업의 관리
- o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o 생산·출하조정에 의한 손실보전
-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과 규격화 촉진,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 ㅇ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융자사업(현행)

- ㅇ 농수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정
- o 농수산물의 보관·관리·가공 및 수출촉진
- o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자금
- ㅇ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 ㅇ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금사업의 종류



□ 기금조성현황('98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94까지	'95	'96	'97	'98까지	누계
0	정부출역	견금	1,475	_	_	_	_	1,475
0	재특차역	입금	2,015	-	_		_	2,015
0	재특차입	금 상환	△145	△150	△190	△250	△340	△1,075
0	운용수약	의 등	10,639	2,439	2,153	2,101	1,901	19,233
	계	당 년		2,289	1,963	1,851	1,561	_
	/1 	누 계	13,984	16,273	18,236	20,087	21,648	21,648

□ 자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그 별	'98계획	'99계획	증 △ 감
구 분	(A)	(B)	(B-A)
계	1,794,000	1,872,000	78,000
ㅇ 가격안정사업	975,081	1,011,673	36,592
- 비축사업	450,909	493,397	42,488
- 출하조정사업	10,000	10,000	_
- 수매지원	487,372	493,076	5,704
- 채소가격안정	26,800	15,200	△11,600
ㅇ 유통개선사업	762,153	808,531	46,378
- 유통시설	58,354	68,499	10,145
- 농수산물유통장비	440	_	△440
- 산지유통개선	365,088	385,260	20,172
- 소비지유통개선	214,142	239,504	25,362
- 유통사업지원	111,068	99,000	△12,068
- 조사・연구・홍보및교육훈련	13,061	16,268	3,207
ㅇ 사업조성	16,390	16,940	550
ㅇ 차입금 상환	40,376	33,408	△6,968
ㅇ 일시여유자금(금융기관 단기예탁)	_	1,448	1,448

제6장 유통기구 등

여백

1.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 <제 64 조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
- ◇ 시·도지사는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내의 도매업자의 거래 방법 개선, 시설개선, 이전대책 등의 계획을 시행할 수 있음
- ◇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내에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고 정비계획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유사도매시장 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여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 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장관이 정비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음

□ 개정사유

ㅇ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현행제도의 내용

□ 유사도매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유사시장은 도·소매가 혼재되어 분류 기준에 따라 유사시장의 개소수가 달라짐
- ㅇ 전국에 주요 유사시장은 약 45여개소
 - 서울(청량리, 영일, 조광), 부산(감전, 부전), 대구(서문, 칠성),인천(부평, 문화) 등

□ 시장 운영실태

0 운영

- 도매상들이 수십년간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며 번영회 등 상인 자조직을 구성 운영
- 도매상 개인별로 직접 산지 수집하거나 수탁하여 일정 수수료 공제후 정가판매하거나 경매
- 기타 선도금 지급물량 유치 등 다양한 거래형태
- o 시설물 이용
 - 대부분의 도매시장들은 자기소유점포에서 수탁받은 농산물을 판매
 - 주차장 등 각종 편익시설 부족

□ 문제점

- 농산물 도매거래의 45~50%를 점유하고 있으나 정확한 거래실적 파악이 곤란하여 종합적인 유통개선 대책수립이 어려움
- 공영도매시장 건설확대로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과거 위탁상의 폐해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도 불공정한 거래관습이 남아 있음
- ㅇ 공영도매시장에 비하여 규제나 간섭이 적어 제도권 상인 불만제기
- ㅇ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가 및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비용구조가 형성
- 쓰레기 유발 등으로 도심 환경저해 등 교통혼잡을 야기시켜 주민생활 불편 초래
- ㅇ 유통정보화, 물류표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유통정책의 대상이 되기에 부적합
- o 시·도지사의 정비계획이 수립되나 이에 따른 실질적 관리가 미흡
- ㅇ 공영도매시장으로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다. 유사도매시장의 정비방향

□ 유사시장에 대한 정책접근방식 변경

- 기존 유사시장중 유사시장 정비계획에 따라 시설 등 여건이 적합한 시 장은 개설자가 개설조치를 하고 적극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경
- 다만, 개설자에 대하여 거래정보 파악, 시설개선 등 필요한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공영도매시장과 일관된 관리를 하도록 의무 부여

□ 유사시장의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책 수립

-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시장의 유형, 거래규모, 거래형태 등을 조사
-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할 대상과 유사시장으로 관리할 시장으로 유형화하여 대응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역의 유사시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 2001년까지 14개 공영도매시장 추가건설로 유사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 으로 흡수
- ㅇ 공영도매시장 개장시 유사도매시장 흡수를 위한 개설자의 노력 강화
 - 유사시장 종사자의 능력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이나 중도매인 으로 흡수
 - 유사시장의 교통단속강화 및 과세행정 엄격 수행(국세청 협조)

□ 유사시장정비 지원 확대

- ㅇ 정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평가실시
- 정비계획의 현실적합성 및 타당성에 따라 차등지원을 실시하여적극적 대책수립 유도

<참고>

유사도매시장 현황

□ 시장점유율 전망(축산·양곡 제외)

o 2002년 총거래량 1,600만톤 중 도매시장 890만톤(55%), 유사도매 시장 390만톤(20%) 예상

(단위: 천톤, %)

	'97	'98	2000	2002
ㅇ 도매시장	5,785(47)	6,188(48)	7,167(50)	8,945(55%)
- 공 영	4,622	4,974	5,745	7,361
- 법 정	231	220	200	135
- 공판장	932	994	1,222	1,449
ㅇ 유사도매시장	5,732(46)	4,881(37)	4,133(29)	3,144(20)
ㅇ 직거래	867(7)	1,423(11)	2,869(21)	3,901(25)
- 물류센타	- (-)	204(2)	960(7)	1,602(10)
- 직 거 래	867(7)	1,219(9)	1,909(14)	2,299(15)
총 거래량	12,384(100)	12,936(100)	14,169(100)	15,990(100)

자료 : 유통개혁대책 세부실천계획

□ 유사도매시장 현황

시도별	개소수	명단
계	45	
서울	9	중부, 경동, 동서, 청량리, 쌍문, 인왕, 영일, 조광
부산,경남	4	감전, 부전, 울산역전, 마산창원화훼
대구,경북	6	서문, 칠성능금, 칠성청과, 팔달, 포항, 경주상동
인천,경기	4	부평, 문화, 세류, 종로
광주,전남	6	양동, 남광주, 목포, 여수, 순천영전, 순천북부
대전,충남	5	대전삼성, 역전, 중부, 오정동, 공주합동
충북	2	청주꽃다리, 충인동
전북	9	전주중앙, 남부, 모래내, 군산, 익산중앙, 남부, 신동, 동부, 남원용남

2. 소매유통의 지원

- <제 68 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

-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 중도매업·소매업, 직거래사업, 직판장, 소매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지원·육성

가. 소매유통시설 현황 및 전망

□ 현 황

- ㅇ 대형할인점 점포수
 - 국내유통업체 : 킴스클럽(15개), E마트(8개) 등 35개
 - 외국유통업체 : 월마트, 카르프, 코스코 등 3개업체
 - ㅇ 소매시장에서의 할인점 비중
 - 매출액: ('97) 3조 5천억원 (백화점 매출액의 25% 추정)
 - 전체 소매업에서의 비중 : ('96) 1% → (2000) 6%
 - o 할인점의 상품구성
 - 식품 : 53% (1차 상품 23, 가공식품 26, 패스트푸드 2, 기타식품 2)
 - 비식품 : 47%

□ 전 망

- o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이 활발
 - 기 진출 3개업체 이외에도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국내진출을 추진중
 - ㅇ 초기에는 산지 직구매를 통한 로컬소싱에 의존하여 직거래물량 확대
 - 생산자에게 표준화·규격화된 제품의 공급요구 경향심화
 - ㅇ 장기적으로는 외국 농산물 수입촉진을 가져올 것
 - 글로벌 소싱을 통해 고급품은 선진국에서 저가품은 동남아에서 구매

나. 소매유통시설 지원계획

□ 소매유통시설 지원

- o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원('99년)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점 및 직영점형 체인사업자에게 직거래자금 100억원 지원
- ㅇ 소비자단체 물류시설 지원 ('99, 15억원)
- o 도·소매 통합형 물류센타 확대건설 (2004년까지 30개소 건설)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령 개정

ㅇ 농수산물 직판장의 범위

□ 시행규칙 개정

ㅇ 농수산물 소매유통 지원대상 사업

3. 물류센터의 설치

- ---- <제 69 조 (물류센터의 설치)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지원
- ◇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류센터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권고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선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센타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 유통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개선사유

단순한 지원 주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면서 관리해 나 가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전방향

□ 목 적

- >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실제도움이 되는 형태의 신유통시설 건설 필요
- 특히 유통개선이 필요한 수도권에 모범적인 시설을 건설하여지방으로 전파하는 모델로 육성

□ 의 의

○ 생산자단체의 수집능력과 경영노하우를 집약할 수 있는 직거래형 도·소매 매장 설치

□ 사업내용

-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지방자치단체 소유) 생산자단체가 공동운영하는 도·소매 종합물류센타 건설
- 생산자단체가 공동 출자한 전문유통회사가 운영
- 전체 매장면적의 60% 이상을 집배송(도매)면적으로 확보하고 도매 확대에 대비하여 직판장을 가변식으로 설계
- o one-stop shopping 및 농산물 수요창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비농산물) 매장 운영
 - * 기타사항은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적용

□ 설치계획

- ㅇ '99.4 현재 : 4개소 운영, 9개소 건설추진중
- ㅇ '99년도 신규사업계획: 4개소
- ㅇ 2000년 이후 매년 4개소씩 12개소를 건설하여 30개소 건설예정
- □ 도·소매병행 신유통시설로 육성하여 대형할인점 및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보호
 - 유통단계단축 : (종전)5~6단계 →(물류센터)3~4단계

□ 농산물 및 도매거래 강화

- ㅇ 도매매장 면적을 전체 판매시설 대비 50%이상 확보(소매매장은 50%까지)
- ㅇ 소매매장 면적의 85%이상을 농산물 및 식품매장으로 사용

□ 신유통시스템 적용 및 물류개선

- ㅇ 시설물 관리운영을 일원화(거대단일 도매상체제)
- ㅇ 전자수발주 시스템, 포장출하, 파렛트출하, 하역개선 등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ㅇ 물류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통자회사

- --- <제 70 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 -
- ◇ 농림축수협 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물류센터, 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유통자회사(상법상의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
- ◇ 국가·지자체는 필요한 지원 가능

가. 제도개선 내용

□ 내용

 현재 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 유통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매시장공판장까지 확대(앞 제4장 "2. 유통자회사의 공판장 운영"참조)

□ 개정사유

-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회가 직접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 도록 하였으나 사업운영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높혀 변화하는 유통환경 에 적응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매시장내 공판장에 한하여 유통자회사에 의한 운영을 허용
- 다만, 도매시장내가 아닌 일반공판장은 그 자체로 도매시장의 역할을하고 있어 공공성확보가 중요하므로 유통자회사에 의한 운영을 불허

나. 현행제도의 내용

□ 물류센타 건설 및 유통자회사 운영현황

> 농협은 11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운영을 위하여4개의 유통자회사를 설립 운영 중

- 농협설립법인 : (주)농협유통(창동·양재동:자본금182억), (주)충북유통(청주:농협중앙회70%, 자본금(55억) 충북관내지역농협30%)
- 컨소시업 설립법인 : (주)경북유통(군위:자본금(56억), 농협중앙회57%, 군위군43)

(주)중부센타(천안:자본금(153억), 충남도(천안시) 49%, 농협중앙회21%, 축협중앙회29%, 배조합1%)

- ㅇ 축협 및 수협에서도 유통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주)축협유통: 자본금 48억(한우, 수입육전문점, 육가공사업 등 수행)
 - (주)수협유통: 자본금 20억(수산물 제품생산, 가공, 판매, 군납 등)

<참 고>

일본의 자회사 운영실태

<일본농협의 자회(협동회사) 관리>

- ㅇ 농협법을 기본으로 회사관리
- ㅇ 협동회사의 설립은 농림수산성의 사전 협의사항
- ㅇ 회사설립의 정관변경 등도 사전 협의사항

□ 회사명 : 주)월일월공중앙청과

- ㅇ 설립연월일: '82. 1월
- ㅇ 자 본 금: 143백만엔
- ㅇ 전농지분 : 100%
- ㅇ 업무기능
 - 청과류 및 가공품의 판매와 이에 부대하는 업무
- ㅇ 업무지역 : 수도권인 사이마타 동부지구, 치바북부, 이바라기남부

□ 회사명 : 주) 전농중일본센타

- ㅇ 서립연월일 : '91. 10월
- ㅇ 자 본 금 : 100백만엔
- ㅇ 전농지분 : 50%
- ㅇ 업무기능 : 농산물의 포장가공사업과 판매 및 그외 농산가공품의 판매
 - 및 이에부대하는 업무
- ㅇ 업무지역 : 나고야시, 아이치현

□ 회사명 : 삿뽀로 호구렌 청과(주)

- ㅇ 설립연월일: '76. 1월
- ㅇ 자 본 금 : 280백만엔
- ㅇ 북해도경제련 지분 : 93%(북해도시 7%)
- ㅇ 업무기능 : 청과, 과실류 도매
- ㅇ 업무지역 : 북해도 삿뽀로시

5. 규격화의 촉진 등

- · <제 71 조 (규격화의 촉진 등) > -
- ◇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 매인에 대하여 표준송품장의 사용 등 규격화 촉진
- ◇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ㅇ 현행 :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규격화촉진을 위해 필요한 명령가능
- ㅇ 개정: 규격화촉진의 핵심인 표준송품장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

□ 표준송품장 필요성

- 송품장, 판매원표 등 농산물 거래서식을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구축 및 표준규격 출하 유도로 물류비 절감
- ㅇ 표준송품장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나. 표준송품장 사용 현황 및 문제점

- □ 가락도매시장 송품장 사용율 : 80%수준
 - 송품장 양식이 법인, 지역마다 서로 달라 출하내역의 전산입력, 정산 등 업무처리 지연
- □ 법적으로 강제화 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거래 서식이 표준화되지 않아 농산물 출하정보 전산화 추진에 장애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 ㅇ 표준송품장 양식 제정
 - 송품장내용 : 품목, 품종, 포장 및 규격, 등급 및 수량, 차량번호, 출하지역. 출하자 인적사항 등
- o 표준송품장 사용방법 및 절차, 명령위반시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기준

6. 유통정보화(신설)

⁻<제 72 조 (유통정보화의 촉진) > ⁻

-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함
-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화사업을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교육·홍보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 내용

ㅇ 유통정보화 촉진 조항 신설

□ 신설 사유

 유통정보의 실시간 제공, 경매의 공정성 확보 등 유통정보화가 농산물유통 효율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황

- o 농림부는 유통정보 등 농업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업전문통계관실 아래 경영유통정보담당관실 등 2개관을 설치 운영중이며 (사)농림한국 수산정보센터를 설립('92년), 농업정보화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중
 - 농림수산 정보센터의 13개 분야 138종의 정보 중 유통/무역 정보는 24개 DB임
 - 농업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연간 1-2만명의 농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 ㅇ 가락시장 등 주요시장에서 전자경매 시범 실시 중

<사례>

- 가락시장 : 중앙, 한국, 서울청과, 농협공판장에서 일부품목에 대해 전광 판 표출식 경매실시 중(중앙청과는 무선응찰기식 사용)
- 대전시장 : 대전중앙청과에서 무선응찰기 사용 중
- 양재동 화훼공판장, 가락동 축협공판장도 전자식경매 실시 중

□ 현재 도매시장에서 생산하는 정보내용(가락시장)

- 정보내용: 주요품목의 거래가격 및 반입량, 가격변동추이, 해외농수산
 관련 정보
- ㅇ 주기 : 일일시황, 주간 가격동향, 가격월보, 가격연보
- 전파수단 : PC통신(3개소), 간행물, FAX, ARS(12회선), TV(6개사)
 및 라디오(18개사)

□ 농업·농촌정보화 기반확충

- o 농림수산정보망(AFFIS)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편의 제고
 - 회원확보: '97말 현재 36,871명
 - 『농민동호회』등 7개 동호회 운영(회원 3,928명)
- o 농업과려기관·단체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연결
 - 농진청, 식개연, 농조연, 임협등 4개 기관(총 13개 기관)
- ㅇ 농림종합홈페이지인 『농림한마당』개설로 대농업인서비스 확대
 - 농림관련 정부기관・연구소・단체 및 대학 등을 연계 운영('97년말 68개)
- o 농업관련정보 DB종합화로 농업정보의 활성화와 이용편의 제고
 - 농업정책·유통·기술정보등 농업관련 DB 40종 개발(누계 138종)
 - 정보제공자 : 46개 확보(누계 108개)
- 농가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S/W개발
 - 낙농・양돈분야등 2종(누계 14종)
 - 2,828농가에 보급(총 6,318농가)

□ 농업·농촌정보화 응용사업

- o 전국의 농수산물 산지·도매·소비자가격 매일 수집·제공
 - 농림수산정보망, 인터넷등을 통하여 전파(86개 품목)
- ㅇ 농수산물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확충('97:13개)
- o 시설채소 생산·유통정보 제공을 위한 영농지원정보시스템 운영
 - 오이・풋고추・참외주산단지 작목반 참여('97:9개 시군, 159개)
- ㅇ 수출입동향, 무역통계정보등을 제공하는 무역정보망 운영
 - 수출입통계, 관세율, 수출유망 100대 품목등 DB 구축('97:8종)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ttp://www.kati.net)

- o 동·식물검역정보화로 신속한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개선
 - 검역소 소속기관간 EDI시스템 운영
- o 영농기술지도·상담을 위한 원격영농기술지도시스템 운영
 - 농진청·연구기관·지도소 연계 운영('97:50회 2,232명)
- ㅇ 가축개량, 가축질병 방제 등 축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 축산농가, 축산관련기관 등에 정보제공 및 가축질병 상담 활용
- o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농업진흥지역안(밖) 및 농어촌용수개발관리 업무지원

□ 농업행정 정보화 사업

- o 농림부 근거리통신망(LAN) 기능 확충
 - 그룹웨어(Workflow)를 도입, 전자우편·게시판등
- o 기관간 LAN to LAN 연결(농림부, 농검, 검역원, 식검, 교육원)
 - 정보공동활용으로 행정업무효율 제고
- o 정보통신망을 이용, 농업인의 진정·건의·질의등 민원처리
 - 농림수산정보망(AFFIS)에 『농림부 민원마당』운영
 - 농림부 홈페이지에 『대화마당』개설·운영

□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ㅇ 농촌지역의 정보통신환경 낙후로 정보이용 저조
 - 통신회선 부족·노후화, 낮은 PC보급율(농가 18.7%) 등
 - PC 보유농가도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 정보는 접근 곤란
- ㅇ 관련기관의 농업정보화 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노력 미흡
 - 정보공동 활용 및 통합망 체계등
- ㅇ 사용자 위주의 정보공급체계 미비
 - 품목별로 가공된 종합정보와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 부족
 - 기개발된 낙농·양돈·원예등 경영관리 S/W의 사후관리 미흡
- ㅇ 농업인의 정보통신 활용능력 제고 노력 미흡
 - 정보통신 활용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선입견으로 이용 기피
- ㅇ 농업인 및 전문법인경영체에 대한 영농분야별 정보화 전문교육 미흡

다. 발전방향

- ㅇ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농촌통신환경 개선
- o 영농의사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 개발·보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ㅇ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한 농업인 정보화 마인드 제고
 - 영농분야별 정보화 전문과정의 신설 및 실습위주 교육 실시
- ㅇ 농업관련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
- ㅇ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농업정보화 응용사업 개발

7. 도매시장 운영·관리 평가

- ----<제 77 조 (평가실시) >-
- ◇ 개설자는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실시→농림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평가 실시
- ◇ 개설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 가능
- ◇ 농림부/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 시정명령이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 가능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ㅇ 시장도매인도 평가대상에 포함
- 개설자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 치를 직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개정사유

- ㅇ 시장도매인(도매상)제도 도입에 따라 평가대상 확대
- o 개설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 조정·차등지원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여 평가제도의 효율성 제고

나. 현행제도의 내용

□ 현황

- o 매년 공영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공정거래에 대하여 평가실시
-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도매시장 운영개선노력 유도
- 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정보를 도매시장 운영정책에 반영

□ 대상자별 주요평가사항

- o 개설자 : 정부시책추진, 공정거래, 도매시장기능 활성화, 도매시장 시설 및 환경개선
- o 도매시장법인 : 종합경영관리, 산지개발 및 집하노력, 공정거래 노력, 업무수행능력, 경영합리화
- ㅇ 중도매인 : 분산기능, 공정거래(개설자가 자체평가후 업무에 반영)

□ 추진상황(청과부류)

구분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96년도	13개소	23개소	10개소
'97년도	13	25	13
'98년도	15	30	16

□ 평가결과 조치

- ㅇ 중앙평가자문위원회(현행) 심의를 거쳐 중앙평가 결과확정
- ㅇ 우수자에 대해서는 지원강화, 부진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개선유도
 -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 출하촉진자금 지원 우대, 표창
 -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 : 운영개선지도 실시, 개선조치계획 수립 이행

다.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ㅇ 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참고>

미국의 유통종사자 신용평가제 운영사례

□ 평가기관의 개요

o 회사명 : PRODUCE REPORTER CO.

o 위치: 845 E. Geneva Road, Carol Stream,IL 60188-3520

ㅇ 설립년도: 1899년

0 조직

- 임직원수 : 26명 (임원 4명,직원 22명)

- 부서별 업무

• 등급평가부 : 평가,재무분석 및 거래실적관리

• 거래지원부 : 자문 및 조정서비스,수금대행서비스

• 국제영업부 : 국제영업관리

• 지역사무소 : 지역업무관리

• 정보지원센타 : 회원의 서비스제공

• 중재위원회 : 회원의 거래분쟁 중재역할수행

□ 사업내용

- 1901년 이래 신선 농산물유통업종사자(생산자,구매자,중개업자 등) 및 면세상품 취급 운송서비스사업자의 상거래시 필요한 신용도 및 유통정보를 다양한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분석한 후, 이를 객관적인 평가방법과 표시로 기호화하여 거래편람(BLUE BOOK) 및 보조자료 등에 수록발간하여 회원(거래회원, 운송회원)에게 유상대여 및 회원에 대한 각종 거래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거래관련 자료발간 : Blue Book, Weekly Credit Sheets 등 11종
 - 거래자 서비스제공 : 사업의견 및 조정서비스, 수금대행서비스, 중재서비스

□ 거래편람(Blue Book)의 신용평가체계

- ㅇ 평가대상
 - 미국 부패농산물법(PACA)의 허가가 요구되는 신선농산물 취급유통 종사자와 면세물품취급 운송사업자로써,사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생산자, 하주, 판매브로커, 구매브로커, 위탁상, 도매상, 소매상, 가공업자, 포장업자, 저장업자, 식품서비스업자, 수출업자, 수입업자, 운송업자 등

ㅇ 신용평가항목

- 일반사업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용 신용평가항목과, 특수한 상황이나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자와 타사업자와 제휴관 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별도의 추가적용 평가항목이 있음.
 - · 일반 신용평가항목 : 사업체의 구조, 취급량, 취급상품, 도덕적책임도, 재무적책임도, 지불책임도 등 6개 항목
 - · 추가 신용평가항목 : 법적지위 및 조직의 개편정도, 지불이행도,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 거래경험정도, 평가관리, 허가 취소 및 경영상태 등 5개부문

ㅇ 평가방법 및 기준

- 업체의 구조 : 평가대상사업자의 영업형태 구성(예 : 수집상,반출상, 중개상 등)의 상대적 중요도로 평가
- 취급량 : 평가대상사업자의 연간 취급 거래물량의 규모로 평가
- 취급상품 : 평가대상사업자의 취급상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로 평가
 - 도덕적책임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성실성, 능력, 지불 등 도덕성에 대해 평가기관의 정기적인 거래경험조사(Trade Experience Survey)를 통해 "등급평균"(조사보고서의 평균)방법으로 평가

- 재무책임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연말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에 의거 유동성 가치평가액(Estimated liquidation values)을 기준으로 평가
- 지불책임도 : 평가대상사업자의 지불평균일수(송장발부일로부터 판매자의 수표수취일)를 기준하여 평가
- 지불책임도 적용예외 사업자
- 취급량의 상당 부분을 중개에 의해 처리하는 중개업자
- 공급을 조건으로 하는 자
- ㅇ 신용평가항목 표시방법
 - 사업체의 구조 : 사업자의 영업분야를 상대적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 분류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함.
 - 거래물량 : 연간 취급물량을 트럭단위(44,000~45,000파운드/대)를 기준으로하여 숫자로 표시함.
 - 취급상품 : 취급상품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상품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함.
 - 도덕적책임도 : 도덕적책임도를 나타내는 기호 "X"를 이용하여 4단계로 구분표시
 - 재무책임도: 재무책임도는 신용가치(유동성가치평가액)로 표시함.
 - ·신용가치를 나타내는 표시기호 "M"을 사용하여 5단계 구분표시
 - 지불책임도: 지불책임도는 지불등급을 나타내는 기호 "AA, A, AB, B 등" 8등급으로 표시함.
- ㅇ 신용평가의 등급 및 명부갱신
 - 거래편람의 신용평가등급갱신
 - 현 거래처의 거래경험조사결과 반영
 - 정기적(최소한 매년마다)으로 제출된 재무제표 분석결과 반영
- 거래편람의 명부갱신
 - 연 2회 거래편람 명부갱신을 위한 기회제공(중간에 명부 부본 "Listing Reports"의 발행)
 - 지역 담당자의 방문시 명부갱신 기회제공

ㅇ 회원의 관리

- 회원의 유형
- · 거래회원과 운송회원으로 구분됨(제조(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거래회원, 면세상품을 취급하는 운송사업자인 운송회원)

- 회원 자격조건

- · 연간 회비(\$ 400)와 거래편람대여료(계약기간에 따라 \$435 ~ \$485)을 납부한 자
- · 거래경험조사(Trading Experience Surveys)에 의한 도덕적책임도의 등급 평균 3.30Xs이상인 자
- 다른 거래회원과의 거래 분쟁발생시 당사자간 화해곤란 경우 신용 평가 회사에 의한 중재에 동의한 자
- 회원의 특전
- 거래편람 등 각종 발간자료 우송
- 사업 의견 및 조정,중재 등 서비스제공
- · 회원장식판(Member Plaques) 및 거래편람문장(Blue Book Seals) 사용권 부여

8. 시장제도개선 심의회 및 시장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신설)

- ─ <제 78 조 (심의회등의 설치) > ──
- ◇ 개설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 심의회 설치
 - o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
- ◇ 거래제도, 공정거래질서확립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등의 심의

가. 제도개선 내용

□ 개정내용 : 신설

□ 도입취지

- 도매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참여 강화
 - 중앙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두어 정책자문 및 주요 시장문제 협의
 - 시장별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에 생산자·소비자 단체 참여를 확대하여 견제·감독 강화

나. 제도운영 방안

□ 심의회 및 위원회의 기능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 ㅇ 심의내용
 -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평가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종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농림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ㅇ 심의내용
 - 도매시장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일본의 도매시장심의회 운영사례

□ 도매시장심의회

- ㅇ 설치 : 농림수산성에 도매시장심의회를 둠
- 임무 : 도매시장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외에 농림수산성장
 관의 자문에 응하고 동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함
 - 구성 : 위원은 10명이내이며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농림수 산성장관이 임명하고 비상근

□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도도부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도도부현 도매시장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도매시장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도도부현 도매시장 심의회를 둠

라. 하위법령 개정검토

□ 시행규칙 개정

○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운영요령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 유통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1. 도매시장 유통개선 및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2.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 3. 기타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3조(구성)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간사1인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간사는 농산처장이 된다.
 -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이사, 업무이사로 한다.
- ④위촉직 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제 4 조(의장) ①의장은 회의를 주재,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하고 위촉직은 1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소집한다.
- 제7 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여 백

제7장 벌칙

여 백

1. 농안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매시장법인>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지 않고 도 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 ·	2년이하, 2천만원이하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이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 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3소	1년이하, 1천만원이하		
3.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이 당해 도매시장에서 수집상업무를 행하는 경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4.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35조	2년이하, 2천만원이하		
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에 위반 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42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6.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송품장 사용을 명하는 경우 도 매시장법인이 표준송품장을 사용하 지 않은 물품을 거래한 경우			500만원 이하	
8.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시 장관리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 여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제79조		100만원 이하	
9.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제83조 제1항			1억원이하
10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조건을 위반하 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82조 제2항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중도매인>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 중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 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25조 또는 46조	2년이하, 2천만원이하		
2. 중도매인이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 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46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3. 중도매인이 당해 도매시장에서 수 집상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29조 또는 제46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
4. 중도매인이 상장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상장예외 품목은 제외)	1101	1년이하, 1천만원이하		
5.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에 위반 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42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6.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송품장 사용을 명하는 경우 중 도매인이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거래한 경우			500만원 이하	
7.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시장 관리자가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업무집 행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를 하 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79조	·	100만원 이하	
8.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1천만원이하
9. 중도매인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거래실 적 미달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 에 해당되는 경우	제82조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경매사>

ſ		위반사항	-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	 L. 경매사	자격기준에	위반하여	임면	-11077Z	1년이하		
	한 경우				제27조	1천만원이하		

<수집상>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 수집상 등록을 하지 않고 수집상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29조 또는 제46조	2년이하, 2천만원이하		
2. 수집상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 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하는 경우	.,	1년이하, 1천만원이하		
3. 미등록 수집상이 수집상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 개설자의 도매시장 또 는 도매시장공판장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제29조 또는		100만원 이하	
4.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시 장관리자가 수집상에 대하여 농수 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79조 제2항		100만원 이하	·
5.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제83조			1천만원이하
6. 수집상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 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에 위반하는 경우	│ 제82소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시장도매인>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지 않고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	제36조	2년이하, 2천만원이하		
2.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에 위반 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42조	1년이하, 1천만원이하		
3.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표준송품장 사용을 명하는 경우 시 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을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거래한 경우			500만원 이하	
4.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시 장관리자가 도매인에 대하여 농수 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2항		100만원 이하	,
5.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제83조	·	,	1억원이하
6. 시장도매인이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82조 제2항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개설자, 기타 불특정 관련인>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		500만원	,,,,,,,,,,,,,,,,,,,,,,,,,,,,,,,,,,,,,,,
	발한 유통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항		이하	
2.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	제15조	2년이하,		
	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제3항	1천만원 이하		
3.	도매시장구역이나 공판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구역안에	_			
	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		2년이하,		
	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법2	_	2천만원		
	조제2호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제47조	이하		
	도매거래를 목적으로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경우	-			
1	개설자가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		1년이하,		
4	에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제42조	1천만원이하		-
5.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	제43조	2년이하,		
	판장을 개설하는 경우	△ 403±	2천만원이하		
6.	물류센타를 운영하는자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차치단체의	제69조	1년이하,		
	운영방법 및 출하서비스의 개선 등의	,,00	1천만원이하		
	조치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7.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시				
	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100만원	_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	제1항		이하	
	하는 경우				
8.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하는 자에	│ 제7/4소		500만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에 이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2항		이하	
9.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E00 nr of	
	대하여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함께 되는 경우 이이 보고를 하고			500만원 이하	
	고하게 하는 경우 이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1항			
<u> </u>	여기의 의미조교를 이다 경구				

위반사항	관련법규	징역또는벌금	과태료	기타처분
10. 공무원이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 대를 검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80조		500만원 이하	
1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도매시장 개설자 가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12.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1억원이하
13. 도매시장의 개설자(민영도매시장 개설자 포함)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 반하는 경우	*			개설허가 취소, 시설폐쇄 등 조치
14.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하여 말하는 명령이 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거래실적 미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82조 제2항			업무정지, 지정 또는 승인취소

제8장 규제개혁관련 폐지내용

여백

1.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제3조)

◇ 이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이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당초취지

o 이 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명칭을 남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공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규정

□ 폐지사유

- 각 법률에 포함된 「유사명칭 사용금지」조항은 전부 삭제한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 방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 1항 6호 규정에 의하여 유사명칭사용 방지가 가능하다는 입장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의 사용을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재 가능

2. 장부비치(현행 제20조)

◇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장하여야 함

□ 당초취지

- 상법등에서 정하는 장부외에 도매시장법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부로서 농림부령/해수부령에 정하도록 하였음
 - 현재 시행규칙 제9조 : 현금출납장부,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재산대장, 비품대장, 일별, 품목별, 규격별 판매원표를 비치하여야 함

□ 폐지사유

- o 상법, 소득세법 등에서 거래의 투명성 및 과세행정의 편의를 확보하 기 위한 장부기장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정하고 있고,
- 기장의 전산화 및 세무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하여 굳이 장부비 치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폐지하게 됨

□ 예상되는 문제점

- 현행 농안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는 대부분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별도 규정이 필요없음
- 상법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완대책

- 장부비치의무는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 거래관계자의 거래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감독권에 근거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비치하도록 할 수 있음
 - 동조항 삭제시에도 개설자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음(개정안 제79조)

3. 보증금 납부(현행 제21조)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설자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였음

□ 현황(보증금 수준)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20/100이상(시행규칙 10조)
- '98년 가락시장(청과)의 경우 130-226백만원

□ 폐지사유

- 보증금 납부는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신용도와 관련한 문제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제할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이 규정의 폐지로 개설자의 책임하에 개설자가 입주상인을 결정함에 있어 보증금 납부외에 다양한 방법의 안전성을 담보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시장관리 및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

□ 예상되는 문제점

o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자 대금정산지연 등 출하자에게 피해 야기 가능

□ 보완대책

-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가능(개정안 81조②)
 - 개설자는 평가를 통하여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차등지원 가능 (개정안 77조)
 - 업무규정으로 정하거나 지정신청공고시 구비조건의 일환으로 보증금 납부 요구

4. 폐업허가 등(현행 제22조)

◇ 도매시장법인이 폐업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개설자의 허가를 받 도록 하고 휴업시에도 10일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당초취지

거래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거래의 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폐지사유

- 도매시장법인이 영업부실 또는 자유의사에 따라 폐업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거래당사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후속 법인의 지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 이러한 행정목적 및 거래의 안정성 확보는 개설자가 상시 행하는 관리행위를 충실하게 하는 경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의 것 이며, 자유의사로 폐업하지 못하고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되어 폐지함
- * "유통산업발전법"(15조)에는 대규모점포(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가 1년이상 계속휴업시 지정취소 규정은 두고 있으나 폐업시의 허가조항은 없음

□ 예상되는 문제점

사전예고없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거래의 안정성이 없어 거래당사자의 불편 초래 가능성

□ 보완대책

- 휴업 및 폐업시 절차에 관하여는 개설자가 지역실정에 따라 업무 규정으로 정하여 출하자와 상인의 거래의 예측성을 유지할 수 있고,
-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업무처리개선,
 시장질서유지 등을 명할 수 있음(개정안 제81조②)

5. 매매참가인의 등록(현행 제24조)

◇ 중도메인외에 도메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당초취지

 경매의 활성화, 실질적인 직거래의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하여 매참 인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규모이상의 대량 수요자의 참 가를 위하여 매참인 등록제도를 두었음

<현황>

(단위:명)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계	542	162	61	95	224
가공업자	39	4	_	35	
소매업자	485	144	60	57	224
소매업자협동조합	13	9	1	3	-
소비자단체	5	5	_		

- 주)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 공판장 관련 실적임
- 가락시장의 경우('97. 12) 총130명(청과108, 수산9, 축산13)이 매참인으로 등록하였으나 '97년 매참인 구입액은 810억원으로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4.5% 취급
 - * 일본의 경우(오다시장)
 - · 청과 : 도매시장5개사, 중도매인 301인, 매참인 2,025명
 - 수산 : 도매법인2개사, 중도매인 100인, 매참인 37인
 - •화훼 : 도매법인2개사, 중도업자 20인, 매참인 1,691인

□ 폐지사유

- 경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매참가인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현재는 매매참가인 제도의 설치취지에 비하여 수가 적고, 경매 에 참여하는 실적도 낮은 형편임)
 - 등록제는 폐지하되 실수요자이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에 찾아와 소정의 참가절차만 통하면 당일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매매참가인 제도 활성화에 바람직하다고 판단

□ 예상되는 문제점

등록제가 없어도 경매참여절차만 간소화하여 운영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봄

6.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현행 제25조)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거나 매수를 중개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당초취지

- 도매시장법인과 거래를 원활히 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자를 명시
 - * 보증금 수준(현 시행규칙 제14조): 100만원 이상(가락시장의 경우 중도매인 1인당 평균 28백만원)

□ 폐지사유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률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상호거래약정 등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음
- 현행 규정상 최저보증금수준은 거래규모에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며 실제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의 상호 신용도에 따라 거래규모 가 결정되는 상황임(법정 최저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은 힘등)
- * 일본 도매시장법에도 중도매인 및 매참인의 보증금 납부제도 없음

□ 예상되는 문제점

 법률에 규정하지 않아도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위험담보를 위한 보증금납부는 가능하므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7. 경매사의 불공정행위 및 겸직금지(현행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 ◇ 개설자는 경매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임명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 경매사는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특정인의 이익에 편중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아니 하여야 함

□ 당초취지

경매사의 공공성측면 강조 및 공정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설치 한 규정임

<주요도매시장의 경매사 현황>

	서울가락동	수원시	대전오정동	광주각하동	대구북부	부산엄궁동
경매사수	245	16	33	25	36	49
법인당경매시수	40	5	11	6	6	16

□ 폐지사유

- 경매사의 불공정행위금지는 형법 351조(경매, 입찰의 방해) 규정에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자에 대한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으므로 관련 형법조항으로 갈음
- 개설자의 허가없이 겸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신분으로 사실상 타 업무에 종사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 판단되어 삭제하였음
- 다만,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내에서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수집상 또는 그 임직원과는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개정안 제27조 제2항 4호)

□ 예상되는 문제점

- ㅇ 경매사의 불공정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조치 가능
- o 겸직금지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겸업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봄

8.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상(현행 제30조의3)

◇ 도매시장법인은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업무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

□ 당초취지

- 공급과잉의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 게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출하자 보호를 위하여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출하자에게 지급
-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수수료 수입금의 3/1,000이상(최저1,000만원이상)으로 하고 당일, 동일시간대, 동일품목, 동일등급 대비 20%이상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경우에 적용

<운영실적(가락시장)>

(단위:백만원)

법인명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적립액	45	50	51	100	23
보상액	10	14	116	44	17

주) 적립액은 '97년말 기준, 보상액은 '97년간 실적(공판장은 자체규정에 의해 손실보전제도 시행)

□ 폐지사유

- 경매에 의한 이익과 손실은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의 문제이며, 출하자는 경매가격의 등락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이익과 손실이 균분화됨
- 현재에도 도매시장법인들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동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임

□ 전망

 도매시장법인과 경쟁적인 유통주체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을 폐지하더라도 고객서비스 차원의 손실보전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

9. 입하수량 등의 게시(현행 제31조)

◇ 도매시장법인은 주요품목의 입하수량 및 거래가격을 보기 쉬운 곳에 매일 게시하여야 함

□ 당초취지

 주요품목의 입하수량 및 거래가격 등을 도매시장법인이 매일 게시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도모

□ 폐지사유

- 정보화의 진전과 도매시장법인을 둘러싼 경쟁적인 유통주체의 등장으로 법에 의한 강제규정없이도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하여 고객서비스차원에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추세이므로 규제가 불필요
- 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 등 유통정보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실시간 정보유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게시의무는 구시대적인 유물이 될 것임
- □ 예상되는 문제점 : 없음

10. 거래금지 및 제한(현행 제36조)

◇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매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음

□ 당초취지

- 도매시장의 후적지 정비, 신설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개설구역 내에서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유통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함(위반자는 2 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현재 대구시 전지역('99.2.1~2000.12.31), 춘천시('98.9.6~'99.9.5) 에 거래제한고시 중

□ 폐지사유

- 경찰력을 통한 단속은 일시적으로 효과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이 어려워 거래제한의 법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됨
- 유사도매시장의 제도권 흡수, 민간시장의 개설 등으로 거래제한고 시제도가 무의미해짐
- 지역내 도·소매상과 마찰 및 민원유발 등 기존 상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

□ 예상문제점

ㅇ 거래제한고시 폐지로 신설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보완대책

거래제한고시 등 강제적수단은 불가능하므로 도매시장 입주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필요

<사례: 청량리지역 거래제한고시>

- 배경: 구리도매시장('97.6.9 개장)의 초기활성화를 위해 청량리상권 정리 필요
- 내용: '97.9.1~'98.8.31간 청량리 동부청과일대(44,600평)에 무, 알타리,
 배추 등 10개품목 거래제한
- 추진경과: '97.9.1~10.31까지 관계기관합동으로 578명의 단속인원과 경찰병력 3천여명을 동원 불법반입차량 적발 등을 단속 하였으나 구리도매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없었음
- 결과 : 거래제한과 동시에 서울동부청과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취소 하였으나 동부청과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시가 패소(대법원 '98.8.21)함으로써 거래제한의 효과를 거둘수 없게 됨

- 11.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 있는 농수산물(비규격품)의 거래금 지·제한(현행 제58조제2항)
- ◇ 농림부/해수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규격화 촉진을 위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

□ 당초취지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농수산물의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함

□ 폐지사유

- 규격화는 도매유통단계에서의 규제보다는 산지포장 및 출하여건의
 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실제로 시장에서 비규격품에 대해 거래를 금지할 경우 과도한 민 원발생 및 시장기능저하라는 부작용이 우려되어 사문화되고 있음
- 규제보다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하역비 면제 등 우대조치 실시로 규 격화를 유도할 방침

<참고 1>

거래제한고시 운영현황

□ 목 적

- ㅇ 거래질서의 확립과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는 도매시장 또는 공 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 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

□ 연 혁

- ㅇ '51 : 도매시장 밖에서의 모든 도매행위 금지(중앙도매시장법)
- '73: 도매시장 밖에서의 모든 도매행위 금지 단, 농,수협의 판매사업 예외(농수산물도매시장법)
- '76: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제한 고시를 통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외에서의 거래금지(농안법)
- '93: 거래제한 고시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것과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등은 예외인정
- o '98 : 개정농안법에서 거래제한고시 근거조항 폐지

□ 그동안 실시방법

- o 시·도지사가 품목·지역·기간 및 적용제외 대상물품 등을 정하여 고시
- 부류별로 10개품목 이내, 고시기간을 1년으로 행정지도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ㅇ 적용제외물품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타지역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물품 등은 예외

□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 건설로 후적지 정비가 필요한 경우 거래제한 지역을 고 시하여 초기 상권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내 도·소매상과 마찰 및 민원유발
- 일부 지역에서는 후적지 정리조치 미흡으로 이중영업의 문제가 심하고 거래활성화 지연
- ㅇ 거래제한고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실효성 문제도 제기

<농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고시 현황>

('99.2.15 현재)

시기기기	게 치 기 가	고시지역	고시품목	비고
실시기관	제한기간	エハハヿ	上八百万	
부산시	2년('98. 4. 1~	부산중구, 서구, 동구,	<총 24 종>	부산시
	'99. 3. 31)	영도구, 사하구, 북구,	ㅇ사과, 배 등 과실류 8종	엄궁동
:		사상구 전역	ㅇ무, 배추 등 채소류 16종	도매시장
대구시	1년 11개월	대구광역시 전지역	<총 41 종>	대구시
41 11 	('99. 2. 1~	911 8 971 271 9	`	도매시장
	2000. 12. 31)		○ 무, 배추 등 채소류 18종	
	2000: 12: 01)		○ 기, 배구 · 세도	
			0 11 6 9, 31 /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대전시	1년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총 39 종>	대전시
	('98. 5. 1~	일원	ㅇ사과, 배 등 과실류 9종	도매시장
	'99. 4. 30)		ㅇ무, 배추 등 채소류 10종	
			ㅇ딸기, 수박등 기타 16종	
			ㅇ고등어,김등 수산물16종	
강원도	1년	춘천시 전지역	<총 25 종>	춘천시
	('98. 9. 6~		ㅇ사과, 배 등 과실류 8종	도매시장
	(99. 9. 5)		ㅇ무, 배추 등 채소류 15종	
			ㅇ감자,고구마 2종	
		·		

12. 원산지표시 명령(현행 제58조제3항)

◇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또는 국산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당초취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명할 수 있게 함

□ 폐지사유

 동일한 취지의 명령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할 수 있고, 새로 제정 한「농수산물품질관리 법」제15조 내지 제18조에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자세하고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는 조항이므로 폐지

13. 출하물품의 안전성 확보(현행 제58조의2)

-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을 출하하여서는 안됨
- ◇ 개설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당초취지

○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의 출하 금지

□ 폐지사유

○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새로 제정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 내지 제 1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안법의 중복규정 삭제

참고자료

여 백

1. 김병태의원 제출안 검토

가. 제출경위 및 개정취지

□ 그간 경위

- '96. 9월부터 김병태의원(국민회의, 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이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의 건의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농안법 개정 추진
 - 국회 법제예산실에 의뢰하여 개정안 작성(10월 18일)
- 그러나 의원 서명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의 반대의견을 수용,
 국회제출은 않고 개정추진 중단('96.10월말)
 - * 당시 국회 법제예산실에서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제시
- ㅇ '97 대선 직전 김병태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97.11.28)
- ⇒ 상임위에서 계속 계류상태에 있었으며 정부안과 같이 논의 예정

□ 주요골자

-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에게도 수탁판매권을 허용함과 동시에 도매시장법인과 동등한 의무를 부여함(안 제28조)
- 1차 경매품 수입품 기가격형성품에 대한 재경매를 금지함으로
 써 농수산물의 소비자 가격상승을 완화함(안 제29조의 2)
-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창출해 내는 가격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경매사를 특정 영리법인의 직원이 아닌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속으로 하여 공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 o 중도매인단체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도매업이 사회공익적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 2)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거나 매수를 중개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단위로 정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내지 제3항)

나. 전문위원 지적사항 및 검토의견

토 지 적 사 항 검 의 겸 <중도매인 수탁허용> ㅇ 중도매인에게 수탁을 ㅇ정부의 개정안에서는 도매상제도를 도입하고 있 허용하는 것보다는 으므로 중도매인에게 수탁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음 상장예외품목 확대 ㅇ법개정 이후에도 도매상제가 도입되지 않는 시장에 등 경매제의 보완에 대해서는 시장별 현실을 감안 상장예외품목 확대 주력하며, 도매상 등 개선방안 적극 검토 제도의 시범도입 및 점진적 확대 방안 검토 필요 <재경매방지> ○1차 경매품, 수입품, ○현행법상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는 경매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기가격형성품에 대한 경매금지를 획일적 ㅇ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도매상제가 도입되고. 타도매 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된 물품을 도매시장법인이 재경매가 이루어지는 직접 상장하는 경우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근본적요인이 해결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확정되면 제기된 문제 해결 될 수 있도록 지방

시장활성화 등 유통 이 경우에도 반입된 물품의 성격에 따라 강제적으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체계 개선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함

거래방법을 지정할 수는 없으며 출하자가 원하는

지적사항

검 토 의 겪

<경매사의 개설자 소속>

측면은 있으나 도매 시장법인의 서비스 저하 등 단점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

- ○경매사 공정성 제고 ○경매사는 수탁받은 물건을 가급적 높은 값에 판매 해 주는 판매사이며, 수탁판매 회사인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분리 될 수 없음
 - 분리할 경우 판매기능이 제3자인 공무원에 의해 좌우되고 자신의 영업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존립이 어려워 질 것임
 - ㅇ 출하자 입장에서도 경매사는 현행 도매시장법인 소속이 유리함
 - 공무원 신분의 경매사는 출하자의 물건 전량판매내 고가낙찰을 위해 특별히 노력할 유인이 없음
 - o 외국에서도 도매시장의 경매담당자가 수탁주체와 분리된 나라는 없음

<정산회사 설립>

- 중도매인의 실질적 법인소속현상을 해소 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정산회사운영을 위한 보완책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 ㅇ정산회사의 설립은 ㅇ 현행법상으로도 정산회사 설립에 제약이 없으며, 중 도매인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므로 법에 별도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음
 - 설립여부방법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상호협의에 의해 시장별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중도매?\<u>단체설립근</u>거>

ㅇ중도매인단체 설립 규정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적으며 굳이 농안법에 명시 해야 할 만큼의 강한 공공성을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ㅇ현재 중도매인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획득
- o설립규정을 신설한다고 하여 중도매인연합회에 특별한 지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도매시장법인협회 규정도 삭제했음

농안법 개정안 내용요약 대비표

항 목	김병태의원안	정 부 안	비고
수탁판매원칙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에게도 수탁 판매권을 허용(안 제28조) - 도매시장법인과 동 등한 의무 부여		<취지반영>
매매방법	○1차경매품, 수입품, 가격형성품에 대한 재경매 금지(안 제29 조의2)	○다른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부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가 또는 수의매매 가능 (안 제32조)	<수용>
경매사의 임면	○ 경매시를 도매시장개설자 소속으로 하여 공익성 확보(안 제26조제1항)	이 임면하도록 하되	<불수용>

항 목	김병태의원안	정 부 안	비고
중도매인 단체 설립	○중도매인단체의 설립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성 부여(안 제38조의2)	○ 중도매인단체 설립근거 없음 - 기존의 도매시장법인 협회 설립규정(현행 제38조) 및 소매업자 협동조합 규정(현행 제57조의2)도 삭제하여 민법상 일반규정으로 설립가능토록 규제 완화	<불수용>
대금결제	○정산회사 설립근거 마련(안 제25조) - 도매시장 단위로 정산 회사 설립할 수 있 도록 함	○ 정산제도의 사용 의무화 (안 제41조) - 별도의 정산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대금결제를 부령으로 정하는 정산방법을 사용하여 하도록 의무화	<수용>

국가별 도매시장 비교

	한 국	일 본	프 랑 스	미 국
시장수	○ 공영도매시장(18) 일반법정시장(32)	○ 중앙도메시장(87) 지방시장(1,500)	○국영시장(17) * 생산자시장(29)	○주·시정부(23) ○협동조합 등(21)
개설자	o지방정부	o 지방정부	o지방정부	○지방정부
투자주체	o 지방정부 - 국고보조 70%	o 지방정부 - 국고보조25~33%	ㅇ정부 - 건설후 민간임대	ㅇ정부, 민간
시장관리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사, 민간	ㅇ지방정부, 민간	o국영시장공사	○도매상조합, 민간회사
운 영	○도매시장법인 - 수탁판매 ○중도매인 - 구입판매	○지정도매법인 - 수탁판매 ○중도매인 - 구입판매	○도매상 - 수탁·매취 판매	○도매상 - 수탁·메취 판매
거래방식	ㅇ경매·입찰 원칙 - 예외로 정가 및 수의매매 허용	○경매·입찰 원칙 - 예외로 상대매매 허용(활성화됨)	○상대 및 수의매매	○상대 및 수의매매
특 징	○정부투자의 공영 도매시장 건설확대 ○현물에 의한 경매 ○유사도매시장의 도매유통 상존	○중앙도매시장 위주 시설현대화 -지방도매시장정비 ○견본 경매	○생산자직판장 설치 ○생산자의 출하처 선택 범위가 넓음 ○정부의 통제권이 강하게 작용	○도매시장의 소유 형태가 다양함 ○농가가 생산물을 직접 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시장 역할 ○도매상의 신용평가 제도 도입

2.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

農産物 流通改革對策

'98. 7. 23

農林部

目 次

I. 推進背景 ····································	··· 255
Ⅱ. 重點 推進施策	···· 256
1. 農産物 直去來 制度化	256
2. 公營都賣市場 改革	258
3. 産地流通 革新	260
4. 物流 및 情報改善	262
5. 需給 및 價格不安定 解消	264
Ⅲ. 推進體制 整備	··· 266
流通改革後 農産物 流通모습	· 267

I. 推進背景

- □ 그동안의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시책이 유통시설 확충에 치중한 결과, 전국 주요도시에 도매시장이 건설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高費用・低效率」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특히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유통주체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대두 되는 현시점에서 유통관련 제도나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실현하는데 한계
- □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構造 改善事業도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움
 - ○당면한 농가소득 지지와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은 시급한 과제
- □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의 틀과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根本的인 流通改革을 함으로써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지난 3월 생산자·소비자·유통인 및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農産物 流通改革委員會」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와 공개토론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農産物流通改革對策」을 수립

Ⅱ. 重點 推進施策

1. 農産物 直去來 制度化

現況과 課題

- ◇ 농산물의 유통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이 주요 요인임
 - ○소비자 구매액중 유통마진이 56%에 달하는데, 이중 높은 임대료· 감모 등을 이유로 소매단계 유통마진이 절반을 차지
- ◇ 최근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나 制度的 뒷받침이 미흡하여 새로운 유통경로로 정착하는데 한계
 - ㅇ직거래지원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 미비 등
 - ※ '98.6월말까지 1조 6,000억원 판매로 4,500억원 유통비용 절감 효과
- ◇ 경제성있는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소매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를 확산시키는데 중점
- □ 農家所得增大에 기여하고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는 직거래 추진
 - ㅇ중·소도시 인근지역에 산지농협 주도로 농민시장을 개설
 - 농기계 수리점, 영농자재판매점 등과 함께 개설
 - ○생산자와 소비자협동조합간 직거래 확대로 도농간 화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소비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산지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유통업체·실수요업체와의 계약출하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에 매취자금·계약재배자금 지원 확대
 - ○통신판매·택배·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방식의 새로운 직거래 정착

□ 물류센타 早期擴充으로 새로운 직거래망 정착

- ○계획중인 12개소(개장2개소)의 물류센타를 2001년까지 차질없이 개장하고, 개장지역의 운영성과를 보아 추가건설을 추진
 - 건설중인 공영도매시장도 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물류센타로 전환 추진
- ○물류센타에서는 주문에 의한 직거래, 지게차 하역, 냉장수송에 의한 신선 농산물 공급 등 선진 유통모델 정착
- ○개장초기 물류센타 운영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산지포장센타, 소비지 유통업체와의 거래선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 산지출하자와 소매점을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전자상거래 정착

□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支援體制 構築

- ㅇ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협조체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제공, 중앙정부는 건설지원, 생산자단체는 운영을 담당하는 모델('99년 8개소)을 정착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ㅇ직거래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부여
-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상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직거래마당」을 인터넷에 개설하고, 직거래장터 및 농민시장 정보지를 발간 배포
- □ 직거래 비율을 2001년 25%까지 제고하여 새로운 流通經路로 정착

2. 公營都賣市場 改革

現況과 課題

- ◇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 시장을 확충하고, 공영도매시장에서의 競賣를 의무화
 - 공영도매시장이 18개소 개장(16개소 건설중)되어 농산물 유통량의 50% 수준이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를 통해 유통
- ◇ 그러나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시장별·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硬直的인 거래제도 운용과 관리·감독 소홀로 부작용 발생
 ○ 형식·담합경매 등 경매부조리 및 불법점포 임대 등 잔존
- ◇ 경매제도의 장점을 발전시키면서 유통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去來制度 개선과 시장내 流通費用 節減에 중점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多樣化하여 出荷者의 선택의 폭을 확대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도매상 제도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
 - 주요 중앙도매시장은 공정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해 경매제를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시장은 다양한 현실적 거래제도 인정
- o 생산자조직이나 민간의 도매시장 참여 확대로 경쟁체제 구축
 - 공판장 개설대상 생산자단체 범위 확대 및 민간자본에 의한 농산물도매시장 개설 허용
- ○도매시장 정책 및 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중앙 및 개설자별로 설치·운영

□ 공영도매시장의 殘存 부조리 근절로 公正去來秩序 정착

- ○담합경매 의혹 등 수지식경매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을 단계적으로 전자경매로 전환
 - '98년중 서울, 대전의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전국으로 확대
- ○도매시장 관련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및 관리공사의 단속권 강화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및 감독기능 강화
- 공영도매시장의 출하주 등록제 및 출하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매시장의 출하물량 조절로 안정적인 경락가격 보장

□ 공영도매시장의 高費用構造를 타파하여 거래비용 최소화

-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단계별로 2%P 수준인하하여 출하자의 부담 경감(1%P 인하시 연350억원 출하자부담 경감)
 - 가락동 도매시장은 7. 1일자로 1%P 기인하
- ○하역비 부담주체를 출하자로부터 도매법인이나 도매상으로 전환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역기계화를 촉진
- ○도매시장의 적정도매법인수(2~4개) 유지와 불법 중도매인 일 제정리 등 구조조정 추진
- □ 類似市場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하되, 흡수가 어려운 유사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관리하는 방안 강구

3. 産地流通 革新

現況과 課題

- ◇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 부터 規格化하여 大量으로 출하하지 않으면 유통단계 축소나 물류비 절감이 불가능
 - 농업인의 공동체의식 부족, 농협의 소극적 참여로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수송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
- ◇ 산지유통시설이 확충되었으나 農家와의 연계 체제가 부족하고, 販路確保의 隘路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 가중
- ◇ 산지농협 등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계약재배·공동출하를 활성화하여 시장교섭력을 제고하고, 직거래 기반 구축
- □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農協이 産地流通을 책임지고 추진
 - ○1,220개소의 산지농협을 경제권 중심으로 통폐합(2001년 500개소)하여 농산물 유통사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 ○청과류의 주산지 농협을「産地流通示範農協」으로 육성하여 공동출하·직거래 등 산지유통모델을 정착시키고 전농협으로 확산
 - 농협을 통해 지원되는 정부의 각종 유통사업을 통폐합하고, 산지 농협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농협 위주로 집중 지원
 - ○생산자조직의 산지유통 점유율을 현재 3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제고하고, 단순 공동수송에서 공동선별·공동계산체제로 발전

□ 포장센타 등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規格農産物 출하확대

- ○산지유통 거점지역에 농산물 포장센타(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400 개소)을 건설하여 산지유통량의 30~40% 담당
- ○포장센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합출자에 의한 대규모 포 장센타, 이동식 포장센타 등 건설방식을 다양화
- ○기존 농산물집하장(3,290개소)중 규모가 큰시설에 선별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육성(1,000개소)

□ 산지 가공공장 운영활성화로 유통상의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환원

- ○산지가공공장은 당초 2,000개소 건설목표를 1,500개소로 축소하고, 운영내실화에 중점
 - '99부터 건설자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이를 저리융자로 전환
- ○생산자단체직판장, 물류센타, 대형소매업체 등에 판매망을 확충 하고 우편판매 등에 의한 직거래 등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

□ 산지에서의 농산물안전성 및 품질관리강화로 소비자의 식생활 보장

- ○안전성 조사품목을 확대(58개→120개)하고, 산지집하장, 포장센타 등 산지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조사 강화
 - 기준위반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조치
- ○지역특산품, 환경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 확대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실명제 및 반품교환제(Recall)도입

4. 物流 및 情報改善

現況과 課題

- ◇ 農産物의 출하단위, 수송단위, 판매단위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기계화·자동화·정보화가 어렵고, 物流費가 過多
 - ○대량으로 유통되는 배추·수박 등이 비포장·비파렛트로 출하되고 수송차량 단위가 적으며, 하역기계화를 위한 시설·장비가 미비
- ◇ 농산물의 상품코드, 상품등급, 거래서식등이 標準化되지 않아 전자 상거래(EDI) 기반 미비
-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一貫輸送, 하역 기계화 및 농산물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에 중점

□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로 수송·하역기계화의 기반 마련

- ○농산물의 포장규격(124개 품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높게 '98년 중 재정비 완료
- ○포장화가 부진한 농산물 중심으로 포장재비를 집중지원하여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물류효율화 도모
 - 배추·수박 등 골판지 포장출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그물망, 프라스틱상자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장방법 강구
- ○포장품 출하우대로 도매시장으로 포장품 출하를 촉진하고, 단계적으로 공영도매시장내 비포장 농산물반입 제한
 - 포장재비 지원, 쓰레기유발부담금 면제, 경매순서 우대 등

□ 농산물의 파렛트 적재, 지게차 하역으로 물류비 절감

- o파렛트 적재 기계화 하역에 필요한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보급
 - 하역장비 보급확대를 위해 '99년부터 일부 보조(20%) 추진
-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하역료면제 및 공영도매시장 비파렛트 출하품 반입 제한으로 농산물의 파렛트 출하 촉진
 - 농협조직을 이용한 파렛트 공급·회수 방안 강구

□ 농산물의 냉장유통 기반구축으로 고품질농산물 공급

- ○신규 유통시설 지원시 저온·예냉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의 지원을 의무화 하고, 기존시설의 개보수
 - 공영도매시장의 저온경매장, 저온저장고 설치
- ○「예냉처리 농산물표시제」도입으로 냉장유통 농산물의 가격 보장과 소비자 신뢰 제고

□ 농산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 ○유통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코드, 거래서식을 '98년중 표준화하여 유통정보화 기반 구축
- 낙후된 농촌지역정보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업전용 초고속통신망 구축
-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와 산지 생산자단체, 포장센터간 전자 상거래시스템 도입으로 물류비용 절감 추진

5. 需給 및 價格不安定 解消

現況과 課題

- ◇ 그동안 가격진폭이 큰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制度的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需給不安이 상존
 - ○가격보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년간 채소출하액 8조원)되고, WTO 체제하에서 정부개입에 한계
- ◇ 사전적인 수급안정을 위한 농업관측이 生産調整과 연계되지 못함
 - 농업관측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고, 생산조정을 제도화 할 수 있는 전국 생산자조직, 생산조정에 따른 보상제도 등 미비
- ◇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과감히 보완, 발전시키면서 短期的·事後的인 수급안정시책의 내실화에 중점
- □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契約栽培事業을 확대 정착시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및 수급안정 도모
 -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20-30% 계약재배 실시- 계약재배자금 : ('98) 2,865억원 → (2001) 4,500억원
 - ○사업자금과 운영수익의 일부를 참여조합과 중앙회의「자조금」으로 활용토록 하여 농협 등의 적극적인 계약재배사업 참여 유도
 - 농협이외의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의 가격안정시책 참여를 추진하여 계약재배 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평가를 강화

□ 농업관측을 내실화하고, 사전적인 需給調整과 연계체제 구축

-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농업관측에 대한 농업인과 유통종 사자의 신뢰회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전담팀을 설치하여 농업관측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하여 정보의 고급화 실현
- ○농업관측 결과가 생산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생산조정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의 육성과 자조금 조성 등 제도개선

□ 과잉생산시 정부의 조기 대처로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

- 0 배추 등 저장이 어려운 채소류의 경영비 수준 보장을 위한 산지폐기 실시
 - 저장농산물은 정부수매, 저장・가공・수출업체 수매자금지원
- o소·돼지등의 과잉두수감축을 위해 농가의 자가도축 허용
- ○출하자에게 도매시장별·도매법인별·등급별 경매 결과를 즉시 제공(Real Time)하여 생산자의 자율적인 출하조절 유도
- 농·소·상·정간의 유통협약 체결로 생산자의 저품위 농산물출하 억제와 매매금지, 소비촉진 등 추진

□ 산지가격 하락을 소비자가격 하락에 반영시켜 需要 擴大

- ○소비자들이 싼값의 고품질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소비지 대형소매점 등의 농산물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
- ○생산자단체의 직판장확대 등 일반소매점 가격견제 역활제고 및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기능 강화

Ⅲ. 流通改革 推進體制 정비

□ 유통지원조직 정비로 專門化 및 效率性 제고

- ○정부는 도매시장의 관리·감독, 유통정보제공 등 농업인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강화
 - 농산물 유통에 관한 각종 규제(70건)를 폐지하거나 완화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유통사업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축협·임협 등 생산자단체 등과 기능과 역할 분담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통개혁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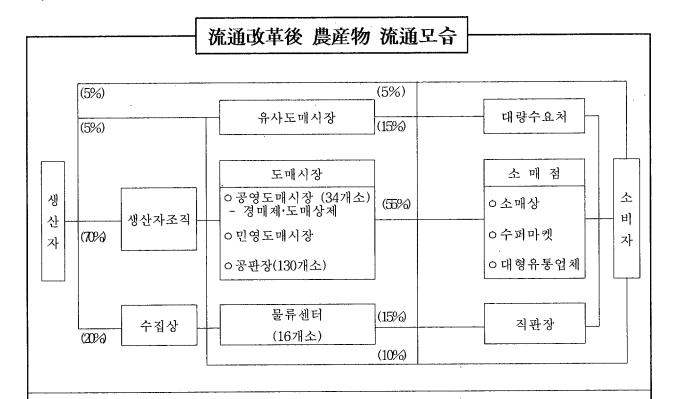
- ㅇ농안기금사업을 통폐합하여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집중지원
- 정부수매·저장·가공업체 지원은 축소하되, 가격안정사업에 집중지원
- ㅇ농안기금사업을 평가, 차별지원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기금지원확대. 금리인하 등

□ 유통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關聯法 改正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 「협동조합관련법」개정 등을 금년중에 마무리
- ㅇ재경부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농산물 직거래 지원근거 마련

□ 유통관련 종사자의 意識改革으로 유통개혁 완수

- o속박이·형식경매·불법전대 등 3불운동
- ○정부의존·불평불만·무사안일 등 3탈운동



- ◇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을 포장화· 규격화·브랜드화하여 대량으로 共同出荷함에 따라 생산자의 市場交渉力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節減基盤 마련
- ◇ 34개 공영도매시장, 16개 물류센타가 개장되고, 유사시장이 제도권 으로 흡수될 뿐만아니라 다양한 거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出荷者 의 選擇의 幅이 확대되고, 競爭에 의한 公正去來秩序가 定着
-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小賣段階의 流通마진이 크게 절감
-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시장까지 파렛트에 의해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계가 구축됨으로써 物流費用을 30% 수준 절감

농산물 유통비용 6조원 節減 (19조원→13조원)

3.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97말기준)

가. 시장종류별 시장수・종사자・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

	종 사 자 (명)			거 래 실 적						
	시			पि पि	'9	6년		'9'	7년	
구 분	장수	도매 법인	중도 매인	참가 인	당	금액	물량비	물량	금액	물 량 비
계	51	4,375	7,715	541	5,471,982	57,333	100	6,191,439	60,160	100
공영도 매 시 장	17	3,013	6,547	225	4,539,517	40,762	83.0	5,023,557	45,751	81.1
일반법정 도매시장	34	1,362	1,168	316	932,465	16,571	17.0	1,167,882	14,409	18.9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나. 부류별 종사자 · 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

	<u> </u>			종 사 자				거 래 실 적						
ļ .,	·		시	_		प्य प्रि	'9	6년		'9	7년			
구		분	장수	도매 법인	중도 매인	* ' ' 참가 인	물량	금액	물량비	물량	금액	물 량 비		
	계		51	4,375	7,715	541	5,471,982	57,333	100	6,191,439	60,160	100		
청	과	류		2,551	5,972	161	4,613,789	33,693	84.3	4,852,929	37,875	78.4		
수	산	류		736	1,290	61	400,814	8,180	7.3	447,245	8,819	7.2		
축	산	류		1,042	273	95	323,584	12,723	5.9	794,299	11,248	12.8		
양	곡	류		32	132	224	133,097	2,692	2.4	96,291	2,169	1.6		
한	약	재		14	48		698	45	0.1	675	49	_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다. 부류별 · 시장종류별 거래실적과 물량비

(단위 : 톤, 억원, %)

			'96년	, , , , , , , , , , , , , , , , , , ,		'97년	
	구 분	물 량	금 액	물량비	물 량	금 액	물량비
원리로	공영도매시장	4,190,085	31,315	90.8	4,622,336	35,943	95.2
청과류	일반법정도매시장	423,704	2,378	9.2	230,593	1,932	4.8
	공영도매시장	244,989	4,930	61.1	301,186	5,740	67.3
수산류	일반법정도매시장	155,825	3,250	38.9	146,059	3,079	32.7
호시ㄹ	공영도매시장	107,843	4,517	33.3	100,035	4,068	12.6
축산류	일반법정도매시장	215,741	8,206	66.7	694,264	7,180	87.4
아고ㄹ	공영도매시장	_	_	<u> </u>	_	· <u>-</u>	_
양곡류	일반법정도매시장	133,097	2,692	100	96,291	2,169	100
-1 AL-11	공영도매시장	_	-	_	-	_	- ,
한약재	일반법정도매시장	698	45	100	675	. 49	100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라. 시도별 시장수 · 거래실적

(단위 : 톤, 억원)

							(12)	1 : 돈, 먹원)
		A -	² 영도매시장	}-	일기	반법정도마	시장	유사도매시장
구	분	시장수	'97 거래	실적	시장수	'97년 거] 래실적	시장수
		(개소)	물 량	금액	(개소)	물 량	금 액	(개 소)
7	1	17	5,023,557	45,751	34	1,167,882	14,409	31
서	울	1	2,482,651	25,971	5	320,245	7,579	12
부	산	1	371,737	2,561	6	107,619	2,843	2
대	구	1	439,745	2,671	2	30,064	996	3
인	천 ·	1	266,355	2,036	1	21,094	667	
광	주	1	310,734	2,546	2	497,834	269	3
대	전	1	284,966	1,909	1	12,717	621	4
울	산	1	95,267	932	_	_		1
경	기	4	420,082	3,974	-	_	_	4
강	원	1	17,432	198	1	21,932	143	1
충	북	2	124,710	1,040	_	_	_	_
충	남	1	57,860	508	_	_		_
전	북	1	93,299	910	3	32,579	162	_
전	남	_	_	_	. 3	42,083	283	_
경	북	_		-	7	42,843	504	-
경	남	1	58,719	495	3	38,872	342	1
제	주	_	_	_	_	_	_	. –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 포함

마. 시장종류별·부류별 수입 농수산물 거래현황

(단위 : 톤, 백만원)

구	브	물량	금 액
	청 과 류	112,735 (51,988)	152,327 (76,842)
공 영 도 매 시 장	수 산 류	29,808 (14,216)	56,272 (27,907)
	축 산 류	17,414 (17,414)	97,145 (97,145)
	청 과 류	15,028	17,159
일반법정도매시장	수 산 류	7,382	16,120
	축 산 류	376,341	102,994
	청과류	127,763	169,486
계	수 산 류	37,190	72,392
	축 산 류	393,755	200,139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는 가락동도매시장의 거래실적임

바. 종사자 현황

1)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4,375(3,842)	2,551(2,166)	736(649)	1,042(1,000)	32(22)	14(5)
공영도매시장	3,013(2,630)	2,226(1,917)	563(489)	224(224)		
법정도매시장	1,362(1,212)	325(249)	173(160)	818(776)	32(22)	14(5)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 임직원이 포함되었으며, ()는 직원수

2) 경매사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862	682	144	28	5	3
공 영 도 매 시 장	748	633	110	5	-	_
일반법정도매시장	114	49	34	23	5	3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 포함

3) 중도매인

(단위: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7,715	5,972	1,290	273	132	48
공 영 도 매 시 장	6,547	5,430	1,070	47	1	_
일반법정도매시장	1,168	542	220	226	132	48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 포함

4) 매매참가인

가) 구성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541	161	61	95	224	
가 공 업 자	39	4		35		_
소 매 업 자	484	143	60	57	224	. –
수 출 업 자	_	_		· —	_	_
소매업자협동조합	13	. 9	1	3	_	_
소비자단체	5	5	_	-	_	_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 포함

나) 시장별·부류별 현황

(단위 : 명)

7	분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541	161	61	95	224	_
공 영 도 미	배시 장	225	155	57	13		
일반법정도	E매시장	316	6	4	82	224	_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 포함

5) 수집상

(단위 : 명)

							<u>u 11 • 07 </u>
구	卫	계	청 과	수 산	축 산	양 곡	한약재
계		8,019	5,827	1,947	245		
공 영 도	매 시 장	6,901	5,355	1,428	118	-	_
일반법정	도매시장	1,118	472	519	127	_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 포함

사. 거래금액 규모별 도매시장법인 수

1) 시장종류별

(단위: 개소, 억원)

	건래규모	, 계	20억	20	50	100	300	500	1,000	2,000 억	7	니래규모	Z.
연도		Al	미만	50 50	100	300	500	1,000	2,000	이상	평균	최고	최저
	계	75	5	12	17	20	3	6	9	3	422	2,583	8
'92	공 영	29	1	3	2	10	2	3	7	1	639	2,011	10
	일 반	46	4	9	15	10	1	3	2	2	284	2,583	8
	계	84	5	17	14	24	6	4	7	7	452	3,563	7
'93	공 영	41	2	5	5	13	5	3	.3	5	590	3,563	7
	일 반	43	3	12	9	11	1	1	4	2	321	2,543	9
	계	81	2	8	15	21	13	8	7	7	601	4,579	9
'94	공 영	47	-	2	7	13	10	7	3	5	727	4,579	24
	일 반	34	2	6	8	8	3	1	4	2	427	2,776	9
	계	87	5	8	17	20	13	10	6	. 8	556	4,227	3
'95	공 영	55	3	5	7	13	10	8	3	6	640	4,227	3
	일 반	32	2	3	10	7	3	2	3	2	399	2,865	8
	- 계	97	3	13	17	17	19	14	6	8	585	4,517	3
'96	공 영	61	1	7	9	10	15	10	3	6	645	4,517	3
	일 반	36	2	6	8	7	4	4	3	2	477	3,001	21
	계	106	3	11	13	27	20	19	6	7	556	4,068	4
'97	공 영	71	2	3	8	18	17	14	3	6	636	4,068	6
	일 반	35	1	8	5	9	3	5	3	1	393	2,951	4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되었으며, 일반법정도매시장법인 중 광주수산은 누락

2) 부류별

(단위 : 개소, 억원)

	거래규모	9	20억	20	50	100	300	500	1000	2000	ブ	 래규모	거래규모		
연도	19111	계	미만	~ 50	~ 100	~ 300	~ 500	1000	2000	억 이상	평균	최고	최저		
,	 계	75	5	12	17	20	3	6	9	3	422	2,583	8		
, '00	청과류	50	3	7	13	18	2	2	4	1	311	2,011	10		
92	수산류	16	2	5	4	1	-	1	2	1	398	2,403	8		
	축산류	9	_	_	-	1	1	3	3	1	1,082	2,583	171		
	계	84	5	17	14	24	6	4	7	7	452	3,563	7		
'93	청과류	55	3	11	8	21	5	2	1	4	341	2,476	13		
90	수산류	20	2	6	6	2	<u> </u>	1	2	1	356	2,543	7		
	축산류	9	_	_	_	1	1	1	4	2	1,343	3,563	255		
	계	81	2	8	15	21	13	8	7	7	601	4,579	9		
'94	청과류	52	_	5	6	18	12	6	1	4	524	3,392	20		
94	수산류	20	2	3	9	2		1	2	1	388	2,776	9		
	축산류	9	-	_	-	1	1	1	4	2	1,516	4,579	298		
	계	87	5	8	17	20	13	10	6	8	556	4,227	3		
'95	청과류	58	3	4	9	17	12	7	1	5	488	3,009	3		
90	수산류	20	2	4	8	2		1	2	1	403	2,865	8		
	축산류	9	_	_		1	1	2	3	2	1,335	4,227	291		
	계	93	3	12	17	17	19	11	6	8	587	4,517	3		
,,,,	청과류	63	1	9	8	13	17	9	1	5	527	3,576	15		
'96	수산류	21	2	3	9	3		1	2	1	408	3,001	3		
	축산류	9		_	-	1	2	1	3	2	1,413	4,517	294		
	계	106	3	11	13	27	20	19	6	7	556	4,068	4		
	청과류	68	_	7	7	18	17	13	1	5	548	3,742	20		
,05	수산류	25	3	3	6	8	1	1	2	1	353	2,951	4		
'97	축산류	9	-	_	-	1		4	3	1	1,250	4,068	269		
	양곡류	3	_	_			2	1	-	_	504	406	699		
	한약재	1		1	-	_	_	-	_		49	49	49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이 포함되었으며, 수산부류 중 광주수산은 누락

아.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선별 금액 및 물량비율

1) 시장종류별

(단위:%)

항 목 지 역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제3자판매
공영도매시장	96.5 (97.2)	3.4 (2.7)	0.1 (0.1)
일반법정도매시장	91.2 (96.6)	8.8 (3.4)	- (-)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이 포함되었으며, ()안은 물량비율임

2) 부류별

(단위:%)

항 목 부 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제3자판매
청 과 류	97.6 (97.4)	2.3 (2.5)	0.1 (0.1)
수 산 류	99.1 (98.9)	0.8 (1)	0.1 (0.1)
축 산 류	89.3 (96.6)	10.7 (3.4)	- (-)
양 곡	67.8 (76.7)	32.2 (23.3)	- (-)
한 약 재	100 (100)	- (-)	- (-)

주) 도매시장내의 공판장이 포함되었으며, ()안은 물량비율임

3) 부류별 · 시장종류별 수익성 비율

(단위:%)

		구 분		총자	본순여	이익율	자기기	아본순 <i>(</i>	이익율	매출]익율 ^{※)}	
		1 正		'95	'96	'97	'95	'96	'97	'95	'96	'97
	,	평	균	4.7	9.4	3.1	11.5	28.3	7.6	7.1	10.9	4.2
청	과	공영도	매시장	4.6	9.2	3.1	11.0	28.3	7.4	6.9	12.0	4.6
		일반법정	도매시장	5.3	11.3	2.7	16.6	28.4	9.3	9.1	5.9	2.0
		평	균	3.5	2.3	0.1	10.7	9.9	0.4	5.6	3.6	0.3
수	산	공영도	매시장	3.5	2.7	△0.2	8.5	8.8	△0.4	7.7	5.4	△0.5
-		일반법정	도매시장	3.5	16.5	0.9	22.1	14.7	9.4	3.5	1.9	1.3
축	산	일반법정	도매시장	0.2	2.4	△0.8	2.0	12.5	△5	0.7	0.9	△3.3
양	곡	일반법정	도매시장	0.6	△5.8	△12.4	1.0	△14.3	△58.2	1.9	△7.9	△23.1
한 ⁴	부 재	일반법정	도매시장	_	_	2.7	_		3.1	_		17.5

주) 매출액은 위탁상장수수료임(단,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경우의 이익금, 부대사업수익도 포함됨)

4) 부류별·시장종류별 성장성 비율·

(단위:%)

	. – д	자기]자본증기	-	매출액증가율			
	구 분	'95	'96	'97	'95	'96	'97	
	평 균	32.6	△0.6 ·	7.4	9.0	11.8	10	
청과	공영도메시장	35.9	△1.8	6.4	10.4	16.0	14	
	일반법정도매시장	6.4	12.0	23.8	△2.0	△4.4	△6.4	
	평 균	10.3	2.6	20.2	5.8	4.8	6.2	
수산	공영도매시장	9.3	0.03	21.5	8.7	4.9	13.5	
	일반법정도매시장	16.0	15.0	7.5	3.2	4.6	△1.1	
축산	일반법정도매시장	12.2	24.8	135.8	11.7	19.8	△7.8	
양곡	일반법정도매시장	△0.7		△36.8	2.6	△17.4	8.1	
한약재	일반법정도매시장	. —	_	3.3		_	5.4	

자. 도매시장법인 출하촉진자금 지원실적

1) 연도별

(단위: 억원)

구 분	'85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도매시장법인	28	295	373	432	550	619	793	708
총출하촉진자금	81	404	545	668	1,030	1,091	1,507	1,442

2) '98년 부류별 · 용도별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용도	용도 계			ڔ	선 도 금	7 <u>.</u> 1	대금결제자금			
부류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총 계	70,806	26,826	43,980	17,870	6,426	11,444	52,936	20,400	32,536	
청과부류	51,932	16,626	35,306	15,696	6,426	9,270	36,236	10,200	26,036	
수산부류	18,874	10,200	8,674	2,174		2,174	16,700	10,200	6,500	

3) '97년 지역별 · 용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용도		계		7	선 도 금	1. 1	대금결제자금			
부류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서	<u>술</u>	26,752	4,700	22,052	8,934	2,100	6,834	17,818	2,600	15,218	
광약	부시	14,247	8,238	6,009	3,726	2,890	836	10,521	5,348	5,173	
7]	타	10,933	3,688	7,245	3,036	1,436	1,600	7,897	2,252	5,645	

차. 거래금액 규모별 중도매인수

(단위 : 명)

	구 분	계	1억원	1~3	3~5	5~10	10~20	20~30	30억원
	, L	, il	미만	억 원	억 원	억 원	억원	억 원	이 상
	계	7,715	1,074	2,201	1,271	1,543	1,037	330	259
계	공영도매시장	6,547	937	1,930	1,129	1,344	832	222	153
	일반법정도매시장	1,168	137	271	142	199	205	108	106
	계	5,972	860	1,755	1,023	1,277	761	198	98
청과	공영도매시장	5,430	775	1,536	911	1,183	732	197	96
	일반법정도매시장	542	85	219	112	94	29	1	2
	계	1,290	181	420	235	203	152	66	33
수산	공영도매시장	1,070	162	394	218	161	98	23	14
	일반법정도매시장	220	19	26	17	42	54	43	19
	계	273		9	5	20	55	57	127
축산	공영도매시장	47		_	_		2	2	43
	일반법정도매시장	226	_	9	5	20	53	. 55	84
양곡	일반법정도매시장	132	1	4	6	42	69	9	1
한약재	일반법정도매시장	48	32	13	2	1	_		_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카. 출하선별 유통량

1) 청과부류

가) 물량기준

(단위 : 톤)

출하선 지 역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농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타
전 국	4,852,929	1,831,813	253,187	2,003,678	676,553	87,698
서 울	2,215,910	646,897	106,585	1,004,619	407,153	50,656
광 역 시	1,772,833	765,525	99,626	680,258	217,689	9,735
기 타	864,186	419,391	46,976	318,801	51,711	27,307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나) 금액기준

(단위:백만원)

					(1 1 1	• 7 1 11
출하 지역	선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농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타
전 국	3,787,460	1,128,685	268,175	1,982,277	307,767	100,556
서 울	1,823,532	370,649	123,005	1,083,004	179,014	67,860
광 역 시	1,248,280	428,981	100,359	614,008	92,572	12,360
기타	715,648	329,055	44,811	285,265	36,181	20,336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2) 수산부류

가) 물량기준

(단위 : 톤)

지역	출하선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수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타
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7,245	127,933	-	5,056	180,399	133,857
서	양	323,780	81,097	-	108	112,044	130,531
광 '	역 시	37,240	18,764	-	760	16,926	790
기	타	86,225	28,072	-	4,188	51,429	2,536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나) 금액기준

(단위:백만원)

지역	출하선	계	생산자 개 인	생산자 공동출하	수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타
전	국	881,874	254,543	_	9,988	346,688	270,655
서	왕	673,038	163,680	_	1,191	243,637	264,530
광 역	시	68,669	43,782	-	2,806	21,617	464
7]	타	140,167	47,081	-	5,991	81,434	5,661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3) 축산부류

가) 물량기준

(단위 : 톤)

출하선 지 역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축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타
전 국	794,299	130,837	7,768	227,636	59,948	368,110
서 울	166,915	15,297	_	139,932	1,914	9,772
광 역 시	627,384	115,540	7,768	87,704	58,034	358,338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나) 금액기준

(단위:백만원)

출하선 지 역	계	생산자 개 인	생 산 자 공동출하	축 협 계통출하	수집상 출 하	기 타
전 국	1,124,831	183,593	30,267	832,214	21,253	57,504
서 울	641,522	48,607	<u> </u>	534,572	6,368	51,975
광 역 시	483,309	134,986	30,267	297,642	14,885	5,529

주) 도매시장내 공판장이 포함됨

4. 운영중인 공영도매시장 현황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
- □ 연혁
 - o '77. 8.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방침 결정 (농수산부)
 - ㅇ '79. 8. 6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결정
 - ㅇ '85. 6. 19 개장
- □ 규모 : 부지 542,920 m² (164,232평), 건물 262,028 m² (79,263평)
- □ 사업기간 : '82. 4. 13 ~ '85. 2. 28
- □ 사업비 : 933 억원 (국고 347, 지방비 208, 차관 245, 기타 133)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및	1	106,859	경매장,중도매인점포(청과863,	
수산물시장	1	39,843	수산264), 법인사무실	
축산물시장	1 .	16,428	저온저장고,임대사무실	
트럭단위경매장	2	14,761	경매장,중도매인점포(청과포함)	
고추,마늘시장	2	5,300	경매장,중도매인점포(청과포함)	
직판시장 및	4	18,257	직판시장,관련상품시장,식당	
관련 상품시장				
관리 금융동	1	11,529	관리사무실,농협금융점,우체국,	
			식당	
서비스동	8	3,247	휴게실,식당,목욕탕,약국,기숙사	
기타		2,032	추유소,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90,000	동시주차능력 3,170대	
		·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서울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기구 : 5처 12팀

□ 정원/현원

(단위: 명)

)	나 무 z	기술	기능	청원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소계	직	직	경찰
정원	250	3	4	10	28	100	142	69	_	36
현원	262	3	4	12	27	97	140	82	_	37

라. 입주업체 및 유통종사자 현황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w]		-7 -7		Ó	직 원	. 수		주거래	7.1.1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رم رم		직 원		1)	중도매	주거래
	부류	(백만원)	·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서울청과	청과	5,000	6	3	78(24)		78(24)	78(24)	209	36
중앙청과	청과	5,010	12	15	85(10)		85(10)	85(10)	209	34
동화청과	청과	4,900	20	11	109(28)		109(28)	109(28)	228	12
한국청과	청과	7,000	34	18	112(29)	_	112(29)	112(29)	237	23
대아청과	청과	5,450	21	18	59(8)	-	59(8)	59(8)	9	8
농협가락(공)	청과		_	_	57(21)	_	57(21)	57(21)	161	1
강동수산	수산	3,000	3	4	66(17)	-	66(17)	66(17)	124	` -
서울건해	수산	3,500	10	6	48(16)	_	48(16)	48(16)	234	_
수협가락(공)	수산	_	_	_	19(4)		19(4)	19(4)	43	11
축협가락(공)	축산	-		_	190(6)	_	190(6)	190(6)	46	12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노조원
청과	1,698(193)	114	1,392	1,236	1,375
수산	401(95)	11	559	404	365
축산	46(-)	12	123	175	_
양곡	139(3)	179	_	1	73
계	2,284(291)	316	1,994	1,815	1,813

주)1.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양곡부류 유통업자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의 종사자 수 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항	계
선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85	422	799	54	813	-		476	1,617
'86	1,109	2,217	124	1,871	18	598	1,251	4,686
'87	1,113	2,639	124	1,838	46	1,320	1,283	5,797
'88	1,183	3,045	138	1,867	59	1,904	1,380	6,816
'89	1,426	3,755	149	2,095	102	2,984	1,677	8,834
'90	1,704	4,934	155	2,490	94	3,295	1,953	10,719
' 91	2,048	7,531	170	3,017	88	3,521	2,306	14,069
· '92	2,175	9,291	196	3,314	87	3,706	2,458	16,311
' 93	2,167	11,113	191	3,581	88	3,563	2,446	18,257
' 94	2,995	14,241	187	3,922	103	4,431	3,285	22,594
' 95	2,230	14,697	192	4,107	103	4,227	2,525	23,031
' 96	2,239	17,387	185	3,955	108	4,517	2,532	25,859
'97	2,199	18,125	184	3,779	100	4,068	2,483	25,972
' 98	2,070	17,252	163	3,585	92	3,727	2,325	24,564

(2)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7-3	=	199	1995		1996		97	1998	
부 류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과일	_	-	_	_	-		886	1,484
청과	채소	11,439	14,823	32,027	48,757	40,848	58,742	56,151	80,510
	소계	11,439	14,823	32,027	48,757	40,848	58,742	57,037	81,994
	선어,패류	-				_	-		· –
수산	건어	-	_	722	4,402	985	6,627	631	5,566
	소계	_	_	722	4,402	985	6,627	631	5,566
7	뷔	11,439	14,823	32,749	53,159	41,833	65,369	57,668	87,560

(3) 도매법인별 연도별 거래실적

(단위 : 톤, 백만원)

도매법인	1995		1996		1997		199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서울청과	319,701	262,673	323,542	304,304	316,501	315,359	272,344	267,904
중앙청과	323,082	283,227	314,123	334,726	320,297	352,915	296,693	319,689
동화청과	420,378	275,044	388,111	315,451	363,591	320,905	343,422	307,300
한국청과	480,608	300,911	457,250	357,639	445,062	374,219	416,155	355,228
대아청과	433,729	140,876	485,736	152,436	491,430	158,977	455,925	172,911
농협가락(공)	252,840	207,063	238,740	225,328	221,354	231,300	227,943	220,126
강동수산	113,306	198,698	112,264	190,982	109,828	178,958	98,481	172,693
서울건해	38,611	151,125	30,880	136,810	30,923	122,951	27,528	120,032
수협가락(공)	40,707	60,841	43,288	64,890	41,792	69,400	36,849	60,163
축협가락(공)	102,833	422,683	107,843	451,720	100,035	406,774	91,526	372,682

부산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0.

□ 연혁

ㅇ '86. 6. 엄궁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수립

ㅇ '89. 12. 30 건설공사 착공

ㅇ '93. 12. 21 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144,135㎡ (43,600평), 건물 92,106㎡ (27,862평)

□ 사업기간 : '89 ~ '93

□ 사업비 : 571 억원 (국고 125, 지방비 147, 융자299)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3	62,328	경매장,중도매인점포 (300),	
		,	도매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	
트럭단위경매장	3	5,640	경매장,중도매인점포(44)	
고추,마늘시장	1	5,089	경매장,중도매인점포(48)	
직판시장 및 관련	1 ,	11,187	직판시장,관련상품시장,식당	
상품시장				
관리 금융동	1	4,276	관리사무실,금융점,우체국,식당	
서비스동	. 1	2,312	휴게실,식당,목욕탕	
기타	5	1,274	경비실,오물처리장,초소	
주차장		1,585면	동시주차능력 1,585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부산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기구 : 2과 5담당

		,)	아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32	_	1	2	5	17	25	_	7	16
현원	31	_	1	2	5	16	24	_	7	16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1 -7	-) H -7	スス		(김 직 원	1 수		주거래	Z -1 -1)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직 원			중도매	주거래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부산청과	청과	3,000	8	6	38(13)	_	38(13)	44(13)	174	6
항도청과	청과	3,000	16	6	30(13)	5(-)	35(13)	41(13)	137	8
농협부산(공)	청과			2	20(10)	2(-)	22(10)	24(10)	174	9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485(-)	23	1,215	382	188	1개(21명)
수산		_	_		_	_
축산	_			-		
계	485(-)	23	1,215	382	188	1개(21명)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也工程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3	5	40	_	_	-	_	5	40
' 94	268	1,747	-	_	_		268	1,747
' 95	352	2,079		_	_		352	2,079
' 96	355	2,430	_	-	_		355	2,430
' 97	374	2,610					374	2,610
' 98	363	2,471					363	2,471

(2)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청과)

○ '97년 : 물량 2,000톤, 금액 49억원

○ '98년 : 물량 2,000톤, 금액 66억원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527-3

연혁

○ '88. 10. 7 청과부류도매시장 A동 개장 (건물 16,504m²)

○ '96. 10. 4 청과부류도매시장 B동 개장 (건물 80,793m²)

□ 규모 : 부지 166,716㎡ (53,431평), 건물 97,297㎡ (29,432평)

□ 사업기간 : '84 ~ '87(확장공사 '96완료)

□ 사업비: 660 억원 (국고40, 지방비 301, 농안기금229, 민자90)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2	44,932	경매장,중도매인점포(320),	
			법인사무실	
수산물시장	1	18,653	경매장,중도매인점포(105)	
			저온저장고,임대사무실	
트럭단위경매장	1	5,412	경매장	
관련상품시장	1	17,193	관련 상품시장	
관리동	1	4,930	관리사무소,동사무소,농협 등	
기타	1	6,177	주유소,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17,665	동시주차능력 1,731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대구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4계 (관리,시설,시장운영,유통지도계)

(단위 ; 명)

				/	사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4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29		1	4	7	7	19	_	10	21
현원	29		1	. 4	6	8	19	-	10	(20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취급	자본금	주주		임	직 원	수		주거래	주거래
법인명	부류	(백만원)	' ' 수	임원	사무직	직 원 기능직	소계	계	충도매 인	매참인
대구중앙청과	청과	600	6	5(1)	25(4)		25(4)	30(5)	62	_
영남청과	청과	1,200	15	9(1)	22(10)		22(10)	31(11)	95	_
대한청과	청과	600	72	8(-)	17(7)	_	17(7)	25(7)	86	-
제일청과	청과	600	13	4(-)	14(6)	_	14(6)	18(6)	41	
농협북대구(공)	청과		-	1(-)	15(6)		15(6)	16(6)	58	_
대구. 경북 원협공	청과		-	11(1)	8(4)		8(4)	19(5)	35	_
대구수산	수산	500	5	7(-)	8(4)	_	8(4)	15(4)	53	-
대구종합수산	수산	720	27	10(-)	14(-4)		14(4)	24(4)	45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명)

부류 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377(3)	1	1,262		114	_
수산	98(-)	_	33	-		
축산	19(-)	2	51		_	
계	494(3)	3	1,346	_	114	_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서도배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89	74	158	1	44	_		75	202
'90	108	253	0.7	32	_		109	258
'91	128	488	0.7	38		_	129	526
' 95	332	1,353	0.9	42	_		333	1,395
'96	306	1,603	3	70		_	309	1,673
'97	428	2,402	11	269	_	_	439	2,671
' 98	419	2,572	10	237	_	_	429	2,809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6

미연혁

ㅇ '87. 도매시장 부지매입 계약체결 (시→한국토지개발공사)

o '88. 도매시장 건설 세부추진계획 수립

○ '91. 10. 도매시장 건설착공

ㅇ '94. 1. 11 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62,285 m² (18,841 평) , 건물 25,909 m² (7,837 평)

□ 사업기간 : '91. 10 ~ '93. 7

□ 사업비 : 145 억원 (국고29 , 지방비116)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1	18,860	경매장,중도매인사무실, 법인사무실,	
관리 금융동 서비스동	1 1	1,479 145	관리사무실,원협금융점 매점,식당	
기타 주차장	3	871 12,860	경비실,오물처리장,저온저장실 동시주차능력 675 대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인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3 계 (관리계, 유통계, 시장계)

	-			j	아 무 즈	}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39	-	1	3	6	6	16		4	19
현원	37		1	3	4	8	16	·	5	16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1 ~7.	7) H 7	주주	•	임	직 원	수		주거래	주거래
법인명	취급	자본금	L.L	_		직 원			[주도메]	' ' '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대인농산	청과	2,000	7	5(1)	11(2)	14(8)	25(10)	30(11)	108	1
인천농산물	청과	1,200	15	7(1)	10(1)	20(9)	30(10)	37(11)	120	1
덕풍청과	청과	1,200	15	15()	11(1)	12(9)	23(10)	38(10)	109	4
삼성식품	축산	250	3	3()	19(2)	76(1)	95(3)	98(3)	24	25
원협인천(공)	청과	1,262	510	11()	6()	10(10)	16(10)	27(10)	68	1

- 주) 1.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 2. 삼성식품은 일반법정도매시장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업무관할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405(-)	11	375	_	117	1
수산		-	_	-		-
축산	24(-)	25	37	_		_
계	429(-)	36	412	1	117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Ы ГН	청 과		수 산		축	산	합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급액	물량	금액
' 94	193	1,404		. –	25	830	218	2,234
' 95	222	1,414	_	-	22	728	244	2,142
' 96	243	1,774	_	-	28	719	271	2,493
'97	266	2,036	_		30	691	296	2,727
'98	256	2,011		_	27	826	283	2,837

광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437-3

□ 연혁

○ '89. 3. 2 관리사무소 개소

ㅇ '91. 2. 7 도매시장 시설공사 준공

ㅇ '91. 2. 27 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56,206m² (17,002평), 건물 35,329m² (10,687평)

□ 사업기간 : '89 ~ '91

□ 사업비: 146 억원 (국고 17, 지방비 6, 농안기금 55, 민자 68)

□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1
청과물시장	4	25,528	경매장,중도매인점포(1,080)		
			법인사무실 ,		
			저온저장고,임대사무실		
트럭단위경매장	1	3,822	경매장,중도매인점포		
관리 금융동	1	696	관리사무소		
서비스동	1	441	식당,약국,다방		
주차장			동시주차능력 500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광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담당 (서무담당,운영담당)

				7	사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천 경찰
정원	15		1	2	2	. 3	8	-	4	3
현원	20	_	1	2	2	4	9	_	4	7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법인명	취급	자본금 (백만원)	주주 수	임원	임 사무직	직 원 직 원 기능직	수 소계	계	주거래 중도매 인	주거래 매참인
광주청과	청과	501	7	5()	34(10)	_	34(10)	39(10)	114	
광주중앙청과	청과	60	10	11()	24(12)	_	24(12)	35(12)	126	
호남농산물	청과	1,600	191	1()	25(5)	-	25(5)	26(5)	95	
광주원협(공)	청과	_			46(11)	_	46(11)	46(11)	141	4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소대행업자
청과	476(-)	5	1,300	_	171	_
수산	_	-	-		_	_
계	476(-)	5	1,300	_	17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الدر سالم	청	과	<u>수</u>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1	138	859	_	_	_	_	138	859
' 92	256	1,352	_	_		_	256	1,352
' 93	271	1,570	_		-	_	271	1,570
' 94	281	2,143	_	_	_	_	281	2,143
' 95	319	2,250	_	-	_	_	319	2,250
' 96	312	2,470	-	-	<u>. </u>	_	312	2,470
' 97	311	2,546	_	_	_		311	2,546
' 98	315	2,515	_		-	_	315	2,515

대전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

□ 연혁

○ '83. 10 농수산물도매시장 근대화 계획 확정

○ '87. 11. 2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67,980 m² (20,564평), 건물 27,623m² (8,356평)

□ 사업기간 : '84 ~ '87

□ 사업비 : 146 억원 (국고10 , 지방비 136)

나. 시설현황

시 설 명	동수	면적(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2	16,578	경매장,중도매인점포 법인사무실,	
수산물시장	. 2	4,297	경매장,중도매인점포(28)	
직판시장 및	2	3,240	직판시장,관련상품시장	
관련 상품시장	2	1,821	관리사무실,식당,새마을금고	
관리 금융동	1	441	휴게실,식당,이용원	,
기타	3	684	경비실,오물처리장,후숙실	
주차장		11,041	동시주차능력 744 면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 대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 구 : 2담당 13명(관리담당, 운영담당)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취급	자본금	주주		임	직 원	수		주거래	주거래
법인명		1		പ് പ്		직 원		ન્ યો	중도매	구기대 매참인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메살인
대전청과	청과	1,300	10	6()	15(12)	-	15(12)	21(12)	96	
대전중앙 청과	청과	1,300	9	6(5)	18(16)	-	18(16)	24(21)	147	
대전수산	수산	1,500	1	2()	10(-5)	4()	14(5)	16(5)	39	
한밭건해	건어	200	6	3()	1(1)	1()	5(3)	5(3)	15	1
대양식품	축산	1,300	59	9()	13(3)	_	13(3)	22(3)	11	16
농 협 대 전 공판장	청과	-	-	_	7(7)	3()	10()	10(7)	119	_

주) 1.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362	_	453	124	99	1
수산	54	1	64	52	16	
축산	11	16	4	22	_	_
계	427	17	521	198	115	1

마. 거래실적

(단위: 천톤, 억원)

фгн	청	과	수	수 산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88	88	248	16	95	6	159	104	502
'90	89	372	15	127	9	280	113	779
' 92	210	935	17	156	10	337	237	1,428
' 94	230	1,364	15	199	9	356	254	1,919
' 96	250	1,552	13	180	11	491	275	2,223
' 97	272	1,714	12	195	13	622	297	2,531
'98	249	1,673	12	193	12	605	273	2,471

^{2.} 대양식품은 일반법정도매시장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업무관할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904-10

□ 연혁

○ '86. 8. 농수산물유통단지 도시계획시설 설정(건설부고시366호)

○ '90. 2. 10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

ㅇ '90. 3. 20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41,011 m² (12,406평), 건물 22,647 m² 6,851평)

□ 사업기간: '88. 12. 9 ~ '90. 2. 10

□ 사업비: 71 억원 (국고 27, 지방비 44)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1	12,916	경매장,중도매인점포 (104),	
			법인사무실,	
관리동	1	565	관리사무실	
서비스동	1	149	식당	
기타	3	165	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4,158	동시주차능력 277대	,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계 (관리계, 운영계)

(단위 : 원)

	,			,	나 무 즈					·龙 이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청원 경찰
정원	11	- .	1	2	2	2	7	_	4	5
현원	11		1	2	2	2	7		4	5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취급	자본금 주주			임		수		주거래	주거 래
법인명	기 부류	(백만원)	구 구	임원	.) = -	직 원		계	중도매	매참인
					사무직	기능직	소계	www	인	
울산중앙청과	청과	300	13	3(1)	11(4)	2(-)	13(4)	16(5)	74	1
울산배원협(공)	청과	_		_	14(5)	6(-)	20(5)	20(5)	69	1
울산중앙수산	수산	100	13	3(-)	5(3)		5(3)	8(3)	24	_
울산건해	건어	200	8	2(1)	3(1)		3(1)	5(2)	31	_
울산수협(공)	수산		_	· —	5(2)	_	5(2)	5(2)	21	_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소대행업자
청과	143(-)	2	198	_	50	_
수산	76(-)	_	63		9	_
계	219(-)	2	261		59	_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서도버	청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5	73	565	11	197	-	_	84	762	
'96	75	656	12	208	_	_	87	864	
'97	83	· 709	13	222	-	-	96	931	
'98	84	670	10	202	_	_	94	872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29

□ 연혁

o '89. 2.

도매시장 건설계획 수립

o '91. 7.

건설공사 착공

o '92. 11.

건설공사 준공

ㅇ '93. 3.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56,925 m² (17,220 평) , 건물 21,220 m² (6,419 평)

□ 사업기간: '85. 2 ~ '92. 11

□ 사업비 : 198 억원 (국고 24, 지방비 163)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크	고
청과물시장	4	13,322	경매장,중도매인점포(206)		
수산물시장			법인사무실		
ग्रेजो भो यो नो	1	0.040	기에 가지 헤러 사꾸 가지		
지판시장 및 관련상품시장	1	2,843	직판시장,관련상품시장		
관리 금융동	1	581	관리사무실,금융점		
서비스동및 기타	1		휴게실,식당,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10,950	동시주차능력 591 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계 (관리계,운영계)

		A) A)		사 무 직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26	_	1	2	3	3	9	-	7	10
현원	26		1	2	3	3	9	_	8	9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명)

									ا نا ۱	11 1. 07
	えコユ	기비그	주주		임		주거래	주거래		
법인명	취급	자본금	' '			직 원			중도매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수원청과	청과	610	4	5(1)	17(5)		17(5)	22(6)	48	1
세류청과	청과	200	7	6(-)	19(5)	-	19(5)	25(5)	56	1
수원원협(공)	청과	_	-	9(-)	10(5)	_	10(5)	19(5)	44	3
수원수산	수산	100	5	3(-)	6(2)	_	6(2)	15(2)	36	4
경기남부수협(공)	수산	-	-	13(-)	6(2)	_	6(2)	19(2)	29	1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148(-)	5	190	30	68	
수산	66(-)	5	75	64	17	시장전체
축산	-()	_	_	-	_	1개업체
양곡	-()		_	_	_	
계	214(-)	10	265	94	85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3	79	495	9	134	_	_	88	628
' 94	86	771	11	185		,	97	956
'95	100	831	10	191		_	110	1,022
'96	110	976	12	227		· <u> </u>	122	1,203
:97	119	1,072	11	229	_	<u> </u>	130	1,301
'98	116	1,068	12	237	_		128	1,305

구리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 연혁

○ '94. 4. 6 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ㅇ '96. 12. 14 도매시장 건설공사 준공

○ '97. 6. 9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186,575 m² (56,438평), 건물 122,907 m² (37,179평)

□ 사업기간: '94. 4 ~ '96. 12

□ 사업비 : 1,136 억원 (국고 568, 지방비 568)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m²)	세부시설내역	비 그	17
청과물시장	3	78,878	경매장,중도매인점포(268), 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		
			임대사무실		
트럭단위경매장	1	6,415	경매장,중도매인점포(52)		
고추,마늘시장	1	1,433	경매장,중도매인점포(16)		
수산물시장	1	34,348	경매장,중도매인점포		
	_	(본동에 포함)	법인사무실		
관리 금융동	1	(20 11 22 11)	관리사무소,금융점,우체국		
서비스동 등		(본동에 포함)	휴게실,식당,약국,경비실		
주차장		1,833	동시주차능력 3,421대	· .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기구 : 5팀 11계

				,	사 무 조	}				첫워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청원 경찰
정원	85	2	_	4	9	25	38	31	_	14
현원	82	2	2	2	8	32	44	23	_	13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 -7	-1 H -7	スス		임	직 원	수		주거래	スココ)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직 원		33	중도매	주거래
1 2 3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구리청과	청과	5,000	9	7()	49(18)	1	49(18)	56(18)	114	5
고려청과	청과	5,000	9	6()	35(13)	_	35(13)	41(13)	110	1
농협구리(공)	청과	_	, -	1()	23(10)		23(10)	24(10)	110	8
강북수산	수산	4,050	23	5()	19(9)	-	19(9)	24(10)	73	. 2
수협구리(공)	수산	_	-	1()	21(8)	_	21(8)	22(8)	60	8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十十 包	중도매인	매매점기단	T省3	4470	아ㅋ현	대행업자
청과	334(334)	14	49	_	209	1
수산	133(133)	10	217		65	1
계	467(467)	24	266	_	274	2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ਨੀ ਸਾਮੀ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7	184	1,498	49	628	_	_	233	2,126	
' 98	209	1,842	70	911	_	_	279	2,753	

(2)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청과)

ㅇ '98년 : 물량 1,824톤, 금액 3,271백만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

□ 연혁

ㅇ '93. 12. 24 도매시장 기본계획 완료

○ '94. 9. 28 건축공사 착공

ㅇ '97. 9. 6 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83,207m² (25,170평), 건물 63,641m² (19,251평)

□ 사업기간 : '92 ~ '97

□ 사업비 : 742 억원 (국고 361 , 지방비 381)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时	고
청과물시장	1	32,361	경매장,중도매인사무실(128),법 인사무실,저온저장고,하역반휴 게실	,	
트럭단위경매장 관련상품시장 관리 금융동 및 서비스동 기타 주차장	3 1 1	3,234 2,149 6,390 367 14,677	경매장,중도매인사무실(120) 관련상품시장 관리사무실,금융점,휴게실, 식당,기타시설 경비실,오물처리장 동시주차능력 1,279대		· ·

주). ()는 중도매인사무실 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1과 3계

(단위 : 명)

				j	나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25	_	1	3	7	5	16	_	9	-
현원	45		1	3	6	6	16		11	18

주) 청원경찰은 정원에 미포함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 ~7.	-) H7	スス		임		주거래	Z11)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را دا		직 원		- -11	중도매	주거래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태원농산	청과	6,000	19	11(-)	29(8)	31(-)	60(8)	71(16)	133	3
안양원협(공)	청과	_		8(-)	23(9)	2(-)	25(9)	33(9)	127	58
동안수산	수산	5,000	14	4(1)	7(1)	11(-)	18(1)	22(2)	65	7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260(10)	61	51	-	57	
수산	65(39)	7	55	53	22	·
계	325(49)	68	106	53	79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거래현황

(다위 : 청톤 억워)

연도별	청과		수 산		축	산	합 계	
12.10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7	45	367	7	140	_		52	507
'98	112	896	13	255	_	_	125	1,151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이동 528

□ 연혁

ㅇ '94. 2. 28 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 '96. 1. 1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개설

○ '98. 2. 27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42,499 m² (12,856평), 건물 19,987 m² (6,046평)

□ 사업기간 : '94. 2. 28 ~ '97. 10. 18

□ 사업비 : 266 억원 (국고37.5 , 지방비 228.5)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동	1	7,207	경매장,중도매인점포 (40),	
			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	
수산동	1	6,492	중도매인점포(40),법인사무실	
트럭단위경매장	1	1,068	경매장	
관련상품시장	1	3,603	가공식품매장,활어경매장	
관리 금융동 및	1	2,296	관리사무실,은행,휴게실,	
서비스동			식당,회의실 등	
기타	16	390	경비실,오물처리장,옥외화장실	
주차장		17,532	동시주차능력 751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1과 2계

7 13 73 63 6	اد د		, 	사 무 직		-1 A -1	-) L -)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급 8급이하 소계		기술직	기당식	경찰
정원	23		1	2	4	2	9		5	9
현원	22	_	1	2	3	4	10	-	5	5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법인명	취급부류	자본금 (백만원)	주주 수	임원	임 사무직	직 원 직 원 기능직	수 소계	계	주거래 중도매 인	주거래 매참인
안산농협	청과		_	_	10(4)	_	10(4)	10(4)	43	8
국제청과	청과	400	6	6	19(6)	1	20(6)	26(6)	40	
안산수산	수산	400	3	2(1)	8(4)	2(-)	10(4)	12(5)	25	1
경기남부수협 안산(공)	수산	_	_	_	3(2)	3(2)	6(4)	6(4)	24	. 1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소대행업자
청과	83(3)	8	26	30		
수산	49(5)	4	44	_	용역계약	용역계약
축산	_	-	-	_	(2업체)	(1업체)
양곡	_	_		-		
계	132(8)	12	70	30	2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 천톤, 억원)

ſ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언노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8	33.1	301	8.6	163	_	_	41.7	463

춘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33-1

연혁

o '92, 12, 4 농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 수립

ㅇ '94. 3. 18 건설공사 착공

○ '96. 9. 3 춘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31,150㎡ (9,423평), 건물 10,708㎡ (3,239평)

□ 사업기간: '92. 6 ~ '96. 9

□ 사업비 : 111 억원 (국고47, 지방비 49, 농안기금15)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 및 관리동	1		경매장,중도매인점포 (40), 법인사무실,식당,금융점포, 저온저장고,임대사무실 등 경매장	
관련상품동 기타 주차장	1 3	890 185 4,196	관련상품시장(수산,건어물 등) 경비실,쓰레기처리장,가바나실 동시주차능력 279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 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 춘천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계 (관리계, 운영계)

				,	사 무 즈	4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15	_	1	2	1	1	5	1	3	6
현원	11		1	1	_	1	3	1	3	4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임	직 원 직 원	수		주거래 중도매	[수거래]
월인경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공도메 인	매참인
호반농산	청과	600	5	3(-)	5(3)	-()	5(3)	8(3)	25	3
춘천원협(공)	청과	700	-	_	7(3)	3()	10(3)	10(3)	17	2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47(-)	5	16	, –	13	1
수산	_	_	_	_	_	
축산				-		_
양곡	_			_	-	
계	47(-)	5	16	_	13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也工程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6	7	77	_	_	_	_	7	77
'97	17	198	_	_	_	-	17	198
' 98	12	129		_	-		12	129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210

□ 연혁

○ '88. 10. 8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준공

○ '88. 11. 1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34,380㎡ (10,400평), 건물 20,066㎡ (6,070평)

□ 사업기간: '86. 3 ~ '88. 10

□ 사업비 : 58 억원 (국고 10, 지방비 13, 농안기금 35)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및	1	6,075	경매장,중도매인사무실(123),	
수산물시장	1	1,000	법인사무실,	
			저온저장고,임대사무실	
직판 및 관련	1	3,102	수산물소매시장,관련상품시장	
상품시장				
관리.금융동 및	1	3,216	관리사무실,금융점,식당,약국,	
기타		,	기타	
주차장		287 면	동시주차능력 287 대	

주), ()는 중도매인사무실 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담당 (관리담당, 운영담당)

, , , , ,		43.43		j	아 무 즈		7) 1- 7)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15	_	1	2	2	2	7	<u></u> .	2	6
현원	15	_	1	2	2	2	7	_	2	6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취급	자본금	주주		임	직 원	수		주거래	주거래
법인명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직 원 기능직	소계	계	중도매 인	매참인
청주청과	청과	634	27	11(3)	7(-)	9(5)	16(5)	27(8)	62	2
충북원협청주(공)	청과	_		-()	12(7)	6(-)	18(7)	18(7)	48	2
청주수산	수산	150	6	3(1)	6(2)	5(-)	11(2)	14(3)	13	31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년 큰 HJ	スヒ메ム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부류별	중도매인	메메삼기원	一个百分	44781	ा न स	대행업자
청과	110(-)	4	. 326	_	65	관련유통
수산	13(-)	31	66		65	업자로구성
계	123(-)	35	392	_	95	-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성도배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4	100	585	4	53	-	-	104	638
' 95	104	605	5	69	_	-	109	674
' 96	97	702	6	85	-	_	103	787
' 97	96	744	6	94			102	838
' 98	85	699	4	87	_		89	786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충북 충주시 목행동 426-4

□ 연혁

○ '95. 11. 15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96. 11. 2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 개장

□ 규모 : 부지 28,278㎡ (8,554평), 건물 8,456㎡ (2,558평)

□ 사업기간: '92 ~ '95

□ 사업비 : 80 억원 (국고 24, 지방비 49, 기타 7)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2	4,383	경매장,중도매인점포 (52),	
			법인사무실, 저온저장고	
수산물시장	1	2,619	경매장,중도매인점포(2),냉장실	
관리 금융동	1	1,263	관리사무실,금융점	
기타		382		
주차장		19,631	동시주차능력 6,543 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현황

□ 관리기구명: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충주시 농업정책과 소속

				,	사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천 경찰
정원	10	_	1	1	1	1	4	_	2	4
현원	8	_	1	1	1	1	4		2	2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법인명	취급부류	자본금 (백만원)	주주 수	임원	임 사무직	직 원	수 소계	계	주거래 중도매 인	수거래
충주청과	청과	510		7(2)	10(1)	_	10(1)	17(3)		_
충북원협충주(공)	청과	_		6(-)	8(2)	_	8(2)	14(2)	- 33	
충주수산	수산	510		4(1)	7(1)		7(1)	11(2)	14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소대행업자
청과	64(2)	10	3	-	10	
수산	14(1)		20	-	. 3	1
축산	_			_	_	
양곡	_	_	_	-	_	
계	78(3)	10	23	_	13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선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5	1	8	1	13		_	2	21	
' 96	22	140	1	23	_		23	163	
[,] 97	22	178	2	24		_	24	202	
'98	18	165	2	25	_		20	190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88-1

□ 연혁

○ '93. 12. 8 건설공사 착공

ㅇ '95. 5. 4 공사준공

○ '95. 7. 18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43,670m² (13,210평), 건물 14,474m² (4,378평)

□ 사업기간 : '92 ~ '95.5('98확장완료)

□ 사업비: 99 억원 (국고 31, 지방비 37, 농안기금 31)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평)	세부시설내역	비고	_
청과물동 건채류동 채소동 수산물동 관리동 주차장	1 1 2 1 1	2,397 156 988 373 283	경매장,중도매인점포(42) 경매장,중도매인점포(9) 경매장,중도매인점포(49) 동시주차능력 300대	,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천안시 농정과 농산물유통계 소속

				/	사 무 즈	}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천 경찰
정원	10	_	1	1	2	1	5	-	1	·5
현원	10	_	1	1	2	. 1	5		1	5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1 -7	-) H -7	주주		임		주거래	スココ		
법인명	취급	자본금	1 1	<u>ما ما</u>		직 원		- <u>1</u>]]	중도매	주거래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천안청과	청과	315	8	8(3)	9(2)	4(-)	13(2)	21(5)	41	
천안농협(공)	청과	3,376	_	7(-)	7(3)	1(-)	8(3)	15(3)	31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72(-)	-	102		38	1
수산			-	19	_	-
축산	_	_		_	_	_
양곡	_	_	_		_	_
계	72()	-	102	19	38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Ī	어드HI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5	24	164	_				24	164	
ſ	'96	55	454	_	-	-	1	55	454	
	'97	58	508	_	_	_	_	58	508	
	' 98	66	481	į.				67	512	

(2)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청과)

ㅇ '98년 : 물량 1,746톤, 금액 21억원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

□ 연혁

○ '90. 3. 14 도매시장 건설사업계획 확정

○ '93. 4. 19 토목,건축공사 준공

○ '93. 10. 29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50,578 m² (18,022 평) , 건물 24,292 m² (7,348 평)

□ 사업기간: '89. 4 ~ '93. 10

□ 사업비 : 162 억원 (국고 52 , 지방비 110)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1	12,731	경매장,중도매인점포 (100),	
수산물시장	1	8,512	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임대사	
			무실 등	
채소경매장	1	1,451	경매장	
관리.금융동 및	1	1,517	관리사무실,식당,약국,이발소,	
서비스동			슈퍼,다방 등	
기타	2	81	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12,750	동시주차능력 517대	,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전주시 산업진흥과 도매시장관리담당

				,	아 무 직]				청원
구분	계	임원	6급	.7급	8급	9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9		1	_	1 .	1	3	_	2	4
현원	9	-	1	1	1		3	_	2	4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법인명	취급 부류	자본금 (백만원)	주주 수	임원	임 사무직	직 원 직 원 기능직	수 소계		<u>주</u> ㄷ ਜ਼	수거래
전주청과	청과	340	6	4(1)	19(8)	1(-)	20(8)	24(9)	33	_
전주원협(공)	청과	_	-	10(-)	36(8)	-(-)	36(8)	46(8)	58	
전주수산	수산	300	7	3(1)	5(2)	8(-)	13(2)	16(3)	32	
수협전주(공)	수산	_	_	_	8(2)	3(-)	11(2)	12(3)	28	14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早 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91()		296	_	44	
수산	60()	14	121	_	7	_
축산			· —	_	` -	
양곡	_		_			_
계	151()	14	417	_	51	_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전도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4	82	616	8	176	-	·	90	792
'95	93	631	4	110	_	1	97	741
'96	85	745	5	145	-	_	90	890
'97	88	762	5	147	_	-	93	909
'98	85	697	7	158		_	92	855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전북 익산시 목천동 916-4

여혈

ㅇ '95. 12. 29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 '98. 1. 5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109,047 m² (32,986평), 건물 20,404 m² (6,172평)

□ 사업기간: '93 ~ '97

□ 사업비 : 192.3 억원 (국고 90, 지방비 61.3, 농안기금 42)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	고
청과물동	1	11,303	경매장,잔품보관소, 중도매인		
·			사무실,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		
			시장관련사무실		·
수산물동	1	3,494	경매장,중도매인점포(22)		
			법인사무실,냉동창고,기타		
트럭판매장	1	3,416	경매장,중도매인・출하주대기실		
관리동	1	1,960	관리사무실,금융기관,전기실,회의실		
기타	5	231	경비실,오・폐수처리장		
주차장		38,059	동시주차능력 798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익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담당

				į	사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12	_	1	2	1	5	9		1	2
현원	12	_	1	2	1	3	7	_	3	2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법인명	취급	자본금	주주	43.43	임	직 원 직 원	수		주거래 중도매	수거래
	부류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이리청과	청과	600	4	4(-)	3(-)	7(6)	10(6)	14(6)	22	_
익산원협(공)	청과	3,500	_	1(-)	25(12)	2(-)	27(12)	28(12)	37	
이리수산	수산	300	4	2(-)	6(4)	2(-)	8(4)	10(4)	20	2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59(-)		27	_	33	1
수산	20(1)	2	25	-	-	1
축산	-	-		-	_	-
양곡	_		_	_	. –	-
계	79(1)	2	52	_	33	2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어드H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8	61	468	1	26	· -	-	62	494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953-7

□ 연혁

ㅇ '96. 5. 농산물도매시장 건축물 준공

o '97. 4.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25,090㎡ (7,590평), 건물 6,758㎡ (2,042평)

□ 사업기간 : '95. 7 ~ '96. 5

□ 사업비: 59 억원 (도비34, 시비25)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1	6,634	경매장,중도매인점포(49), 법인사무실,식당,휴게실, 등	
기타	2	124	경비실,오물처리장 등	
주차장		2,537	동시주차능력 180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안동시 농축산유통과 유통시설담당 소속

				,	사 무 즈]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_	_	_	_	-	-	_	_	_	
현원	10	-	_	1	2	1	4		3	3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 명)

법인명	취급 부류	자본금 (백만원)	주주 수	임원	임 사무직	직 원 직 원 기능직	수 소계	계	[주 도 대	[수거래]
안동청과	청과	40	_	4()	8(3)	2()	10(3)	14(3)	23	_
안동농협(공)	청과		_	-()	9(3)	.2()	11(3)	11(3)	26	1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49(-)	1	78	_	80	-
수산	-	-	-			_
축산	_	_		-	_	-
양곡	-	-	_	_		
계	49(-)	1	78	_	80	-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 천톤, 억원)

어도뱀	청	과	수 산		축	산	합계	
연도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7	41	313			_	_	41	313
'98	43	367	_	_	-		43	367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가. 시장개요

□ 위치 : 경남 창원시 팔용동 7.

□ 연혁

ㅇ '93. 10. 4 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o '95. 8. 2 도매시장 건설공사 준공

○ '95. 10. 14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 규모 : 부지 56,884m² (17,207평), 건물 30,724m² (9,294평)

□ 사업기간 : '93. 10 ~'95. 8

□ 사업비 : 360 억원 (국비 133, 지방비 127, 농안기금100)

나. 시설현황

시설명	동수	면적 (m²)	세부시설내역	비고
청과물시장	1	20,561	경매장,중도매인점포 (69),	
			법인사무실,저온저장고	
트럭단위판매장	1	1,544	경매장	
직판시장 및	1	5,715	직판시장,관련상품시장,식당	
관련 상품시장				
관리 금융동	1	919	관리사무실,농협금융점	
,	(청과동	면적에포함)		
서비스동	1	99	휴게실,식당,목욕탕,약국,기숙사	
		0.40		
기타	3	348	경비실,오물처리장	
주차장			동시주차능력 665대	

주) ()는 중도매인 점포수임

다. 관리조직

□ 관리기구명 : 창원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기구 : 2 담당(관리담당, 운영담당)

									\ L= /	
				人	나 무 직			청원		
구분	계	임원	5급	6급	7급	8급 이하	소계	기술직	기능직	경찰
정원	28	_	1	2	2	2	7		2	19
<u>현</u> 원	15		1	2	2	2	7		3	5

(1) 입주 도매법인 및 공판장 현황

(단위: 명)

			기버그	주주		임	주거래	주거 래			
	법인명	취급	자본금		۵) (c)	`	직 원		~1)	중도매	•
		부류 (백	(백만원)	수	임원	사무직	기능직	소계	계	인	매참인
	경남청과	청과	2,000	5	5(2)	14(2)	-	14(2)	19(4)	34	_
,	농협창원(공)	청과	_	-		9(3)	_	9(3)	9(3)	37	2

주) ()는 경매사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2) 관련 유통업자 현황

(단위 : 명)

부류별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수집상	직판상인	하역원	청 소 대행업자
청과	72	2	129	136	32	1
수산			-	13	_	_
축산		_	,	4	_	
양곡	_	_		3	· –	
계	72	2	129	156	32	1

주) ()는 중도매법인으로 전체수에 포함된 수임.

마. 거래실적

(1) 부류별 거래현황

(단위: 천톤, 억원)

연도별	청 과		수 산		축	산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95	15	116	_	_	_	1	15	116	
'96	34	345	. –		_		34	345	
'97	59	495	_	_		-	59	495	
'98	54	422	_		_	_	54	422	

5. 건설중인 공영도매시장 현황 (14개소)

(단위:천평, 백만원)

C			(단위:선평							, 맥만원)	
	77	모	건설	-1 41	총	사업 1	3]	국그	2투자실	적	진도
지역명	부지	건물	기간	착공일	국고	지방비	계	'98까지	'99예산 현 액	'00계획	('99.1월말)
서울 서남	43.5	29.3	'94–'00	'97.12.31	53,360	145,446	198,806	35,595	7,000	10,765	8
부산 동부	45.8	22.1	'94–'99	'96.12.19	33,925	60,116	94,041	19,956	13,969	-	55
인천 삼산	31.5	16.9	'95–'00	' 97.12.26	31,413	49,508	80,921	18,923	6,245	6,245	15
광주 제2	35.7	15.8	'94-'00	'99하반기	33,392	34,008	67,400	6,819	12,890	13,683	하반기착공
대전 노은	34.0	13.1	'96–'00	' 98.5.22	41,040	53,480	94,520	37,049	_	846	10
(경기 성남)	(25.5)	(16.7)	('96–'99)	('97.7.28)	(38,600)	(38,600)	(77,200)	(23,241)	8,399	-	물류센타
(고양)	(40.9)	(19.4)	('96–'00)	('98.4.27)	(45,597)	(45,598)	(91,195)	(34,108)	-	_	물류센타
강원 원주	13.8	4.1	'97–'00	'99. 3	13,546	12,405	25,951	6,300	1,331	4,591	3월중착공
강릉	21.0	4.6	'95–'99	['] 98. 3.20	10,675	8,689	19,364	7,200	2,346	-	50
전북 정읍	19.8	4.3	95-'98	'97.11.27	6,715	6,715	13,430	4,575	2,140	_	80
전남 순천	22.5	7.3	'96-'00	' 98. 9.22	18,234	11,666	29,900	5,100	10,835	2,299	5
경북 포항	25.9	9.0	'95–'99	['] 98. 4.16	17,984	15,349	33,333	9,200	7,862	922	30
구미	25.1	7.0	'96–'00	' 99. 3	21,878	13,677	35,555	5,600	9,124	7,154	3월중착공
안동	6.0	1.7	'97-'99	['] 98.12.10	2,500	8,000	10,500	2,500	_	-	55
경남 마산	25.0	10.0	'97–'00	'99하반기	26,808	21,992	48,800	8,750	7,520	10,538	6월중착공
진주	18.2	10.9	'95–'99	'96.12.27	19,732	16,490	36,222	14,058	5,674		70
(확장)충주	5.0	1.7	'98-'00		1,200	1,200	2,400	500	700	,	
합계					332,402	458,741	791,143	182,125	96,035	57,043 -8,399 =48,644	'99 성남 사 업 비 공제

주) 물류센타로 전환된 성남과 고양의 ()부분은 합계에 포함안됨

서울 서남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ㅇ 위 치: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 규 모: 부지 43,474평(143,717㎡), 건물 29,345평(97,346㎡)

* 수협부지 9,179평(30,345m²) 제외

○ 총 사업비: 198,806(국고 53,360, 지방비 145,446)

○ 사업기간: '94~2000(착공 '97.12.31, 준공예정 2000.10)

ㅇ 주이용권 : 서울시 강서, 구로, 양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구 일부

○ 시공회사 : 동부건설(주), LG건설(주), 포스코개발(주), 삼능건설(주)

□ 년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년도별 집행내역							
중사람비		' 94	' 95	' 96	' 97	' 98	합 계			
국 고	53,360	165	_	27,682	6,148	_	33,995			
지방비	145,446	_	149	36,779	3,356	9,464	49,748			
계	198,806	165	149	64,461	9,504	9,464	83,743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물동(지하 2층, 지상 3층) 20,388평, 관리서비스동(지하 1층, 지상 8층) 5,481평, 트럭판매동(지상1층) 1,371평, 환경관리동(지상2층) 185평, 주차동(지하1층, 지 상3층) 1,895평, 경비실 2개동 12평 등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3) : 농협공판장, 민간도매시장법인 2개

□ 추진상황

○ '94. 9.10 :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결정(외발산동213)

ㅇ '95. 6. 9 :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원으로 건립부지 변경 결정

ㅇ '97.12.31 : 착공

ㅇ 2000.10 : 준공예정

부산 제2(동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석대동 일원

○ 규 모: 부지 45,843평(151,549㎡), 건물 22,100평(73,059㎡)

총 사업비: 94,041백만원(국고 33,925, 지방비 60,116)

사업기간: '94~'99 (착공 '96.12.19, 준공예정 '99.12)

ㅇ 주 이용권 : 부산광역시 동부, 양산시

○ 시공회사 : 동부건설(주), 쌍용건설(주), 자유건설(주)

□ 년도별 투자내역

	초기어비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4	' 95	' 96	' 97	'98	합 계				
국 고	33,925	_	3,440	9,616	6,184	2,584	21,824				
지방비	60,116	68	48	857	15,409	13,390	29,772				
계	94,041	68	3,488	10,473	21,593	15,974	51,596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물동 및 관리동(지하1층, 지상2층) 15,606평, 트럭판매동 2개동 1,513평, 고추마늘판매동 831평, 관련상품동(지하1층, 지상2층) 3,488평, 서비스동(지하1층, 지상2층) 549평, 쓰레기처리장동 98평, 수위실동 4개동 15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3) : 농협공판장, 민간법인 2

□ 추진상황

ㅇ '95. 3.14 : 개발제한구역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허용(건설교통부)

○ '96.12.19 : 기공식 개최(착공)

ㅇ '99.12 : 준공예정

인천 제2(삼산) 농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번지

○ 규 모 : 부지 31,502평(104,140㎡), 건물 16,949평(56,029㎡)

○ 총 사업비 : 80,921백만원 (국고31,413, 지방비49,508)

ㅇ 사업기간 : '95~2000 (착공 '97.12.26, 준공예정 2000.5)

ㅇ 주 이용권 : 인천 북서부, 강화, 김포, 부천시 일부

ㅇ 시공회사 : 남해종합개발, (주)우정건설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ઢ ગ હો ઘો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6	'97	'98	합 계			
국 고	31,413	4,500	6,750	4,449	15,699			
지방비	49,508	4,026	3,631	394	8,051			
계	80,921	8,526	10,381	4,843	23,750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물동(지하1층, 지상5층) 15,634평, 다목적경매장(지상2층) 1,028평,
 쓰레기처리장(지상2층) 243평, 옥외화장실 26평, 수위실 2개동 18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3) : 공판장, 민간법인 2

□ 추진상황

ㅇ '95. 3.29 : 연구용역사업 완료(한국산업경제연구원)

○ '97.12.26 : 시설공사 착공

ㅇ 2000. 5 : 준공예정

광주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이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내

○ 규 모 : 부지 35,671평(117,920㎡), 건물 15,800평(52,231㎡)

o 총 사업비: 67.400백만원 (국고 33,392, 지방비 34,008)

o 사업기간: '94~2000 (착공예정 '99 하반기, 준공예정 2000년)

ㅇ 주 이용권 : 광주광역시, 전남 서남부

ㅇ 시공회사 : 미정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호기시미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4	' 95	' 96	'97	' 98	합계				
국 고	33,392			6,819	-	3,522	10,341				
지방비	34,008	39	39	5,003		1,824	6,905				
계	67,400	39	39	11,822	_	5,346	17,246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동 11,000평, 트럭판매동 1,500평, 관리 및 서비스동 1,500평, 오·폐수처리
 시설 150평, 관련도매상가 1,500평, 주요정비동 100평, 경비실 50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원협공판장, 민간법인

□ 추진상황

ㅇ '94. 3.24 :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조사

o '97.11. : 부지조성공사 착공(토지공사 : '97.11~'99.12)

ㅇ '98.11.25 : 광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물류센타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

대전 제2(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택지개발지구 217브럭

○ 규 모 : 부지 33,974평(112,310㎡), 건물 13,126평(43,393㎡)

○ 총 사업비 : 94,520백만원 (국고 41,040, 지방비 53,480)

사업기간: '96~2000 (착공 '98.5.22, 준공예정 2000.11)

ㅇ 주 이용권 : 대전광역시,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ㅇ 시공회사 : 계룡건설(주)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초기 어미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6	' 97	' 98	합 계			
국 고	41,040	3,000	9,000	25,049	37,049			
지방비	53,480	7,362	6,941	8,967	23,270			
계	94,520	10,362	15,941	34,016	60,319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동 및 서비스동(지하1층, 지상2층) 10,447평, 트럭판매동 2개동 831평, 양념류동 302평, 쓰레기 및 폐수처리동(지하1층, 지상1층) 248평, 관련상가 (지하1층, 지상2층) 1,270평, 경비실 28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원협공판장, 일반법인

□ 추진상황

ㅇ '95. 4.25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계획 확정(유성구 노은동)

ㅇ '98. 5.22 : 착공

ㅇ 2000.11 : 준공예정

워주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o 위 치: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74-3번지

○ 규 모: 부지 13,760평(45,488㎡), 건물 4,121평(13,626㎡)

총 사업비: 25,951백만원 (국고 13,546, 지방비 12,405)

o 사업기간: '95~2000 (착공예정 '99.2, 준공예정 2000년)

o 주 이용권: 원주·제천시, 횡성·영월·평창·정선군

ㅇ 시공회사 : 미정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호기시네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6	' 97	' 98	합 계			
국 고	13,546	_	_	2,816	2,279	5,095			
지방비	12,405	45	62	. 35	471	613			
계	25,951	45	62	2,851	2,750	5,708			

□ 주요시설물 현황

○ 본관동(지하1층, 지상2층) 3,781평, 트럭판매장 267평, 관리실 및 공중화장실동 22평, 쓰레기처리장동 52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농협공판장, 민간법인

□ 추진상황

o '93.12.23 : 유통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

o '97. 6. 3 : 도매시장 위치변경승인(농림부)

ㅇ '99. 3 : 착공예정

ㅇ 2000. 12 : 준공예정

강릉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ㅇ 위 치: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160-1번지

○ 규 모 : 부지 21,010평(69,457㎡), 건물 4,582평(15,150㎡)

총 사업비: 19,364백만원 (국고 10,675, 지방비 8,689)

o 사업기간 : '95~'99(착공 '98.3.20, 준공예정 '99.9)

o 주 이용권: 강릉·동해·삼척·속초·태백시, 평창,정선,고성,양양군

o 시공회사: LG건설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호기어비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5	' 96	'97	' 98	합 계				
국 고	10,675	-	-	2,000	5,200	7,200				
지방비	8,689	47	13	140	5,040	5,246				
계	19,364	47	13	2,140	10,240	12,446				

□ 주요시설물 현황

청과물동(지하1층, 지상2층) 3,100평, 관련상품동(지상3층) 580평, 관리동
 (지하1층, 지상2층) 550평, 트럭판매동 268평, 오물처리장 59평, 경비실
 17평, LPG 저장소 8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농협공판장, 민간법인

□ 추진상황

ㅇ '95.12.21 :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결정

ㅇ '98.3.20 : 도매시장 건설공사 착공

ㅇ '99. 9 : 준공예정

정읍 농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o 위 치: 전북 정읍시 농소동 45-15

○ 규 모 : 부지 19,798평(65,449㎡), 건물 4,254(14,063㎡)

총 사업비 : 13,430백만원 (국고 6,715 지방비 6,715)

ㅇ 사업기간 : '95~'99 (착공일 '97.11.27, 준공예정 '99.8)

○ 주 이용권 : 정읍시, 부안·고창·순창·장성군

ㅇ 시공회사 : (주)홍건사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호기어미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5	' 96	'97	' 98	합 계				
국 고	6,715	1,575	2,000	1,000	-	4,575				
지방비	6,715	1,275	_	1,000	81	2,356				
계	13,430	2,850	2,000	2,000	81	6,931				

□ 주요시설물현황

청과동(지하1층, 지상2층) 2,541평, 채소동 508평, 고추동 1,143평,쓰레기처리장 62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현황

○ 청과(2) : 정읍원협공판장, 정일청과

□ 추진상황

ㅇ '95.10. 2 : 도매시장건설 부지변경 확정

ㅇ '97.12. 5 : 기공식

ㅇ '99. 8 : 준공예정

순천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이 위 치: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성산리

○ 규 모: 부지 22,524평(74,461 m²), 건물 7,314평(24,180 m²)

○ 총 사업비: 29,900백만원 (국고 18,234, 지방비 11,666)

○ 사업기간: '96~'00 (착공 '98.7, 준공 '99)

o 주 이용권 : 순천·여수·광양시, 구례·고흥·보성군

ㅇ 시공회사 : 미정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초기어비	년도별 투자액						
	총사업비	' 96	' 97	' 98	합 계			
국 고	18,234	_	3,000	1,919	4,919			
지방비	11,666	65	1,438	296	1,799			
계	29,900	65	4,438	2,215	6,718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

 청과물 및 관리동(지하1층, 지상2층) 6,194평, 간이판매장동 2개동 571평, 관련 상품동 414평, 쓰레기처리장동 90평, 옥외화장실 14평, 수위실 2개동 31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순천원협공판장, 민간법인 1

□ 추진상황

o '97. 5.16 :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확정(농림부)·

○ '98. 9.22 : 시설공사 착공(대림산업외 4개업체)

ㅇ '99.12 : 준공예정

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ㅇ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리 산 112-3

○ 건설규모 : 부지 25,940평(85,751㎡), 건물 9,009평(29,783㎡)

ㅇ 총 사업비 : 33,333백만원 (국고 17,984, 지방비 15,349)

o 사업기간 : '95~2000 (착공 '98.4.16, 준공 '99.10)

o 주 이용권: 포항·경주시, 영덕·울진·청송군

ㅇ 시공회사 : 삼성물산외 3개업체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년도별 투자액						
	중사원미	' 95	' 96	' 97	' 98	합 계		
국 고	17,984	39.5	342	1,723	1,974.5	4,079		
지방비	15,349	39.5	342	1,723	1,974.5	4,079		
계	33,333	79	684	3,446	3,949	8,158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

 청과물동(지하1층, 지상2층) 5,529평, 수산물동(지하1층, 지상2층) 2,408평, 관리동
 (지하1층, 지상1층) 509평, 트럭단위판매동 439평, 오폐수처리동 73평, 일반쓰 레기동 27평, 경비실 2개동 24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민간법인 2

□ 추진상황

o '95. 1. :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 확정

○ '98. 4.15 : 공사착공(공사기간 18개월)

ㅇ '98. 4.16 : 공사중지(매장문화재 출토로 인한 공사중지)

ㅇ '98.10.30 : 도매시장 건설공사 재개

ㅇ '99.10 : 준공예정

구미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 사업개요

ㅇ 위 치: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

○ 규 모: 부지 25,122평(83,049㎡), 건물 7,030평(23,238㎡)

총 사업비: 35,555백만원 (국고 21,878, 지방비 13,677)

○ 사업기간 : '96 ~ 2000 (착공 '99.2, 준공 2000)

ㅇ 주 이용권 : 구미, 김천, 상주시, 의성, 칠곡, 성주군

ㅇ 시공회사 : 미정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년도별 투자액						
	0/111	'96	' 97	' 98	합 계			
국 고	21,878	_	3,837	860	4,697			
지방비	13,677	70	3,862	614	4,546			
계	35,555	70	7,699	1,474	9,243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

○ 청과물동(지하1층, 지상3층) 5,940평, 관리사무소및서비스동(지하1층, 지상2층) 879평, 트럭판매장동 109평, 쓰레기처리장동 89평, 가스저장소동 13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 추진상황

○ '96. 4.19 :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KREI)

ㅇ '99. 3 : 착공예정

ㅇ 2000.12 : 준공예정

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개요

이 위 치: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중리지구

○ 규 모: 부지 25,000평(82,645㎡), 건물 9,980평(32,992㎡)

o 총 사업비: 48,800백만원 (국고 26,808, 지방비 21,992)

ㅇ 사업기간 : '97~2000 (착공 '99.2, 준공 2000.11)

o 주 이용권: 마산시, 함안·의령·창녕·고성군

ㅇ 시공회사 : 미정

□ 년도별 투자내역

(단위:백만원)

-	총사업비	'96	. ' 97	'98	합 계
국 고	26,808			8,750	8,750
지방비	21,992	100	40	5,729	5,869
 계	48,800	100	40	14,479	14,619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

 청과물 및 관리사무소동(지하1층, 지상2층) 7,876평, 서비스시설동 421평, 고추· 마늘판매장동 253평, 트럭판매동 485평, 직판장 및 관련상품동 314평, 화훼 시장동 418평, 쓰레기처리장동 90평, 주유소동 114평, 경비실 9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0 청과(2)

□ 추진상황

ㅇ '97.10. 2 : 기본계획 승인(농림부)

ㅇ '98.12.31 : 도시계획세부결정 납품 → 시설결정 고시 및 지정고시

ㅇ '99. 3 : 착공예정

ㅇ 2000.11 : 준공예정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 건설개요

이 위 치 : 경남 진주시 초전동 260번지 일위

○ 규 모 : 부지 18,181평(60,103㎡), 건물 10,945평(36,182㎡)

○ 총 건설비 : 36,222백만원 (국고 19,732, 지방비 16,490)

o 건설기간: '95~'99 (착공 '96.12.27, 준공 '99.6)

ㅇ 주 이용권 : 진주, 사천시 등 서부경남

ㅇ 시공회사 : 삼성물산 등 4개사

□ 년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	' 95	' 96	'97	' 98	합 계
국 고	19,732	1,015	3,074	5,820	5,685	15,594
지방비	16,490	1,294	2,877	400	7,153	11,724
계	36,222	2,309	5,951	6,220	12,838	27,318

□ 주요시설물 설치계획

청과물관리동(지하1층, 지상2층) 9,491평, 트럭판매동 74평, 고추·마늘판매동 215평, 관련상품동(지하1층, 지상2층) 1,074평, 쓰레기처리장동 63평, 수위실 2개동 16평, 가버너실 3평, LPG뱅크실 9평

□ 도매시장법인 입주계획

ㅇ 청과(2): 진주원협공판장, 중앙청과

□ 추진상황

ㅇ '95. 4.26 :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용역결과 확정

ㅇ '96.12.30 : 기공식

ㅇ '99. 6 : 준공예정

6. 외국의 도매시장 제도

가. 주요국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1) 프랑스

□ 개 요

- 1958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 대도시 외곽지역에 도매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공영도매시장(MIN: Marche'd 'Interet National) 을 건설
- oMIN은 1960년대 말까지 농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면서 발전하였으나 1970년이후 대규모 민간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중요성과 도매시장수가 점차 감소
- 공영도매시장수: (1970년대말) 26개소 → ('96) 17개소
- ○시장의 관리는 대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농업관련 기관의 지분 으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담당함.

□ 도매시장의 가격 결정

- ○도매시장의 가격은 시장원리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정부(농수산부 시장정보국)가 공급하는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시장정보가 전국적으로 소통됨으로써 가능함
- ○시장정보는 품목별, 품질별, 가격을 전일기준으로 최저가/중간가/최고가로 구분하여 수시로 제공되며,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유통센터 등 누구나 항시 동 시장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당일의 가격은 시장정보를 기준으로 형성되며, 도매상의 이윤은 관례적으로 10%선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경매에 의한 시장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경매에 의해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 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Bretagne 지방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에 경매 시장이 있으나, 일반도매시장에 비해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Rungis 도매시장 >

□ 시장규모

○총부지: 696천평(가락시장의 4배), 건평: 152천평(가락시장의 2.1배)

○점포 및 창고시설 : 총 1,710점포(실)

(단위: 점포, 실)

점 포 시 설			창	고 및 부대/	· 설
도매시설	소매시설	계	저온창고	기타시설	계 .
700	540	1,240	55	415	470

ㅇ취급물량 및 거래액(1996년)

- 파리지역 수산물 수요의 50%, 청과물 수요의 45%, 식육 수요의 35%, 화훼수요의 50% 공급

	청과물	축산물	낙농제품 및 식자재	수산물	화 훼	계
거래량 (천톤)	1,122	353	320	115	절화 36백만본 분화 19백만분	
거래액 (십억프랑)	12.3	9.1	4.9	4.1	1.9	32.3

□ 운영·관리

- ○프랑스 공영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은 중앙정부관계부처(농 림수산부, 상공부, 경제재무부, 내무부 등) 장관으로 구성되는 심의 위 원회(Committe de Tutelle)에서 결정
- ○공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각 지방정부로서, Rungis시장의 개설자는 파리시 정부지만시장 운영관리업무는 파리도매시장정비관리공사(SEMMARIS) 가 개설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수행
 - SEMMARIS의 자본금은 30.1백만프랑 : 중앙정부(57%), 파리시정부 (17%), 도청(7%)전문상인(14%) 및 기금출연(5%)으로 구성
 - SEMMARIS는 개설자의 보호감독하에 시장건설의 유지관리, 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 그리고 시장관련 이해집단의 분쟁조정역할 등을 수행

□ 거래방식 및 거래실태

-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 상호합의에 의해 가격을 정하는 전통적인 상대매매(수의매매) 방식을 택하며, 경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시장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회사 및 개인사업자는 사전에 SEM MARIS로부터 허가를 받고 시장사용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시장 규약 준수의무가 부여됨
- ○동 시장에 등록된 시장사용자는 도매상 600, 생산자 직판장 360, 서비스회사 370 및 구매자 약 21,200명으로 되어 있음
- ○청과물 도매상은 생산자 및 생산자조합, 산지시장 반출상(수송업자: Trucker) 그리고 수입상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아 통상 10~15%의 마진을 수취하고 각종 소매상 및 대량 실수요자에게 판매
- ○도매상은 구매허가증을 가진 소매상의 전화주문에 의해서도 판매하며, 전화주문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주문에 따라서는 정선, 재포장, 후숙까지 하 여 주문처에 배달

□ 도매시장내 직거래판매장

- ㅇ직거래시장 거래량은 도매시장 거래액의 2% 수준
- ㅇ주로 수도권인근 농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ㅇ직거래시장은 하역기계화를 위한 테크시설이나 고정시설 없이 비 가릮시설만 설치
- ○주로 유기농산물 등 고급 또는 신선농산물을 레스토랑이나 단골고 객과 거래하는 장소
- o1년 단위로 직거래 점포 계약을 하는데 직거래시장의 인기가 떨어져 20여개 점포가 미분양

□ 가격결정방법 및 경매제도

- ○정보·통신의 발달로(특히 Celluar phone) 다른 도매시장과 통화하고, 가격을 비교하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매없이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이 가능
- 공식적으로 최저가제도는 없고, 너무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반 발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간에 묵시적인 합의가격은 있음
- 경매없이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므로 상인들이 많이 모이는 레스토랑이 가격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Rungis 도매시장은 산지시장이 아닌 소비지시장이기 때문에 경매가 필요 없으며, 화훼·양돈·수산물은 산지에서 경매

□ 물류표준화, 하역기계화, 정보화

- ㅇ 도매상은 일종의 중소기업으로서 하역은 점원이 담당
- o 거의 100% Pallet에 적재되어 출하
- 포장재 보조는 상상할 수 없으며, 연간 전체쓰레기 발생 13만톤증
 포장재가 8만톤
- ㅇ 개장 30주년을 맞이하여 저온저장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개보수중
- o 매일 조사원이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하는데 Real Time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전일 거래가격 제공

(2) 벨기에

- o 2가지 형태의 도매시장이 운영됨
 - 생산자조합이 산지에 현대적 시설을 갖춰 운영하는 경매시장(23개소)
 - 시가 일정시설을 제공 상인들로 하여금 운영케 하는 시장(9개소)

< 브라바 채소경매장 (산지 경매시장) >

- ○설립자본금 및 참여자: 25천 US\$, 2천명(농민)
 - 순수 생산농민협동회사로 참여농민만 한정하여 경매출하

ㅇ거래방법

- 낙찰가격을 가르키는 경매시계를 이용한 하향식경매(고가에서 저가로)
- 경매에 필요한 품질, 수량, 등급, 새깔, 모든 정보를 전산화한 다음 샘플경매

< 미첼 경매장 >

- o 원예농업을 생산하는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공동참여 건립
- o경매방법
 - 낙찰가격을 가르키는 경매시계를 이용한 하향식경매(고가에서 저가로)
 - 설치된 6대의 경매시계중 2대는 타지역 경매정보를 알려주며, 타지역 경매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ㅇ동시경매 진행

- 같은 품목,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같은 시간에 전산망으로 상호 연결된 여러 경매장에서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바이어는 현재 있는 경매장에서 다른 경매장에 상장된 물품을 살 수 있음

(3) 네덜란드

- ○'30년대에 정부에서 모든 생산자가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법제화한 이래 1964년까지 법에 의해 강제되었음
- o 그러나 요즈음에는 경매회원이 아닌 생산자의 농산물은 경매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있음

< 암스테르담 도매시장 >

- ○1934년 암스테르담시에서 경매시장으로 개설 되었으나 20년전부터 경매를 하지 않는 도매시장
 - 120여개 도매상에 약 1,500여명이 종사, 네덜란드 유일의 도매시장
- ㅇ시공무원으로 구성된 관리사무소에서 도매시장을 관리
- ㅇ도매상 중심의 물류센타 기능 수행
 - 상거래는 완전한 자유경쟁체제로 상적 자치
 - ·원래의 상품을 배달할 때에는 세척,선별,포장을 하고 냉동냉장 상태로 팔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

(4) 미 국

- ○44개의 소비지 도매시장 존재(민간투자 16, 주정부투자 14 등)
- ㅇ도매시장 개설자는 주정부 또는 개인, 혼합된 형태가 있음
- ○도매시장내 주된 상활동 주체는 독립도매상(wholesaler)들이며 시장 관리는 자율적
- ㅇ주요 도매시장의 현황

지 역	크기(에이커)	운영주체	개장년도	입장수수료
애틀란타	146	주정부	1959	있음
보 스 턴	37.5	개인	1967	66
시 카 고	14	"	1925	없음
뉴 욕	113	"	1967	있음
필라델피아	20	"	1959	66

주) 1 acre 는 4,046.8m' (※ 가락동도매시장 부지 542,920m')

o 유통주체

- 과실,채소 등 부패성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근거법인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ct)는 농산물의 공정,

신속한 유통을 보장하고, 이에 종사하는 유통주체에 대해서는 특별 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Commission Merchant, dealer, broker
 [Commission Merchant]: 수수료를 받고 위탁 판매하는 자
 [dealer]: 도매업에 종사하는자
 - · 도매상, 분배업자, 기타도매업자
 - 년간 23,000 \$ 이상 취급하는 소매업자
 - 다른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생산자
 - * 감자를 제외한 품목으로 특정주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통조 림 또는 가공품을 위한 농산물을 구매하는 자는 dealer가 아님 [broker]: 판매자, 구매자 각각을 위해 농산물 매매시 중개업을 하 는 자
 - · 년간 23,000 \$ 이하의 냉동과실, 채소를 취급하는 독립적인 agent 는 broker에서 제외

[shipper]: 산지에서 생산자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 또는 분배하는 자 [Growers' agent]: 산지에서 생산자를 위하여 농산물을 판매 또는 분배하는 자

<뉴욕시 헌츠포인트 도매시장>

- ○개설: 1976년 뉴욕시가 설립, 직접 관리하다가 1986년부터 입주 도 매상의 대표로 구성된 Coop에 관리위탁
- ㅇ입주 도매상 : 약 70여개
- ㅇCoop의 구성 및 기능
 - 입주도매상들의 대표로 구성
 - 입주도매상 선정 및 임대료, 시장입장료 등 징수
 - 청소, 안전, 주차 등 실제 관리업무는 관리전문업체에 위탁

o물량집하

- 매취와 수탁이 병행되고 있으나 수탁의 경우는 좋은 물건이 오지 않고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이 많이 들며 출하자와의 분쟁소지가 있어 수탁의 비중은 낮음
- 매취시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 사전계약에 따라 가격을 재조정하기도 함

ㅇ도매상의 판매방식

- 수의매매 방식
- 이전에는 경매도 일부 있었으나 '87년 이후에는 일체 없어짐

(5) 대 만

□ 시장분포

구분	합계	대북시	기타 시지역	현지역
합계	160개소	4	18	138
종합시장	1		1	_
청과시장	70	2	5	63
축산시장	24	1	5	18
수산시장	65	1	7	57

주) '94년도 통계(대만성)

□ 시장등급별 현황

구분	합계	특등	1등	2등	3등	4등	5등
합계	160	2	27	14	15	26	76
청과시장	71	1	12	5	3	12	38
축산시장	24	_	9	6	3	3	3
수산시장	65	1	6	3	9	11	35

[※] 도매시장의 거래량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등급분류의 주요 목적은 시장별 관리인원을 표준화하고 예산편성기준 확보하는데 있으며 보조금 지원도 차등을 둠

□ 거래방식

구분	합계	경매	수의매매	경매와 수의
합계	160	28	52	20
청과시장	71	2	49	20
축산시장	24	21	3	
수산시장	65	65	. –	\ <u>-</u>

[※] 청과시장의 경우 대북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수의매매가 주류

□ 관리비 수취율

○상장수수료 대신에 거래금액의 일정율을 관리비로 징수하며 청과의 경우 50/1,000이하, 수산시장은 25/1,000이하, 축산시장은 15/1,000이하

- 관리비 수취율 범위내에서 출하주와 승소인(우리나라의 중도매인과 유사) 각각에게 1/2씩 징수함
- □ 시장 개설 : 시정부, 생산자단체, 상인 등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건설 (투자도 나누어서 하고 있음)

□ 관리·운영통합방식

- 모든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를 의무화하고 있어 산지수집기능이 필요 없으므로 도매시장의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일원화
- ㅇ 민간과 지방행정기관이 연합해서 만든 공사(민간)가 담당
- ㅇ 승소인(구입자)으로 허가를 받아 공사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도매 또는 소매

< 대북시 청과 도매시장 >

○경영주체: 대북시 청과 도매회사

○출자관계 : 대만성정부(22.8%), 대북시정부(22.8), 대만성 각급농회

(23.7), 대북시 농회(1.2), 청과상(9.4), 판운상(20.1)

ㅇ주요현황

구분	제1청과시장	제2청과시장
대지(m²)	55,043	24,210
건물(m²)	28,481	14,261
승소인수	1,614	384
총하주수	1,419	1,166
관리직원수	797(통	합관리)

ㅇ시장관리운영

- 합작공사를 설립하여 직접관리운영, 취급규모별 정원을 법으로 규정
- 대북시 시장관리처에서 시장공사에 대한 감독.처분권 행사

(6) 일 본

- ㅇ일본도매시장의 관리는 모두 관리사업소방식(공무원관리) 채택
 - 도매시장의 운영은 도매법인이 수행
- ㅇ중앙도매시장의 거래방법 변화
- 경매.입찰이 아닌 수의매매(상대거래, 예약 및 선취)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은 40%에 달함

<동경 오다도매시장>

- 0업무개시일
 - 청과부류(1989. 5), 수산부류(1989. 9), 화훼부류(1990. 9)
- o면적
 - 부 지 : 386,321 m², 건물연면적 : 247,627 m²
- ㅇ일평균 거래실적('94 기준)
 - 거래물량 : 청과 3.064톤, 수산 117톤, 화훼(생화) 157만본
 - 거래금액 : 청과 906백만엔, 수산 107만엔, 화훼 112백만엔
- ㅇ종사자 수
 - 도매업자 : 9개사(청과 5, 수산 2, 화훼 2)
 - 중도매업자 : 421점포(청과 301, 수산 100, 화훼 20)
 - 관련사업자 : 101업체
 - 매매참가자 : 3,716명(청과 2,025, 화훼 1,691)
- ○선취거래 비율 : 60 ~ 70%에 이름
 - 가격결정방식
 - 이전에는 경매가의 최고가로 하였으나
 - · '95.4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현재는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즉 사전에 약정한 가격이 경매가와 차이가 클 경우 경매가에 따라 양자가 상호협의하여 조정
- 0 매취집하비율
 - 청과의 경우 위탁 : 매취 = 80 : 20
 - 도매업자는 위탁수수료가 8.5%(야채)인 반면 매취판매 마진은 평균 5% 에 불과하므로 위탁판매를 선호하고 수탁받은 물량에 대한 차별 대우는 없음

(7) 주요 도매시장별 관리·운영형태

도매시장	관 리 방 식
프랑스 런지스 도매시장	ㅇ파리시가 개설, 관리공사가 시장운영관리
네덜란드 알스미어화훼경매장	ㅇ꽃 판매협동조합이 운영
독일 본 Central Market	ㅇ생산자 협동조합이 운영
독일 프랑크프르트 Gross Market	ㅇ130여 도매상이 영업
영국 New Covent Garden Market	ㅇ관리운영 주체는 개인회사
이탈리아 로마 도매시장	o개설자는 시의회로 상인, 농민 등으로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벨기에 Sint, Truiden시장 등	ㅇ생산자 협동조합이 직접운영관리
벨기에 Mechelen 시장	ㅇ시가 일정시설을 제공, 상인들로 하여금 운 영케 하는 free market
미국 뉴욕 헌츠포인트도매시장	ㅇ70여 도매상이 시장 운영관리 직접수행
미국 시라쿠스 중앙뉴욕시장	○17개 도매상, 100여명의 농민(직판장)이 공동운영 ○시장관리위원회(Board)가 구성, 시장관리
미국 LA 농산물도매시장	○24개 도매상이 시장 운영관리 직접수행
대만 대북 제1과채비발시장	ㅇ대북시에서 민관합작공사를 설립,운영
일본 동경 오다도매시장	ㅇ시장 운영은 도매업자, 관리는 공무원

나. 일본도매시장 운영개요

□경매

- ㅇ경매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지식 상향식을 채택
- ○대규모 출하상품은 고정식 경매대에서 견본품 경매를 진행하며, 개별 출하자의 소규모 출하상품은 이동식으로 진행

□ 선취매매

- ○선취매는 상품구색을 갖추기 어려운 지방도매시장에 중앙도매시장이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데서 비롯
- ○현재는 소매업자 등 상인이 필요한 상품을 적절한 시간에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
- ㅇ선취매의 기본유형
 - 소매업자가 경매시간(나고야북부시장 06:00 시작)을 기준하여 전일 17:00~17:30분경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상품의 매수를 요청→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상품의 반입을 확인하고 (단협등 출하단체는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상품에 관한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교환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은 매일매일 출하되는 상품의 품목별수량 등을 파악하고 있음) 경매시작 전에 이를 선취함 → 중도매인이 소매업자에 공급 → 소매업자가 09:00 개점시간 전 필요한 상품의 구색을 갖춤
- o 일본에서는 특히 생산자들 사이에서 선취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있음
 - 선취매로 거래되는 상품이 대개 고품질이고,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매에 판매되는 상품은 선취매 상품보다 대체 적으로 질이 낮기 때문에 경매로 팔린 상품이 아무리 높은 경락가 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선취매 가격을 따라가기가 어려움
 - 시장교섭력이 강한 생산자단체를 제외하고는, 선취매 때문에 전반 적인 경락가격이 하락한다는 인식을 갖고, 선취매 비중이 높은 데 대해 불만을 가짐

- ○오다도매시장의 경우 선취율이 높게는 70%에 이르며, 나고야북부도 매시장에서도 50%에 달하고 있음.
 - 법적으로는 20% 한도내에서 선취를 인정하고 있는데, 도매시장법 인들은 선취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함

│ │ 상대매매

- ㅇ상대매매의 기본유형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이같은 상품이 있는데, 얼마의 가격에 사겠느냐고 의사를 타진, 가격이 맞으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중도 매인에게 해당상품을 공급함
 - 상대매매는 경매와 같은 시간대에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동 식 경매(출하량이 적은 품목이나 개별생산자가 출하한 상품 중심) 진행중에 많이 이루어짐
- ○초기출하상품(첫물)은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쉽지가 않음
 - 생산자는 기대에 가득차 있으나 경락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생산자가 아예 출하처를 바꿀 소지가 높음.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가격지지를 부탁하고 중도매인도 다음 거래를 생각 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요청에 따르게 되며, 이런 이유로 초기출하상 품은 대개가 상대매매로 판매됨
 -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서로 안정적인 운영이 서로에게 유리 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협조관계 유지
- ○상대매매는 위와같은 초기출하상품이나 향신채소 등 수량이 적고, 이 를 취급하는 전문중도매인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많이 행해짐

□ 도매시장법인의 매취판매

- ○수탁판매가 원칙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직접 매취하여 도매 시장에 상장 판매하는 방법이 활발히 이용
- ○정부는 현재 2,600개소인 단협을 600개소 정도로 통합, 대형화를 유 도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이 월등히 높아지는 추세

-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결국 상대 매매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가 가격을 제시(사시매 "이 가격에 사 달라")하면 중도매인과 가격협상(상대·선취매의 경우)을 벌이나 대부분 생산자가 제시한 가격이 시중시세를 웃도는 것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손해를 보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도매시장법인이 매취판매를 활용하는 것은 산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목적도 있음
 - 하지만 중도매인은 가격이 맞지 않으면 매수를 거부하므로, 도매시 장법인은 중간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됨

□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보완

- ○특수품목, 고급품목 등 도매시장법인이 물량수집을 못하는 특수한 경우(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이 컴퓨터 정보망 등을 활용해 해당상품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다른 도매시장에서 사오는 방법(전송)으로 상품을 확보
- 중도매인은 사전에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판매후에는 거래사실을 개설자에게 보고

□ 이중상장

- ○일단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락된 상품은 지방도매시장에 상장되지 않 은 것이 원칙
- 안단, 산지도매시장 성격이 강한 지방도매시장에서 경매로 상품을 매입한 중도매인이 출하자의 신분이 되어 중앙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가 있음(저온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출하하는 경우도 있음)

□ 전송

- ○나고야북부도매시장에서는 출하된 상품을 하역을 한 상태에서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 가져가는 경우와 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이 나고야북부도매시장에 미리 요청하여 해당상품이 출하되었을 때 하역 전에 이를 보내주는 방법 등 두가지가 통용됨
- o 전송할 상품을 따로 모아놓고 경매시간 전에 전송선에 보내게 되는 데, 이것을 "취인(取引)"이라고 함
- ○전송상품 가격은 상품을 보낸 도매시장의 해당일 같은 등급의 경락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받음
 - 경매시작 30분 전에 보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경락가격을 알게 되어 있음
- ○법적으로 전체 거래량의 20% 이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으나, 나고야 북부도매시장의 경우 많게는 50%까지 이루어짐

□ 산지집출하장 및 직판

- ○단협 등에서 설치한 조합원들의 상품을 집하하는 집출하장은 예냉기,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갖추고 있음
 - 하지만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을 상대로 경매를 하지는 않음
- ○경매는 하지 않지만 생산자가 가격을 정해 놓고 소매상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직판이 이루어짐

□ 경매사의 활동

- ㅇ경매사는 품목별로 전문화
- ○경매사는 경매가 종결되면 사무실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곧바로 상품 수집활동을 하기 위해 산지방문에 나서며 도매시장법인의 직원으로 서 상품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

□ 도매시장에 대응하는 신업태

- ○일본은 물류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음.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 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80% 가량이 도매시장을 경유
- ○나머지 20%는 직거래나 대형양판점을 통해 거래되는데, 최근 양판점을 통한 거래가 확대 추세
- ○일본의 도매시장은 양·질·가격 세가지 부문에서 양판점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

□ 도매시장법인의 부대사업

- ○1981년 통산성에서 년간 50억엔 이상 매출을 올리는 도매시장법인은 별 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따라 일본 도매시장법인은 자회사를 만들어 농수산물 무역업과 포장사업 등에 진출
- ○최근에는 정부에서 자회사와 모회사인 도매시장법인이 합병을 해도 좋다고 표명

□ 상장수수료 차별화

- o 상장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름
- ○법적으로는 야채 8.5%, 과일 7%로 책정되어 있으나, 나고야북부도 매시장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야채생산지와 인접해 있으므로 지역생산자를 위해 야채는 8.0%를 적용
- ○상장수수료의 차별화는 주식과 기호식과의 차이에서 비롯됨. 이전에는 주부식의 주를 이루던 것이 야채였고, 과일은 그다지 생산 이 많지 않고 거래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상위계층이 주로 소비하 였기 때문에 과일의 수수료는 야채와 1%의 차별을 두었음
- ○일본에서는 상장수수료의 책정을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많고 적음에 두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과일의 생산량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과일 상장수수료도 8.5%선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됨

다. 일본도매시장의 새로운 전개와 활성화 방향

日本生鮮食品等流通問題研究會('98.8)

□ 지금까지 도매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니즈(needs)

- ㅇ소비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선식료품의 제공
- ㅇ농림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한 확실하고 신속한 판로의 제공
- ㅇ유통ㆍ소매업자 등에 대한 거래의 장소 제공
 - ㅇ국민의 식문화를 지지하는 역할

□ 도매시장이 갖는 기능과 필요성

- ㅇ물건구색(상품개발) 갖추기 기능
- ○집분하·물류기능: 대량 단위 품목을 집하, 소량 다품목으로 효율적인 배송
- ㅇ가격형성 기능
- ㅇ대금결제 기능
- o 정보 수·발신 기능 : 수급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산지·소매업자에 전달
- ㅇ재해시 대응 기능 : 재해 발생 경우 생명줄로서 시민생활 지탱

□ 도매시장을 둘러싼 상황변화

- ㅇ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 ㅇ슈퍼마켓 등 대량수요자의 발연력 상승
- ㅇ산지대형화의 진전
- ㅇ유통채널 다양화와 시장외유통의 진전
- ㅇ정보화시대의 도래
- o물류효율화, 환경문제, 식품의 안전·위생문제에 대한 대응
- ㅇ도매업자, 중도매업자의 경영악화와 시장기능의 저하

□ 향후 도매시장 강화 기능

- ○소비자 니즈에 입각한 물건구색갖추기 기능 및 소매업자 등에 대한 지원기능의 강화
 - 선도, 질, 가공, 조제형태, 배송조건, 가격에 적합한 구색갖추기
 - 집·분하 기능 발휘를 위한 물류효율화 시스템 구축

- ㅇ판매력 강화
 - 산지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 가지고 오면 팔린다는 기능, 소매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기능 등을 수행
- o 정보 수·발신 및 네트웍 강화
 - 소비정보 파악. 정보를 소매업자로부터 산지에 신속히 전달
 - 시장내, 시장관계자, 시장간, 시장내외간의 네트웍 구축
- ㅇ대금결제 및 클레임 등 처리기능 강화
 - 신뢰성이 높은 대금결제 기능 유지
 - 검품, 클레임 처리, 요구하는 규격이외의 물건이나 풍흉의 결과 생기는 과부족을 효율적로 수습처리
- ㅇ부가기능의 강화
 - 쓰레기처리 적정화, 소음, 배기가스, 교통체증 등 환경면에서 대응
 - 식품에 필요한 위생. 재해시에 위기관리 등에 대응

□ 민간기업의 영업력 발휘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활성화 방향

<도매업자>

- ㅇ경영체질의 강화
 - 저비용 체제, 집하·판매 강화,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 동일시장내 업체간 합병, 사업양도에 의한 대형화
- 개별시장의 범위를 넘은 광역유통권의 도매업자간 합병, 사업제휴 검토 ㅇ경쟁촉진 활동
 - 매취집하 완화문제
 - 취급품목 확대문제(취급품목을 달리하는 도매업자간 업무제휴, 합병)
- o지도·감독 강화와 정보 공개
 - 경영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기 시정조치
 - 재무면에서의 지도기준 검토(유동비율, 손익상황, 자본금 등)
 - 경영내용을 공시하여 관계자에게 판단자료 제공

<중도매업자>

- ㅇ경영체질 강화 및 통합 대형화
 - 경영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다각화, 소매지원 기능 강화

- 중도매업자간 연계로 대량수요자와 안정적, 대등한 관계 구축하거나 배송 등의 공동수행으로 비용절감
- 합병, 사업양도에 의한 대형화, 중도매업자수의 적정화

<도매업자와 중도매업자의 업무영역>

- ㅇ도매업자의 「제3자판매」와 중도매업자의「직접집하」수행 문제 논란
- * 찬반론 대두
 - 가격형성, 도매시장 존립의의와 시장질서의 본질에 배치된다는 반대적 입장
 - 시장활성화, 규제완화, 공정거래 확보, 도·중도매업 역할 분담 차원의 적극적 입장

<도매시장 결제기능 강화>

○代佛, 支佛保證 등 결제확보 조치의 개선, 강화

□ 거래관계자의 니즈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거래방법 등 방향

<경매 또는 입찰원칙>

- ㅇ경매거래와 상대거래 논의
 - 각각의 장단점은 개별시장에서 거래실태, 상품특성 등에 따라 사정이 다름
 - 개설자나 관계업 \rd 구성된 위원회적인 기관에서 협의를 하여 단점 을 보완조치 하면서 업무규정에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 * 단점 보완조치 예시
 - 경매거래의 경우
 - · 경매의 기계화, 경매방식의 개선(복수 경매시간의 설정 등)
 - 상대거래의 경우
 - 당일의 거래수량과 평균가격이 신속히 공표되는 시스템 도입
 - 부당차별금지에 대한 감시위원회적인 기관이 일상감시
 - 불복신청제도를 설치하여 개설자가 수시 지도
 - 품귀시나 위기적인 경우 경매 시행

<상물일치 원칙>

○일단 시장에 반입하고 그후 판매자에게 반송하는 비효율성이나 도시 교 통정체의 악영향, 시장 자체의 과밀성 문제 등을 고려

- ㅇ미리 판매상대를 정한 경우 상물일치 원칙 적용 배제
 - 상장수량의 정확한 계상, 정보제공, 개설자의 관리감독
 - 견본거래시 장외지정 보관장소 지정조치

<시장휴업일 문제>

ㅇ시장 기능활성화와 소비자 보호관점에서 영업일 확대

<개설자의 역할>

- ㅇ규정준수 감시
 - 행정경비와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감시수법으로 전환
 - 사전체크에서 사후체크로의 전환
- ㅇ전산기기 활용과 정보 수·발신
 - 신고, 보고, 공표 등의 사무처리 간소화, 신속화 도모

□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써 중앙도매시장 논의

- ㅇ도매시장의 기능분화와 연계 강화
 - 광역유통권에 속하는 시장끼리 중핵적인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계하고 수급정보 교환, 시장간 기능 분담, 시설정비.운영 및 시장업자간 연계 등 의견교환 필요
- ㅇ개설주체의 문제
 - 지방공공단체 뿐만아니라 제3섹타나 민간도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중앙에서 지방도매시장으로의 이행 등 지역실정에 알맞는 탄력적인 대응
- ㅇ기능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측면의 과제
 - 콜드체인, 정보기자재, 위생.관리시설, 가공, 조제, 배송시설 등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방식에 의한 민간자금 활용 검토
 - * PFI : 민간자금이나 노하우에 의해 사회자본을 정비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사업,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방식
- ㅇ시설 활용의 문제
 - 도시계획과의 적합성, 중심시가지 활성화, 재해시 긴급대응, 일반 시민에게 편리제공 등 제반 시설관리면에서 유연한 대응

라. 최근 일본도매시장의 유통실태

□ 일본의 80년대 이후 도매시장 유통동향

- ㅇ도매시장 유통량이 80년대 후반 이후 감소 추세
 - 집배센타 등 장외유통이 확대
- ㅇ지방도매시장의 후퇴 가속화
 - 대규모 지방도매시장 또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집중
 - 소규모·영세시장의 경영악화가 주요인
- ㅇ중앙도매시장으로의 집중화

□ 도매시장기능 변화

<산지에서의 변화>

- ㅇ국내 생산의 감소
- ○출하의 遠隔化, 대규모화
- ○출하품목의 축소, 출하 Lot의 대형화
- ○가격요청 강화, 출하처 집약화

□ 도매시장의 변화

- ○집하권의 광역화
- ○산지로부터의 가격보장 요구가 커지고, 수의집하도 증가
 - 특히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극심
- ㅇ도매시장의 산지유통기능의 변화
 - 집하권의 외연적 경대
 - 출하농가의 조직화, 순회집하, 콘테이너집하, 집하처를 농협으로 전환 등 대응
- ㅇ수입청과물의 증가
- 유통량 비중의 꾸준한 증가
- 도매시장법인의 직수입 기능 강화

□ 소매, 소비의 변화에 따른 도매시장 변화

- ㅇ슈퍼의 대폭 증가
- 슈퍼의 요구사항(定時, 定量, 定品質, 定價格)과 도매시장제도의 모 순이 심화 → 도매시장의 존립기반 변화 초래
 - 슈퍼의 구매력 강화에 따라 구입패턴의 변화 가까운시장(중앙 또는 지방도매시장) → 중앙도매시장 → ┌시장외 매입 산지직거래
- ㅇ슈퍼 대응에 따른 경영압박
- 슈퍼로의 포장, 배송, 가격risk, 결재기한의 장기화 등의부담이 도 매시장(중도매인)의 경영압박
- ㅇ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업무영역확대: 도매상화
 - 집하, 수입, 포장, 가공, 배송, 소매 등 영업영역 다각화
- ㅇ경매원칙의 약화
 - 슈퍼로의 판매비율 상승에 따라 경매거래 위축, 先取확대

<선취의 要因>

- ㅇ물량의 확보
- ㅇ시장시설의 협소
- ○반출시간대를 앞당겨 교통정체 회피
- ㅇ집하력이 낮은 도매시장법인의 「先渡」

<경매제가 유지되는 요인>

- o중도매인의 슈퍼, 양판점 등의 낮은 가격요구 압력에 대한 회피수 단으로서 유용
 - 差益상인 또는 수수료상인은 판매가격이 높은 것이 유리
 - 상대거래는 조정가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가격 형성
- o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산지로부터의 가격보장압력 회피수단으로서의 merit
- ㅇ영세규모 중도매인의 다수 존재
 - 상대거래에 의한 물량감소에 반대
- ㅇ종래부터의 관습, 기준가격형성에 대한 자부심

□ 일본 도매시장의 당면과제

<문제점>

- 중앙도매시장의 공설제와 관계되는 문제로서 중앙도매시장의 분산권이 개설구역을 대폭 초과하여 확대
- ○경매거래를 원칙으로한 도매시장 제도의 기본이념인 유통의 공평, 공 정, 공개 원칙이 거래방식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
- ○슈퍼로의 판매가 증가 되는 가운데 나타난 도매업자, 중도매업자의 각종 서비스 부담이 도매시장 제도가 갖고 있는 공공성, 차별적 거 래금지 원칙과 모순되는 문제 발생
- ○도매업자, 중도매업자가 존립 기반의 동요로 기능·업무의 다각화에 따라 새로운 존립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도매시장 제도에 근거한 관계업자 간의 기능 분담 관계의 유동화·무국경(borderless)화를 초래
- ⇒ 이와같이 80년대 중반 이후 도매시장 유통과 도매시장에 나타난 변화는 도매시장 유통의 재편으로 머물지 않고 일본 도매시장 제도에 대하여 커다란 과제를 제시

<기본적 과제>

- ㅇ청과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
- ㅇ생산자에게 안정적 출하처의 제공
- ㅇ공정경쟁아래 적정 거래 가능
- o 생산, 수입, 소비와 산지 생산 출하, 소비자 욕구를 연결하는 정보화 기능
- ㅇ시민에게 Infrastructure로서의 다양한 이용 가능성

<정책과제>

- ㅇ국내생산, 수입, 소매, 소비의 다양하고 특징있는 결합을 유도
 - 특히, 산지의 유통기능을 지원
- ○도매시장이 갖는 공평·공정·공개성의 유지
 - 경매거래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장여건이나 품목에 따라서 거래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의 정비
 - 거래정보의 공개
- ㅇ안전성 확보
 - 도매시장에서의 위생검사 체제의 강화
- o 정보·물류시스템화
 - 중소규모산지, 중소규모상업자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근원적인 욕구의 수집과 분산